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

2020. 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심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3.1조원,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서, 지난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분석하여 그 방향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차 례

CONTENTS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결산 개요

1. 현 황 ····· 1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5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6

II. 주요 현안 분석

1. 조세심판원의 개선 필요사항 ····· 7

III.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 16
2. 규제개혁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 23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 27

[국민권익위원회]

I. 결산 개요

1. 현 황 ····· 31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35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36

II. 주요 현안 분석

1. 고충민원 건수 증가에 따른 민원서비스 처리능력 제고 필요 ····· 37

CONTENTS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41

[국가보훈처]

I. 결산 개요

1. 현 황 ····· 49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56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57

II. 주요 현안 분석

1. 보훈단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58
2.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66
   2-1. 안장능력 적기 확충을 위한 집행률 제고 필요 ····· 67
   2-2. 장사시설 유형 확대 고려 필요 ····· 74

III. 개별 사업 분석

1.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79
   1-1.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활성화 필요 ····· 80
   1-2. 보훈휴양원의 운영수지 개선 필요 ····· 85
2.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보조금 집행관리 부실 ····· 89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자체수입 부족 문제 ····· 92

※ 국가보훈처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 96

CONTENTS

[공정거래위원회]

I. 결산 개요

1. 현 황 ····· 99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03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04

II. 주요 현안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관련 분석 ····· 105
   1-1.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환급 관리 필요 ····· 105
   1-2. 신고 활성화를 통한 법 위반행위 적발 노력 강화 필요 ····· 113
2. 기업집단 사익편취 금지제도 및 공시제도 관련 분석 ····· 117
   2-1.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117
   2-2.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의 기업집단현황 등 정보제공 기능 문제점 ····· 123
3. 가맹사업거래 관련 업무 수행 개선 필요 ····· 129

III. 개별 사업 분석

1. 소비자 권익증진사업 관련 문제점 ····· 135
2. 윈도우10 교체를 위한 예비비 사용 부적절 ····· 145

CONTENTS

[금융위원회]

I. 결산 개요

1. 현 황 ····· 149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57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58

II. 주요 현안 분석

1.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사업의 효과 분석 ····· 159
   1-1.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산업은행의 부진한 투자실적을 고려하여 투자계획 재설정 필요 ····· 161
   1-2. 산업은행 출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STX 조선해양 지원 목적의 정부출자금 활용도 제고 노력 필요 ····· 165
   1-3.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한 투자방식 검토 필요 ····· 168
   1-4. 산업은행 출자, 중소기업은행 출자(환경·안전투자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금리 인하 방안 검토 필요 ····· 174
2. 신규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대비 사전준비 철저 필요 ····· 177
3. 핀테크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 182
   3-1.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 수요기업의 실제 지원 대상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강화 및 사업성과 제고 노력 필요 ····· 183
   3-2. 핀테크 특화 교육: 재직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된 교육과정 운영 필요 ····· 190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배정의 적정성 분석 ····· 194
2. 재계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상환계획 수립 필요 ····· 197
3. 국재중재소송 결과 공개 필요 ····· 202

CONTENTS

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수익률 관리 필요 ····· 205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분석 ····· 208
6.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확대를 통한 여유재원 활용 필요 ····· 211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서울보증보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후 관련 계획 수립 필요 ····· 214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 217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 22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0%인 6,4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64	64	64	0	0	100.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75억 9,800만원이며, 이 중 95.7%인 5,620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5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72,565	572,565	576,183	550,901	34	25,248	96.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415	11,415	11,415	11,150	0	265	97.7
합계	583,980	583,980	587,598	562,051	34	25,513	95.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3736)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자산은 3,406억 1,800만원, 부채는 7억 7,400만원으로 순자산은 3,398억 4,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9억 2,000만원, 일반유형자산 3,364억 4,600만원, 무형자산 29억 9,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억 5,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48억 8,000만원(11.4%)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자산 재평가이익에 의한 증가 등 일반유형자산 348억 2,900만원 증가, 유동성대체관련임차보증금 증가 등 유동자산 8억 8,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500만원, 장기충당부채 7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7,900만원(18.8%)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비 미지급금 감소 등에 따른 유동부채 5,500만원 감소,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 등 장기충당부채 1억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40,618	305,738	34,880	11.4
Ⅰ. 유동자산	920	33	887	2,687.9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336,446	301,617	34,829	11.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2,998	3,043	△45	△1.5
Ⅵ. 기타비유동자산	254	1,045	△791	△75.7
부 채	774	953	△179	△18.8
Ⅰ. 유동부채	25	80	△55	△68.8
Ⅱ. 장기차입부채	0	25	△25	△100.0
Ⅲ. 장기충당부채	749	849	△100	△11.8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339,843	304,785	35,058	11.5
Ⅰ. 기본순자산	129,110	129,110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7,285	8,108	△823	△10.2
Ⅲ. 순자산 조정	203,448	167,566	35,882	21.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698억 6,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814억 7,800만원, 관리운영비 884억 7,100만원, 수익은 비배분수익 8,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16억 7,100만원(4.0%) 증가한 5,698억 6,900만원이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 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47억 700만원 증가하고,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67억 5,0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프로그램(4,813억 3,200만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프로그램(1억 4,600만원)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87억 9,900만원과 기타관리경비 396억 7,600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81,478	466,771	14,707	3.2
가. 프로그램 총원가	481,478	466,771	14,707	3.2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Ⅱ. 관리운영비	88,475	81,721	6,754	8.3
Ⅲ. 비배분비용	0	1	△1	△100.0
Ⅳ. 비배분수익	80	295	△215	△72.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69,869	548,198	21,671	4.0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69,869	548,198	21,671	4.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3,047억 8,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398억 4,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50억 5,800만원(11.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2,650억 8,400만원 증가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358억 8,1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642억 6,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5,691억 6,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58억 8,1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304,785	310,868	△6,083	△2.0
Ⅱ. 재정운영결과	569,869	548,198	21,671	4.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69,046	546,971	22,075	4.0
Ⅳ. 조정항목	35,881	△4,855	40,736	839.1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339,843	304,785	35,058	11.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②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다.

뉴미디어 정책홍보 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과다 증액으로 관련 예산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은 기본경비 성격의 교육훈련 예산 3,200만원이 감액되었다.[1)]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 등이 있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1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은 ODA 통합보고 시스템 개편 예산 5억원이 증액되었다.[2)]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의 경우 수요 확대 등 추가지출 소요 발생 시 예비비 또는 이·전용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

1) 정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0.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정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0.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① 국정운영의 기획·관리 및 평가, ②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의 지속 추진, ③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④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⑤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체계적 관리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바,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진단과 개선 노력의 필요하다. 또한 청구인 권리보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의견진술과 지역순회심판 실시횟수가 낮아지는 상황으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증가하는 사건 건수 대비 한정된 인력으로 만성적인 사건 이월이 우려되는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 갈등과제를 살펴보면, 장기간 지정된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홍보하는 규제개혁 성과와 다르게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황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조세심판원의 개선 필요사항

가. 현 황

조세심판원[1]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기관으로, 2019회계연도에는 4개 세부사업을 통해 예산현액 124억 2,400만원 중 110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인건비	10,216	10,216	0	0	10,216	9,020	1,196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609	609	0	0	609	505	104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105	1,105	0	±25	1,105	1,041	64
조세심판 정보화	475	475	19	±14	494	485	9
계	12,405	12,405	19	39	12,424	11,051	1,373

자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국세의 경우 행정소송 전에는 3가지 행정심판제도(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조세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하고 있다.[2]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001-102, 7011-202, 7011-252, 7036-307

나. 분석의견

첫째,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조세심판원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바,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진단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원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2항[3]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공기관의 공직자, 전문가·정책관련자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산정해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5등급,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중앙행정기관(Ⅱ유형)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다.[4]

[중앙행정기관(Ⅱ유형)의 청렴도 평가 결과]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1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등급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등급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특허청, **조세심판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여성가족부
4등급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특허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5등급	**조세심판원**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조세심판원**	기상청, 소방청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 심판청구 선택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세: ('08) 81.4% → ('14～'16) 86.6% → ('17) 90.4%
지방세: ('08) 66.8% → ('14～'16) 85.2% → ('17) 93.5%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직원 수에 따라 Ⅰ유형(2,000명 이상)과 Ⅱ유형(2,000명 미만)으로 나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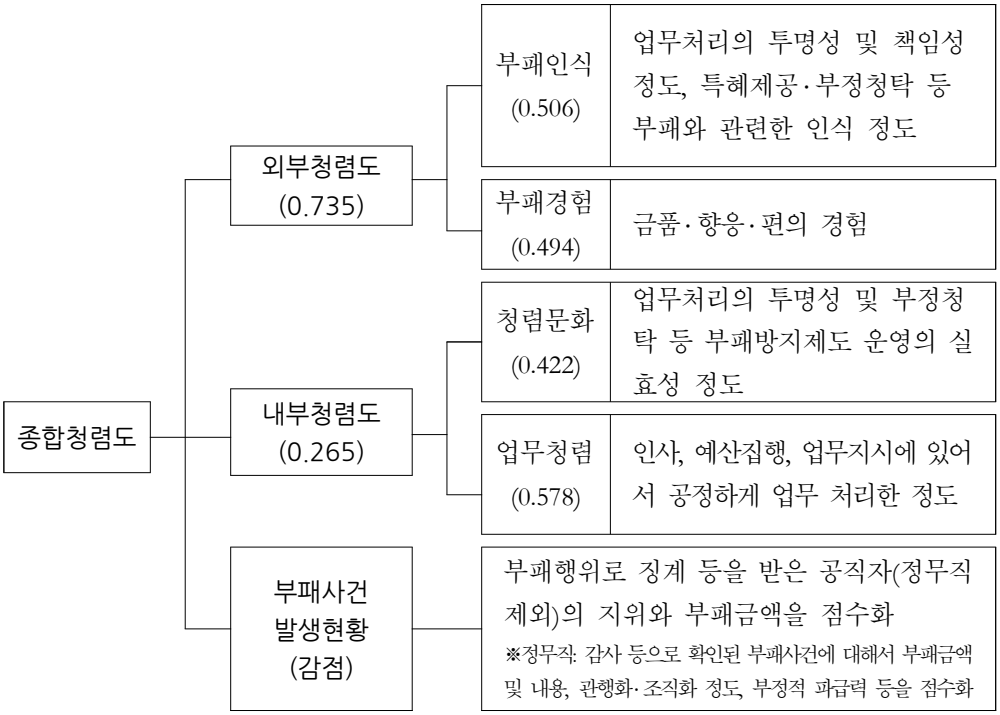

주: 1. 조세심판원은 '정책고객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 제외하였음.
2. ( )의 수는 반영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에 따르면,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향응·편의의 요구·수수 등과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① 국민이 인식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책임성, 부당한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부패수준(부패인식)과 ② 국민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공직자의 요구나 수수 등의 부패 수준(부패경험)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①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등 조직 내 부패통제장치 및 제도가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 및

부패와 관련된 문화·행태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 정도(청렴문화), ②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공정하며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업무청렴)를 평가하여 도출한다.

각 기관별 평가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아,[5] 조세심판원이 어떤 점에서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외부청렴도 모두 높지 않다는 점에서 기관 내·외적인 차원에서 조직의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청렴도가 최저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대민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부패개연성을 낮추고, 수요자 관점에서의 기관 투명성 제고 등 개선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견진술 및 지역순회심판 실시 횟수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두 제도는 청구인의 권리보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제도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6]는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의견진술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조세심판 청구인)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직접 출석하여 대면으로 진술하는 방법과 전화로 진술하는 방법,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하여 진술하는 방법이 있다.

2019년 3월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7]를 살펴보면, 현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의견진술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출석진술로 진술비율이 전체사건의 50~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교통·시간 제약 등으

---

5) 국민권익위는 2017년까지는 각 기관별 점수 등 청렴수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지나친 순위 위주의 보도와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이 지적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기관유형별 등급만 발표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견진술)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7) 2019.3.5.,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그간의 추진성과 및 금년 추진과제 발표」

로 출석진술 비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만큼 전화진술 확대를 통해 의견진술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전체 처리건수 대비 의견진술 비율은 2017년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비대면진술(전화·영상진술) 건수는 2018년에 비하여 늘어났지만 아직도 실제 활용 건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조세심판 청구인 의견진술 건수 및 비율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회의건수(A)	의견진술 건수(B)					의견진술 비율(B/A)
			출석진술	비대면 진술			
					전화	영상	
2019	7,740	2,520	2,379	141	138	3	32.6
2018	7,756	3,688	3,631	57	54	3	47.6
2017	5,968	3,707	3,601	106	103	3	62.1
2016	5,950	3,475	3,224	251	245	6	58.4
2015	7,244	4,029	3,857	172	157	15	55.6
2014	7,687	3,741	3,615	126	113	13	48.7

자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의 인용률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의견진술이 이루어진 사건의 인용률이 높다. 물론 사건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심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최근 진술 여부 및 종류에 따른 인용률 현황]

(단위: %)

구분	무진술[1]	의견진술[2]				평균 인용률
			참석진술	전화진술	영상진술	
2019	9.2	34.7	34.8	31.9	33.3	16.6
2018	10.7	30.4	30.4	27.1	-	20.1
2017	19.8	35.4	35.8	24.3	-	27.8
2016	22.7	31.1	32.7	9.4	-	25.3
2015	18.4	32.0	33.1	7.6	-	24.1
2014	17.5	29.7	29.9	21.1	-	22.2

주: 1) 무진술 결정건수 중 인용비율
2) 의견진술 결정건수 중 인용비율
1. 여기서의 인용률은 모두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을 의미하며 영상진술은 2019년부터 전산관리 되어 2019년부터 인용률 자료가 존재

자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조세심판원은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하여 심판관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고,[8] 회의 참석의사를 밝힌 납세자(또는 대리인)는 서울청사에서 의견진술하는 식으로 조세심판관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 영상진술 방식과 달리 비상임심판관과 마주하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납세자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9]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바,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맞추어 조세심판원은 영상진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위하여 지역순회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2016년부터는 전국을 일정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는 제도로, 일반사건을 대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직접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2019년도 지역순회심판의 실시현황을 보면 실시횟수 5회, 처리건수 84건으로 이전 년도에 비하여 운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종전 지역순회심판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실시됨에 따라 지방납세자의 진술기회보장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2019년의 경우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순회심판을 실시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격주로 순회심판(소액사건)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액순회심판[10]의 경우에도 2019년에는 이전 년도들에 비하여 실시횟수와 처리건수가 저조한 상황이다.

[2017~2019년 지역순회심판 실시 현황]

(단위: 회, 건)

연도	지역별 실시현황		
	실시지역	실시횟수	처리건수
2019	광주	2	34
	대구	2	34
	부산	1	16
	합계	**5**	**84**

8) 상임심판관은 세종청사에서, 비상임삼판관은 서울청사(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다.

9) 조세일보, 2020.4.9., 「코로나 여파에... 사상 첫 '화상 심판관회의' 연 조세심판원」

10) 소액순회심판은 심판청구 세액이 일정 금액(국세 3천만원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심판청구인 경우 서울사무소(창성동 별관)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단위: 회, 건)

연도	지역별 실시현황		
	실시지역	실시횟수	처리건수
2018	수도권	16	576
	광주	1	10
	대구	1	18
	부산	1	19
	합계	**19**	**623**
2017	수도권	10	180
	광주	1	129[1)]
	대구	1	13
	부산	1	24
	합계	**13**	**346**

주: 1) 대량병합사건 112건을 포함한 건수임
자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연도별 소액순회심판 실시 현황]

(단위: 회, 건)

연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실시횟수	**21**	27	24	26	25	24
처리건수	**387**	792	666	1,087	1,539	1,395

자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이 별도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청구인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역순회심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며, 지역순회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2019년 조세심판청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처리율과 평균 처리일수는 개선이 되었지만, 만성적인 사건 이월이 우려되는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연도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비하여 사건 처리율은 71.5%→73.9%로 개선되었고, 평균 처리일수는 173일→160일로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건 이월건수는 3,050건으로 작년의 3,045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년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비교해보면 2014~2017년 처리건수와 당년접수가

비슷하거나 처리건수가 보다 높음에 따라 이월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도에 전년대비 접수 건수가 2,330건 증가함(34.5% 증가)에 따라 이월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청구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이월건수	평균 처리일수
	소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2019	11,703	3,045	8,658	8,653	73.9	**3,050**	160
2018	10,683	1,600	9,083	7,638	71.5	**3,045**	173
2017	8,351	1,598	6,753	6,751	80.8	**1,600**	157
2016	8,226	2,223	6,003	6,628	80.6	**1,598**	171
2015	10,400	2,127	8,273	8,177	78.6	**2,223**	175
2014	10,877	2,403	8,474	8,750	80.4	**2,127**	185

자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세불복기관 중 조세심판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소송 및 국세청 이의신청을 제외한 조세불복수단의 연도별 사건접수건수(내국세 기준)를 살펴보면, 내국세 사건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12년부터 8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향후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그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연도별 조세불복수단 별 사건접수건수(내국세)]

(단위: 건, %)

연도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계
2019	420(8.1)	166(3.2)	4,598(88.7)	5,184(100)
2018	426(6.8)	717(11.5)	5,090(81.7)	6,233(100)
2017	440(7.6)	122(2.1)	5,237(90.3)	5,799(100)
2016	549(10.2)	454(8.4)	4,400(81.4)	5,403(100)
2015	551(8.3)	166(2.5)	5,889(89.2)	6,606(100)
2014	724(10.8)	113(1.7)	5,873(87.5)	6,710(100)
2013	746(12.5)	176(3.0)	5,035(84.5)	5,957(100)
2012	818(12.7)	232(3.6)	5,393(83.7)	6,443(100)

주: ( ) 안의 수는 연도별 전체 접수 건수 대비 비중임
자료: 각 기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조세심판원이 한해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건수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조세심판원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비하여 2019년에는 오히려 현원이 소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1인당 처리 건수는 증가하였다. 처리건수가 정체되는 와중에 사건접수건수가 증가할 경우 이월건수가 만성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건처리일수를 지연시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조세불복수단 별 사건접수건수]

(단위: 명, 건)

연 도	구 분	계	원장	심판관	조사관	서기관/사무관	주무관
2019	정원(현원)	117(106)	1(1)	6(6)	16(14)	63(58)	31(27)
	1인당 처리건수	-	-	1,442	618	149	-
2018	정원(현원)	115(104)	1(1)	6(5)	14(14)	63(55)	31(29)
	1인당 처리건수	-	-	1,528	546	139	-
2017	정원(현원)	110(107)	1(1)	6(6)	14(13)	58(58)	31(29)
	1인당 처리건수	-	-	1,125	519	116	-
2016	정원(현원)	110(107)	1(1)	6(6)	14(13)	58(57)	31(30)
	1인당 처리건수	-	-	1,105	510	116	-
2015	정원(현원)	111(107)	1(1)	6(6)	14(14)	59(57)	31(29)
	1인당 처리건수	-	-	1,363	584	143	-
2014	정원(현원)	113(109)	1(1)	6(6)	14(14)	60(58)	32(30)
	1인당 처리건수	-	-	1,458	625	151	-
2013	정원(현원)	114(110)	1(1)	6(6)	14(14)	60(58)	33(31)
	1인당 처리건수	-	-	1,219	522	126	-

주: ( ) 안의 수는 연도별 전체 접수 건수 대비 비중임
자료: 각 기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세심판원은 사건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11] 현재도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고,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2018결산 시정요구: 조세심판원은 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것(주의)
2017결산 시정요구: 조세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으로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2015결산 시정요구: 국무조정실은 조세심판원의 정원 및 현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관세 담당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2014결산 시정요구: 심판부 및 심판관의 인력을 확대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세심판원 소속 상임심판관의 비중이 확대되도록 할 것(시정 및 제도개선)

Ⅲ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가. 현 황

공공기관 갈등관리[1] 사업은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주요 공공정책 및 국책사업 관련 갈등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은 2019년도 예산현액 2억 8,700만원 중 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기관 갈등관리	257	257	0	30	287	286	0	1
갈등관리 연구	30	30	0	30	60	60	0	0
교육 및 인프라구축	120	120	0	0	120	120	0	0
갈등관리 운영지원	107	107	0	0	107	106	0	1

자료: 국무조정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기본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갈등관리규정"이라 함)이 기본법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갈등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2], 국민적 관심이 큰 갈등현안에 대해서 상시점검하기 위하여 '집중관리 갈등과제'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공갈등관리규정」 제26조[3]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시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1) 코드: 일반회계 7032-301

2)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3)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성과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오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제24조[4]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중 교육 및 인프라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갈등관리 교육 및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으로, 갈등관리 연구기관에 대한 민간보조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2019년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 갈등과제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심각하고 갈등이 현재화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8개의 갈등과제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2019년 갈등과제의 지정일자를 살펴보면, 2017년 8월에 지정된 갈등과제가 13개, 2018년 3월에 지정된 갈등과제가 4개로 장기간동안 관리되고 있는 과제들이 60.7%를 차지한다. 이들 과제 중 2019년 12월에 지정 해제된 3개를 제외하면 14개 과제들은 2020년에도 지속해서 관리되고 있어 실제 갈등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4)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9년 갈등과제 현황]

순번	과 제 명	갈등조정협의회 개최횟수	지정일자	비고
1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고용부	’17.8.	
2	공유경제(카풀앱·공유숙박) 활성화	국토·문체부	’18.3.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산업부	’18.3.	
4	국민연금 제도개편	복지부	’18.12.	
5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산업부	’17.8.	
6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중기부	’17.8.	’19.12. 과제 해제
7	ILO 핵심협약 비준	고용부	’18.12.	
8	지역경제 위기 극복 대응	산업·기재부	’18.3.	’19.12. 과제 해제
9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화재청	’17.8.	
10	대구-구미 취수원 문제	환경부	’17.8.	
11	부산 신규취수원 확보	환경부	’18.12.	
12	지방공항(김해·제주·흑산) 건설	국토부	’18.3.	
13	군공항(대구·수원·광주) 이전	국방부	’17.8.	
14	시간강사 처우 개선	교육부	’18.12.	’19.12. 과제 해제
15	4대강 보 추가 개방	환경부	’17.8.	
16	세월호 추모사업	해수부·국조실	’17.8.	
17	새만금사업 추진	새만금청	’18.12.	’19.12. 과제 해제
18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통위	’17.8.	
19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고용부	’17.8.	
20	태양광발전 사업	산업·농식품부	’18.12.	
21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	’18.12.	
22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대체복무제 마련	국방부	’18.12.	’19.12. 과제 해제
23	EEZ 바다모래 채취	해수·국토부	’18.12.	
24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	’17.8.	
25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	국방·환경부	’17.8.	
26	거창구치소 이전	법무부	’17.8.	’19.12. 과제 해제
27	가리왕산 생태복원	산림청	’19.1.	
28	포항지진 후속조치	산업·행안부	’19.5.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3년~2016년에는 ‘갈등점검협의회’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나 갈등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지자체간 갈등을 한 기구에서 총괄하여 해결할 수 있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갈등 현안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한 후 산하에 ‘갈등점검실무협의회(국무1차장 주재)’를 두어 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통로를 마련하였다.[5)]

현재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각 부처의 갈등관리 추진현황, 인프라 확충,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점검·논의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별 2~3회만 개최되고 있고 안건은 갈등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짐에 따라[6] 실제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 차관들이 갈등 사안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는 '갈등점검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개별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국무조정실의 소관 정책관실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갈등관리팀은 이를 총괄·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7]

[2017~2019년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년도	일시	안 건	참 석
2017	8.17	① 금년도 집중관리 갈등과제(비공개) ② 주요 갈등과제 진행상황 및 향후 관리방향(비공개)	19개 부처 차관
	11.16	① 집중관리 갈등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비공개) ②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비공개)	25개 부처 차관
2018	3.22	① '18년 갈등관리 추진계획(비공개) ② 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비공개)	25개 부처 차관
	7.5	① 금년도 갈등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비공개) ② 과제별 추진계획(비공개)	26개 부처 차관
	12.28	① '19년 갈등과제 관리계획(비공개) ② 갈등관리 제도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비공개)	26개 부처 차관
2019	5.2	① 갈등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관리계획(비공개)	26개 부처 차관
	12.26	① '20년 갈등과제 관리계획	24개 부처 차관

자료: 국무조정실

5)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가갈등조정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015.11.

6)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갈등 사안이다 보니 공개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7) 국무조정실의 기본적인 직무는 국정 조정이며, 이에 따라 국가갈등 조정 관련 기능은 국무1차장 산하의 국정운영실, 국무2차장 산하 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 등에 산재되어 있다. 갈등조정에 관한 총괄 조정 기능은 국무1차장 산하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갈등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모든 갈등사례에 직접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은 인적·물적 한계를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에 과도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보이며, 국무조정실은 다 부처가 연관되거나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 관련 모니터링,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팀은 1명의 과장과 2명의 사무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갈등관리팀이 각 부처의 갈등관리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 인력 확보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무조정실이 갈등과제를 단순히 관리만 하고 있을 뿐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며,[8] 2018년 한 연구 결과[9]는 현재의 갈등관리평가는 단지 갈등관리 관련 제도들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역할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 1회의 평가를 통해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보다는 분기별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성 있는 컨설팅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동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역할은 갈등관리 교육에 치우쳐져 있는 바, 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제24조[10]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연구기관

8) 2018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9) 김지수(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수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 갈등관리평가 방안 모색" 분쟁해결연구16, no.3 (2018): 5-36.

10)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을 지정하여 갈등관리 교육·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행정연구원과 단국대 분쟁해결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 및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두 연구기관에 각 6,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교육(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교육(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을 실시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한 2018년 보조사업연장평가에 따르면, 갈등관리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적어도 자치단체 혹은 중앙부처 자체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동 보조사업으로는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 '직접적인 갈등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마찬가지로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취지에는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실제 갈등 현안을 파악하며 점검·평가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나, 현재의 보조사업 운영방식은 일회성 갈등관리 교육에 치우쳐져 있다고 여겨진다.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2019년 각 기관이 수행한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갈등교육 수행횟수가 주된 사업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9년 보조사업자 사업결과보고 개요]

구 분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사업 목적	-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의 교육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 강화 - 부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과정 및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진행 - 갈등관리 교육의 내실화·정례화	- 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공유 - 자치단체 차원에서 갈등관리 현안 및 성공·실패 사례 공유 - 자치단체와 갈등관리 전문가와의 협력적 관계 강화를 통한 자치단체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
추진 실적	- 총 교육 횟수 34회, 총 교육시간 77.5시간, 총 교육인원 1,270명 *정기교육: 2회(상·하반기), 42개 기관, 103명 수료 *수시교육: 32회, 28개 기관, 1,167명 수료	- 자치단체 갈등관리 역량강화 기본교육 17회 - 자치단체 갈등관리 역량강화 코칭·컨설팅 10회

자료: 국무조정실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체계적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하여 교육·컨설팅·연구사업비 등이 2억원 증액되었으며,[11] 국무조정실은 2020년 기존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단국대, 방통대, 한양대)으로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완료된 갈등 사례에 대한 추진경과·시사점 등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은 낮고 공공갈등 해결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불충분하며, 일선 공무원들은 갈등예방·해결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또는 갈등관리팀의 갈등관리 계획·점검·평가 등의 역할 수행과 연계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 컨설팅이나 갈등관리계획 수립, 절차 설계를 지원하는 등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종합 지원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1) 내역사업 중 '갈등관리연구'은 정부안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교육 및 인프라 구축'은 정부안 1억 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었다.

2 규제개혁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은 2019회계연도 10억 3,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031	1,031	0	0	1,031	879	0	152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규제정책의 총괄기구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2]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의 규제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2019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전년도 보다 하락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책수요자, 전문가, 내부고객(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규제개혁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규제 품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이후 매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033-301

2)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사업의 성과목표 또한 규제개선 만족도 점수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구 분	정책수요자	전문가	내부고객
조사대상 (총2,651명)	○기업·협회·시민단체 관계자, 홈페이지 이용자 등 1,293명	○규개위 민간위원, 소관 분야 연구원 등 전문가 841명	○시·도 업무담당 공무원 517명
조사방법	○ 전화 및 온라인을 활용한 설문조사		
조사내용	○ 규제개혁 과제 인지 수준, 규제개혁 내용의 실효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적극성, 정책 집행의 신속성, 규제개혁 과정상 문제점 시정·보완, 규제개혁으로 인한 정책 신뢰도, 규제개혁 관련 성과 및 미흡한 점(서술형)		
측정척도	○ 설문항목별 만족도는 7점 척도 이용, 100점 만점 환산		

자료: 국무조정실

2019년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 26개 중앙행정기관(규제정비계획 상 정비과제가 2개 이하인 기관은 제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평가 결과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규제개혁 만족도 성과달성 현황]

성과지표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규제개선 만족도	목표(점)	69	69	69	**69.76**
	실적(점)	68.4	68.8	70	**67.9**
	달성률(%)	99.1	100.0	101.4	**97.3**

자료: 국무조정실

또한, 2016~2019년 조사대상 별 만족도 조사 점수를 살펴보면, 2016~2018년까지는 꾸준히 모든 조사대상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지만, 2019년에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만족도 점수가 하락하였다.

[2016~2019년 대상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합만족도	68.4	68.8(0.4)	70.0(1.2)	**67.9(△2.1)**
일반인	66.0	66.3(0.3)	66.5(0.2)	**65.2(△1.3)**
전문가	73.0	73.5(0.5)	76.4(2.9)	**73.2(△3.2)**
내부고객	68.9	69.8(0.9)	71.8(2.0)	**68.5(△3.3)**

주: ( )안의 수는 전년대비 증감 규모를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규제개혁 만족도가 하락한 원인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체계 혁신(규제 샌드박스 등), 추진방식 혁신(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공직자 혁신(적극행정 확산), 현장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패러다임의 초기 단계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2019년에는 승차공유 분야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핵심규제(big issue)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규제개혁에 대한 불만족은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19년 5월 발표한 중소기업의 규제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 정부 규제개선 정도에 있어서 변화없음은 50.4%,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29.8%,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4.0%로 나왔으며, 기업규제 적절성은 43.7%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정부규제 및 행태에 대한 불만족 기업은 각각 33.4%, 33.6%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규제·행태·규제혁신 등 인식조사 결과(중소기업옴부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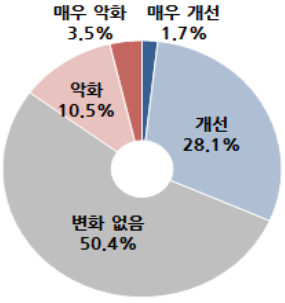

[현정부 규제개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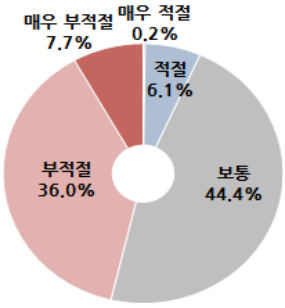

[기업규제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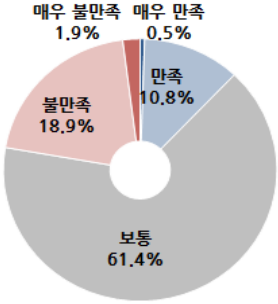

[규제혁신 성과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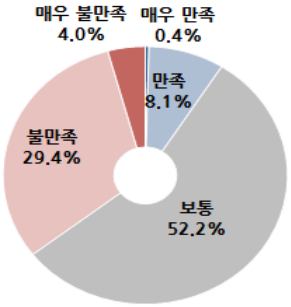

[정부규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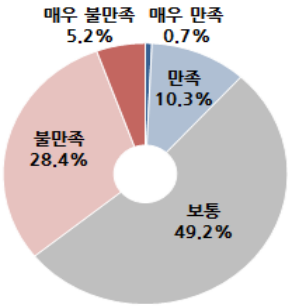

[정부행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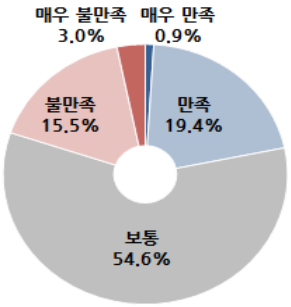

[기업환경 만족도]

자료: 중소기업옴부즈만 보도자료(2019.5.15.),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정극행정 문화창출!」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대상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는 작년대비 하락하였으며(2018년 97.2 → 2019년 94.1),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불만족 기업(22.0%)이 만족 기업(11.7%)의 2배에 달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서도 부정적 응답(30.6%)이 긍정적 응답(15.6%)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 결과(전경련)]

(단위 : %, 체감도)

구 분	N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69	6.0	16.0	66.3	7.2	4.5	94.1
대기업	235	4.7	17.0	65.5	8.9	3.8	95.1
중소기업	234	7.3	15.0	67.1	5.6	5.1	93.2

주: 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하여 지수가 100초과면 만족, 100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
자료: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표」

규제개혁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정착된다고 하더라도 규제개혁 체감도가 제고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학술파견자 경비의 집행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23
2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학술파견자 생활준비금, 이사보조비 등 집행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23
3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27
4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홈페이지 개선 비용 등 집행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30
5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비 중 기본연구사업비 비중 하락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33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업계획에 없고 타 사업에서 추진 가능한 국외출장 실시 부적정 등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37
7	국제기구협력사업의 사업계획에 없고 타 사업에서 추진 가능한 국외출장 실시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37
8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 사업의 사용용도 외 집행 과다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43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의 사업수행체계 개선 필요 등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46
10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의 사업수행체계 개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46
11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채용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경비 집행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51
12	한국교육개발원 수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선택 필요 등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54
13	수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선택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54
14	기관운영출연금에 비하여 수탁사업 과제수와 비율의 과다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58
15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원격지원 사업 등 수탁사업의 이월금 과다 발생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61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상운영비 성격이 강한 상해연구센터 사무실 임차료의 연구사업비 집행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64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7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리에 따른 도시정책 연구기능의 업무 구분 및 협업을 통한 사업성과 확대 필요 등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68
18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정책연구기능의 협업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68
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리에 따른 도시정책 연구기능의 업무 구분 및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확대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71
20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의 개원 기념식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 부적절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74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시연구사업비를 통한 학술행사 추진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78
22	한국교통연구원의 계약 법령을 위반한 위탁용역대가 지급 지연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82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비 외의 민간 학술대회 지원 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85
24	연구관련사업비 외의 민간 학술대회 지원 사업 추진 지양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85
25	기관고유사업비 대비 일반사업비 비중 과다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88
26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통한 해외체류연구사업의 추진 부적정 등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92
27	연구사업비를 통한 해외체류연구사업의 추진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92
28	기관고유사업 수용비의 연례적 조정 증액 과다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97
29	한국행정연구원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정년퇴직자 대상의 과도한 포상 부적정 등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99
30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포상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99
31	참여하지 않는 민간 학회의 학술대회 지원금 지급 지양 등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102
32	산업연구원의 지침을 위반한 재외근무수당의 연구정보활동비 집행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104
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통한 연구연가자 생활준비금 등 지급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107

국민권익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억 4,100만원이며, 10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2%인 9억 6,800만원을 수납하고 9,4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141	1,141	1,141	1,062	968	97	-	91.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74억 9,800만원이며, 이 중 91.4%인 799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75억 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7,498	87,498	87,498	79,992	-	7,506	91.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l@assembly.go.kr, 6788-4687)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산은 289억 3,500만원, 부채는 7,400만원으로 순자산은 288억 6,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0억 3,300만원, 일반유형자산 233억 4,800만원, 무형자산 45억 5,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9억 4,500만원(6.3%)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사무소 이전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23억 5,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7,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500만원(722.2%) 증가하였다. 이는 무기 계약직의 퇴직금 추계액 증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 6,100만원 증가, 소송충당부채 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8,935	30,880	(1,945)	(6.3 %)
Ⅰ. 유동자산	1,033	860	173	20.1 %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23,348	22,202	1,146	5.2 %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4,550	6,905	(2,355)	(34.1 %)
Ⅵ. 기타비유동자산	4	913	(909)	(99.6 %)
부 채	74	9	65	722.2 %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74	9	65	722.2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28,861	30,872	(2,011)	(6.5 %)
Ⅰ. 기본순자산	13,678	13,678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0,329	12,336	(2,007)	(16,3%)
Ⅲ. 순자산 조정	4,854	4,858	(274)	(5.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77억 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877억 9,500만원, 비배분비용 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9,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4억 1,600만원(5.3%) 증가한 877억 400만원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유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 45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비배분비용 1억 3,400만원 감소 및 비배분수익 2,200만원 증가함에 따라 비배분손익이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 877억 9,500만원은 모두 국민권익증진 프로그램원가이다.

그 밖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집계된 원가는 없으며, 비배분비용은 전기 징수결의 착오 정정 300만원, 소송충당부채전입액 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7,795	83,223	4,572	5.5 %
가. 프로그램 총원가	87,795	83,223	4,572	5.5 %
나. 프로그램 수익	-	-	-	-
Ⅱ. 관리운영비	-	-	-	-
Ⅲ. 비배분비용	8	142	(134)	(94.4 %)
Ⅳ. 비배분수익	99	77	22	28.6 %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87,704	83,288	4,416	5.3 %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87,704	83,288	4,416	5.3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308억 7,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88억 6,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0억 1,100만원(6.5%)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877억 4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4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856억 9,700만원으로 집계되어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및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866억 6,5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9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환입 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30,872	33,143	(2,271)	(6.9 %)
Ⅱ. 재정운영결과	87,704	83,288	4,416	5.3 %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5,697	81,021	4,676	5.8 %
Ⅳ. 조정항목	(4)	(4)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8,861	30,872	(2,011)	(6.5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종합상담창구 운영, ②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 등이 있다.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은 정부합동민원센터가 2019년 4월 입주예정임을 감안하여 임차료 11개월분 중 3개월분인 3억원과 콜센터 통합에 따라 절감가능한 관리용역비 9,600만원 등 3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은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링 예산 등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다.[1)]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행정심판 운영에서 국선대리인 사례비 3,100만원 증액 등이 있다.[2)]

---

1) 정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정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 창출 ②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익 최우선 보호 ③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고 민원처리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

둘째,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에 있어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모분야 선정에 있어서도 콘텐츠 제작 용이성,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고충민원 건수 증가에 따른 민원서비스 처리능력 제고 필요

가. 현 황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즉,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등 일반민원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2차 민원이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해당민원을 받은 원 처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민원처리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조사하여 조사결과 행정기관 등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고, 민원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을 한다. 그리고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령,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매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민원 처리역량과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고 민원처리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고충 민원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고충민원의 접수건을 경로별로 살펴보면 2019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건이 전체 56,189건 중 42,443건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대비 비중 역시 2017년 42.8%에서 2019년 75.5%로 증가하였다. 반면 국민신문고 외의 경로를 이용하여 접수한 고충민원 건수는 2017년 15,189건, 2018년 13,781건, 2019년 13,74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있다.

[2017~2019년 경로별 고충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국 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 신	방 문	대통령 비서실 이관	기 타 (팩스 등)
2017	26,533	11,344	1,629	4,269	1,199	7,146	946
2018	30,712	16,931	1,524	3,697	989	6,315	1,256
2019	56,189	42,443	1,858	3,978	1,116	5,620	1,17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9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건이 각각 317건, 316건으로 증가하는 한편 안내회신으로 단순히 종결된 민원건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접수되는 민원이 단순 안내로 해결되기 보다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조사활동이 필요한 보다 복잡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2019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계	고충민원								기 타 민 원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심의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회신 (종결)	
2017	16,149	10,263	174	211	2,201	696	456	85	6,440	5,886
2018	14,094	9,769	210	238	1,965	1,115	555	89	5,597	4,325
2019	17,947	11,855	317	316	1,819	2,907	812	1,756	3,928	6,09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접수건수는 56,189건으로 전년대비 82.9% 증가하였다.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충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23.0일로 증가하였으며 고충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인 60일[2]을 초과한 민원건수도 2017년 752건에서 2019년 1,661건으로 증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하였다. 또한 접수 민원의 인용률은 2017년 25.2%에서 2019년 20.7%로, 처리만족도도 2017년 78.5점에서 2019년 75.9점으로 감소하였다.

[2017~2019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접수(건)	26,533	30,712	56,189
처리[1](건)	26,623 (16,149)	29,609 (14,094)	42,031 (17,947)
60일 초과~120일 이하(건)	704	828	1,575
120일 초과(건)	48	46	86
인용률(%)	25.2	24.7	20.7
평균처리기간(일)	18.8	19.8	23.0
처리 만족도(점)	78.5	76.7	75.9

주: 1) 괄호는 유사·반복민원 처리건수를 병합한 수치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와 같이 민원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민원처리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권익 구제를 제대로 신속하게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기간인만큼, 이를 초과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그 복잡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고충, 금융민원, 집단민원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3].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이나 2020년 7월 현재 설치기관은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37곳에 불과하다.

둘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등급이 2년 연속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하위권인 라~마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평가등급을 가~마등급으로 나누어, 상위 10%는 가등급, 10~30%는 나급, 30~70%는 다급, 70~90%는 라등급, 90~100%까지는 마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고충민원 관리·점검,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고충민원 만족도 4가지 지표를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평가하였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부여기준]

평가등급 (등급비율)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
종합순위	상위 10%이내	10%초과 30%이하	30%초과 70%이하	70%초과 90%이하	90%초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포함되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에는 상위 70~90%인 라등급, 2019년에는 최하등급인 마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라~마등급 기관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미흡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맞춤형 컨설팅 대상이 되는 등급이다.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결과가 낮게 나타날 경우, 고충민원의 최종 처리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외적 위상 하락 및 각 기관에 대한 개선 요구의 수용성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낮은 평가등급의 원인을 파악,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가. 현 황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1]은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현액 17억 2,600만원 중 1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726	1,726	-	-	1,726	1,667	-	5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에 있어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모분야 선정에 있어서도 콘텐츠 제작 용이성,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공모전 운영 및 상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용역비 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6-361

[2017~2019년 반부패 청렴사례공모전 내역사업 관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7	200	200	0	0	200	194	0	6
2018	200	200	0	0	200	196	0	4
2019	200	200	0	1	201	201	0	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2017년에는 사연/수기, 독후감, 웹툰, UCC, 강의, 2018년에는 사연/수기, 단편소설, 독후감, 영상물, 강의/강연, 2019년에는 사연/수기,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랩(Rap) 분야로 나누어 작품을 진행되었다. 2017년 1,590편, 2018년 1,645편, 2019년 1,066편의 작품이 각각 참가 접수되었고, 수상작품들은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 및 유튜브의 국민권익위원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수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상자 중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응모시 공직자와 일반인로 부문을 나누어 응모하도록 되어 있는 수기 분야의 2019년 응모자가 공직자 747명, 일반인 159명으로 공직자 비율이 82.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높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수기를 제외한 기타 분야 응모작품 수가 160건에 불과하여 예년 대비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다큐멘터리 부문과 랩(Rap) 부문은 응모작품 수가 저조하여 공모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기도 하였다.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주제의 특성상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자의 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으나, 동 공모전이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으로서 그 취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정직·공정·정의 등 청렴 사연을 공유함으로서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우리사회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점임을 감안할 때,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8~2019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현황]

(단위: 명, %)

분야		응모	시상	
			전체	공직자 (비율)
2018	소계	1,645	59	33(56.0)
	사연·수기	713	16	8(50.0)
	단편소설	255	7	4(57.0)
	영상물	142	9	5(56.0)
	독후감	443	13	6(46.0)
	강의·강연	92	14	10(71.0)
2019	소계	1,066	50	26(52.0)
	수기	906	16	8(50.0)
	스토리텔링	51	12	9(75.0)
	다큐멘터리	29	11	5(45.5)
	랩(Rap)	80	11	4(36.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수상작의 1건당 평균조회수를 살펴보면 2020.7.13. 기준 2017년 수상작 1,178회, 2018년 수상작 1,124회, 2019년 수상작 653회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는 영상물(UCC)의 평균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영상물을 대체하여 다큐멘터리, 랩(Rap) 등으로 분야를 한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기존의 영상물 대비 낮은 평균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해당 분야의 반부패·청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공모 분야 선정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콘텐츠 제작 용이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조회수]

(단위: 개, 건)

구분		수상작수	평균조회수	최대조회수	최소조회수
2017	사연/수기	23	107	412	31
	독후감	4	31	62	13
	웹툰	11	144	465	46
	UCC	11	5,171	17,506	663
	강의	5	512	1,418	35
	소계	54	1,178	17,506	13

(단위: 개, 건)

구분		수상작수	평균조회수	최대조회수	최소조회수
2018	사연/수기	16	836	5,440	168
	독후감	13	96	548	17
	단편소설	7	184	841	41
	영상물	9	4,211	11,721	823
	강의/강연	13	876	3,489	49
	소계	58	1,124	11,721	17
2019	사연/수기	16	440	3,437	66
	스토리텔링[1)]	12	795	4,778	137
	다큐멘터리	11	589	1,901	172
	랩(Rap)	11	872	4,048	216
	소계	50	653	4,778	66

주: 1) 반부패·청렴 관련 주제를 강연·토크쇼 등 말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표현
1. 2020.7.13. 기준 조회수
2. 영상물은 유튜브(YouTube) 조회수, 비영상물은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조회수
3.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되지 않은 수상작이 있어 실제 수상건수와 차이 발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둘째,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의 성과지표 중 "국민 청렴의식 확산"의 성과 측정방식은 단순 보도자료 게재 등도 실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동 사업을 통한 실제 청렴의식 확산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 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중 "국민 청렴의식 확산"은 성과목표 측정방식으로 국민참여예산 국민점검단 점검건수 및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건수를 더한 값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동 성과지표는 2019년 신규로 설정되었으며, 2019년 목표는 6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국민참여예산 국민점검단 점검 4건과 보도자료 3건 등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 성과지표 설정 현황]

(단위: 건, %)

성과지표	구분	'19	'2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국민 청렴의식 확산 (단위: 건)	목표	6	8	국민점검단 점검건수 + 대국민 홍보건수 + 정보제공 건수
	실적	7	-	
	달성도	116.7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국민 청렴의식 확산 성과지표 실적 내역]

구분	일자	제목(내용)
국민참여예산 국민점검단 점검 (4건)	’19.2.15.~ ’19.2.21.	국민참여예산 활용「대국민 청렴교육 방안」에 대한 국민(7명) 의견수렴
	’19.4.1.~’ 19.4.4.	「온라인 공개강좌 청렴-MOOC 제작」사업에 대한 국민(6명) 의견수렴
	’19.4.29.~ ’19.5.8.	「대국민 교육영상물 청렴채널i 제작」사업에 대한 국민(6명) 의견수렴
	’19.6.13.~ ’19.6.20.	「미래세대 교실용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6명) 의견수렴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보도자료, 3건)	’19.7.16.	참여와 체험으로 미래세대에 “청렴”을 심다
	’19.10.21.	서울대학교에 청렴교육이 찾아갑니다.
	’19.11.19.	“청렴아~ 놀자!”...수능 치른 고3 대상 청렴문화캠프 열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그런데 동 성과지표는 국민참여예산 국민점검단을 통한 의견수렴횟수와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 게재건수의 합산으로 실적을 측정하고 있어, “국민 청렴의식 확산” 정도를 엄밀히 측정하기에는 적절한 지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게재한 건을 성과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보도자료들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조회수가 2020. 7. 13. 기준 300여회에 불과하고, 이를 인용한 보도도 소수의 인터넷 언론 매체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보도자료의 게재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이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만족도 평가의 교육효과성 평가항목의 평가결과나 동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참여건수 및 수상작 조회건수 등을 활용하는 등 실제 국민 청렴의식 확산에 동 사업이 끼친 영향을 엄밀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및 성과 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국가보훈처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0억 900만원이며, 66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7.1%인 31억 4,900만원을 수납하는 33억 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억 3,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948	7,948	7,948	6,579	3,040	3,309	230	46.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	61	61	40	40	-	-	1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	69	69	-	-	100
합계	8,009	8,009	8,009	6,688	3,149	3,309	230	47.1

자료: 국가보훈처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2,985억 5,100만원이며, 이 중 98.5%인 5조 2,19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35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7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270,119	5,270,119	5,275,702	5,198,755	13,514	63,433	98.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831	20,831	20,831	18,725	-	2,106	89.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8	2,018	2,018	1,795	-	223	88.9
합계	5,292,968	5,292,968	5,298,551	5,219,275	13,514	65,762	98.5

자료: 국가보훈처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3736)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184억 4,500만원이며, 1,005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1.9%인 823억 9,900만원을 수납하고 171억 1,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억 6,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210,515	210,515	210,515	95,983	77,810	17,105	1,068	81.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7,930	7,930	7,930	4,603	4,589	14	-	99.7
합계	218,445	218,445	218,445	100,586	82,399	17,119	1,068	81.9

자료: 국가보훈처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2,218억 1,200만원이며, 이 중 95.2%인 2,11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105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137,166	137,166	137,166	127,088	-	10,078	92.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1,496	84,646	84,646	84,138	-	508	99.4
합계	218,662	221,812	221,812	211,226	-	10,586	95.2

자료:국가보훈처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409억 600만원(△62.2%)이 감소한 85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9억 5,100만원(△6.5%)이 감소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849	8,009	8,009	3,149	△4,860	△3,700
기금	84,650	218,445	218,445	82,399	△136,046	△2,251
합계	91,499	226,454	226,454	85,548	△140,906	△5,951

자료: 국가보훈처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42억 7,800만원(△1.5%)이 감소한 5조 4,305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69억 1,800만원(0.9%)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164,723	5,292,968	5,292,968	5,219,276	△73,692	54,553
기금	218,861	218,662	221,812	211,226	△10,586	△7,635
합계	5,383,584	5,511,630	5,514,780	5,430,502	△84,278	46,918

자료: 국가보훈처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보훈처 자산은 전년 대비 337억 1,200만원이 증가한 1조 9,605억 6,2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694억 7,500만원이 감소했음에도 국립괴산호국원 준공 등 자본적 지출 등에 의해 일반유형자산이 966억 2,2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20억 8,000만원 증가한 591억 6,100만원으로 기타유동부채 15억 5,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16억 3,200만원이 증가한 1조 9,014억 100만원이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960,562	1,926,850	33,712	1.7
Ⅰ. 유동자산	234,165	277,315	△43,150	△15.6
Ⅱ. 투자자산	324,532	350,857	△26,325	△7.5
Ⅲ. 일반유형자산	1,386,029	1,289,407	96,622	7.5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9,038	4,552	4,486	98.6
Ⅵ. 기타비유동자산	6,798	4,719	2,079	44.1
부 채	59,161	57,081	2,080	3.6
Ⅰ. 유동부채	6,597	5,041	1,556	30.9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1,103	579	524	90.5
Ⅳ. 기타비유동부채	51,461	51,461	-	-
순 자 산	1,901,401	1,869,769	31,632	1.7
Ⅰ. 기본순자산	848,492	848,49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589,405	574,259	15,146	2.6
Ⅲ. 순자산 조정	463,504	447,018	16,486	3.7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조 3,013억 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조 2,701억 6,400만원, 관리운영비 1,238억 9,400만원, 비배분비용 59억 5,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49억 4,300만원, 비배분수익 287억 7,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349억 9,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66억 7,400만원(1.1%) 증가한 5조 3,363억 2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가보훈처 사업예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보훈심사 및 보상 프로그램(4조 1,934억 2,500만원)과 보훈의료복지 프로그램(7,641억 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55억 8,200만원과 경비 383억 1,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39억 1,100만원과 대손상각비 1억 8,000만원, 기타비용 17억 8,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235,221	5,172,543	62,678	1.2
가. 프로그램 총원가	5,270,164	5,206,342	63,822	1.2
나. 프로그램 수익	34,943	33,799	1,144	3.4
Ⅱ. 관리운영비	123,894	117,916	5,978	5.1
Ⅲ. 비배분비용	5,959	8,674	△2,715	△31.3
Ⅳ. 비배분수익	28,772	19,505	9,267	47.5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336,302	5,279,628	56,674	1.1
Ⅵ. 비교환수익 등	34,999	36,906	△1,907	△5.2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301,303	5,242,722	58,581	1.1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8,697억 6,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9014억 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16억 3,200만원(1.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5조 3,013억 400만원이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5조 3,164억 5,000만원, 조정항목이 164억 8,6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5조 3,213억 9,8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9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58억 2,1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06억 6,5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869,769	1,889,598	△19,829	△1.0
Ⅱ. 재정운영결과	5,301,304	5,242,722	58,582	1.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316,450	5,224,259	92,191	1.8
Ⅳ. 조정항목	16,486	△1,367	17,853	1,30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901,401	1,869,769	31,632	1.7

자료: 국가보훈처

마.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762억원, 복권기금에서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사업을 위하여 보훈기금으로 264억원 전출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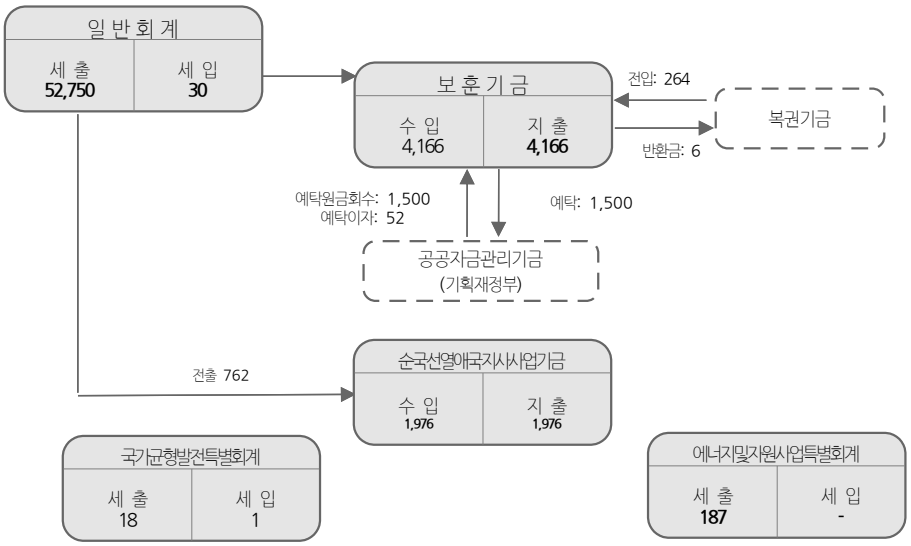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 국가보훈처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가보훈처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 ② 국립이천호국원 사업** 등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은 공사비 등 3억원이 감액(83억 3,400만원→80억 3,400만원)되었고, 국립이천호국원은 2021년부터 묘역확충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관련 감리비 3억원이 감액(126억 2,100만원→123억 2,100백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② 현충시설 건립사업** 등이 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보훈회관 신규 건립 등을 위하여 17억 5,000만원(15억원→32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현충시설 건립 사업은 전남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등 3개 현충시설 건립비를 신규 반영하여 6억 1,700만원(149억 9,400만원→156억 1,100만원) 증액되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가보훈처는 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② 희생과 헌신을 알리는 보훈선양 추진, ③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④UN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 사업 확대를 2019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보훈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비적정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 사업의 경우 묘지 조성 등 시설공사에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 안장수요에 비하여 안장능력 부족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적기에 안장능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장능력을 확충함에 있어서 최근의 장사문화 변화에 대응하여 장사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보훈단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보훈단체운영 사업과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1]은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14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는 2019년도 예산현액 335억 700만원 중 330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보훈단체운영 및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3,507	33,507	0	0	33,507	33,012	0	495
보훈단체운영	25,131	25,131	0	0	25,131	24,732	0	399
재향군인회 지원	8,376	8,376	0	0	8,376	8,280	0	96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되는 주요 보훈단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비적정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7조의2[2]는 중앙관서의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238-315, 보훈기금 4163-436

2)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단체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비적정(한정, 의견거절)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에 비하여 2019회계연도에 한정의견을 받은 비중이 증가하였다(2017회계연도: 33%(9건 중 3건) → 2019회계연도: 50%(10건 중 5건)).

[각 회계연도별 외부회계감사 의견]

(단위: 백만원)

단체명	2019회계연도 보조금총액[1]	감사의견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	1,654	적정	제출생략	적정
○○	7,795	미수감[2]	**한정**	**한정**
☆☆	2,524	**한정**	제출생략	적정
★★	2,106	적정	제출생략	**한정**
◇◇	3,199	적정	제출생략	적정
◆◆	2,625	적정	**한정**	**한정**
△△	2,518	적정	제출생략	**한정**
▲▲	2,716	**한정**	제출생략	적정
▽▽	2,016	적정	제출생략	적정
◎◎	8,280	**의견거절**	**의견거절**	**의견거절**

주: 1) 동 사업 뿐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까지 합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을 의미
2) 동 단체의 경우 수익사업 규모가 크고 그 내용이 다양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는 1년 지연하여 수감하였다는 국가보훈처의 설명임(2018회계연도 최초 수감).
1.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
2. '제출생략'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단서조항에 따라 생략됨을 의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규모가 큰 보훈단체(○○, ◆◆, ◎◎)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

자료: 국가보훈처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으로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다.[3] 보훈단체 회계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적정에 비하여 비적정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정, 의견거절)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일부 단체는 매년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들 단체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지적되기도 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일례로, ○○에 대한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의 선급금과 유형자산, 일부 사업부문,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 근거]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우리는 회사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953백만원과 선급금 380백만원, 유형자산 28,722백만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회사가 계상한 **재고자산, 선급금, 유형자산**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타사업 부문 중 2018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 1.4%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순이익의 12.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동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우리는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선급금과 유형자산**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회사가 계상한 선급금과 유형자산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타사업 부문 중 2019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 0.7%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순이익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 사업부문**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중 953백만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 ○○의 각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3) 감사 의견 종류에 대한 세부설명은 다음과 같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8.14.),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p.9
①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②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③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의 경우 시·도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의견거절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도회 사업부 재무제표는 ◎◎ 통합 재무제표 상 자산총계의 34.2%(255,507백만원/747,765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어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시·도회 13개회, 시·군·구회 223개회, 읍·면·동회 3,221개회로 구성된 조직적 특성의 사유로 재무 정보의 취합이 결산 일정 내에 종료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이는 2018회계연도에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던 사유다.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근거]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

(1) 재고자산: 재고자산 실사에 미입회
(2) 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지급보증: 감사범위의 제한
(3) 수익사업출자금: 감사범위의 제한
(4) 유형자산: 감사범위의 제한
(5) 순자산의 변동 내역 및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주석 미기재: 내역 미제공
(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감사증거 미입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

(1) 재고자산: 재고자산 실사 미입회
(2) 수익사업출자금: 감사증거 미입수(이전 회계연도까지의 관련 자료 부재)
(3) 순자산 변동내역: 감사증거 미입수(이전 회계연도까지의 관련 자료 부재)
(4) 시·도회 재무제표: 감사증거 미입수(결산 일정 내 재무정보 미취합)
(5) 주석: 감사증거 미입수(결산 일정 내 재무정보 미취합)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1) 시·도회 재무제표: 감사 범위의 제한(결산 일정 내 재무정보 미취합)
(2) 은행조회서 발송 및 회신의 불완전성: 증빙의 미비 등
(3) 내부거래내역: 감사증거 미입수

자료: ◎◎의 각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둘째,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연간 매출액 20억 이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비적정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보훈단체는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여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함) 제22

조[4][5]는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수행된 2016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각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매년 지속적으로 한정의견 등의 비적정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각 회계연도별 수익사업 외부회계감사 결과]

회계 연도	단체명	외부회계감사 대상사업 수	감사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2016	○○	**28**	**11**	**16**	**0**	**1**
	◆◆	18	18	0	0	0
	▽▽	1	1	0	0	0
	▣▣	1	1	0	0	0
	◎◎	**3**	**1**	**2**	**0**	**0**
	소 계	**51**	**32**	**18**	**0**	**1**
2017	○○	**24**	**15**	**9**	**0**	**0**
	◆◆	18	18	0	0	0
	▽▽	1	1	0	0	0
	▣▣	1	1	0	0	0
	◎◎	**3**	**0**	**2**	**0**	**1**
	소 계	**47**	**35**	**11**	**0**	**1**
2018	○○	**27**	**16**	**9**	**0**	**2**
	◆◆	**17**	**16**	**0**	**0**	**1**
	▽▽	4	4	0	0	0
	▣▣	1	1	0	0	0
	◎◎	**3**	**0**	**3**	**0**	**0**
	소 계	**52**	**37**	**12**	**0**	**3**

4) 「국가유공자단체법」
제22조(회계감사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이다.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의 경우 각 단체의 설립근거 법률에서 수익사업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하고 있다.

회계 연도	단체명	외부회계감사 대상사업 수	감사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2019	○○	**23**	**15**	**7**	**0**	**1**
	◆◆	**13**	**12**	**0**	**0**	**1**
	▽▽	4	4	0	0	0
	▣▣	1	1	0	0	0
	◎◎	**3**	**2**	**1**	**0**	**0**
	소 계	**44**	**34**	**8**	**0**	**2**

주: 일부 보훈단체의 경우 보훈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 외에 보훈단체가 출자한 자회사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표에서 제외
자료: 국가보훈처

2019회계연도의 수익사업 회계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의 사업소는 대부분 재고자산 수불부[6]나 원가계산제도 미흡 등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신뢰성 부족 때문에 한정의견이 제출되었으며(5건), 그 외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1건)[7], 선급금과 관련된 신뢰성 부족(1건)으로 한정의견이 제출되었다. 의견거절의 경우 ○○-1이 용역원가 81억 900만원에 대한 감사증거 입수 불가로 의견거절을 받았고, ○○-2가 재고자산 수불관리 및 원가계산제도 미흡과 자금거래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미흡,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8]으로 인하여 의견거절(1건)을 받았다.

의견거절을 받은 ◆◆의 사업소는 종량제봉투제조업으로 전기(2018회계연도)재무제표는 특수관계자와 연관된 매출채권, 매입채무, 대여금, 차입금 잔액과 주요채권 채무잔액 및 부외부채에 대해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고,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증빙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지출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며, 당기(2019회계연도)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했음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6) 재고자산 수불부란 재고자산 품목 단위로 일자별 입고와 출고 거래를 이용하여 기초재고, 당기입고, 당기출고, 기말재고의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 수량·금액·단가로 구성하여 작성된 장부를 말한다.

7) 용역 관련한 사업소로 주요 매출처인 공공기관들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소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한정의견을 받았다.

8) 앞서 한정의견을 받았던 근거와 달리, ○○-2는 과도한 영업손실(145백만원) 및 당기순손실(186백만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38백만원 초과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계속기업가정의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는 4회계연도 기간 동안 대부분 한정의견을 받았지만, 2019회계연도에 회계처리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 직영사업은 용역사업, 휴게소사업, 임대사업 등 3개 사업이 있다. 용역사업과 휴게소사업 본부는 2017, 2018회계연도에 재고자산 실사입회 미실시를 사유로 한정의견을 받았지만, 2019회계연도에는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점에서 회계처리에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사업 본부는 2016회계연도에는 선수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정의견을 받았고, 2017, 2018, 2019회계연도에는 장기대여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각각 의견거절, 한정, 한정의견을 받아 아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보훈단체 및 그 수익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이 많은 상황이며, 연례적으로 동일한 사유가 제시되고 있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수십억 규모의 국고보조가 지원되고 있는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규모에 따른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에서 보훈단체에게 특별히 수익사업은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동 법에서 수익사업의 근거와 함께 회계감사, 수익금의 사용,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투명한 사업운영을 바탕으로 그 수익금이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무제표는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단체·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로, 연례적인 비적정의견은 관계 법률의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해당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비전문가로 구성된 보훈단체의 특성상 재무회계 전문성은 낮은 반면 통제범위는 광범위하여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또한 ◎◎는 산하 3,457개 각급 회가 있어 조직규모가 큰 만큼 시·도회의 재무정보의 취합이 결산 일정 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2019회계연도 뿐 아니라 이전 회계연도에도 제기된 문제들로 보훈단체의 재무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제도

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계감사 시 비적정의견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사항들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례로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하여 비적정의견이 나오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 감사인 선임을 재고자산 실사기간에 맞추어 앞당기도록 안내하고 재고실사와 관련된 보훈단체의 협조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는 시·도회 사업의 재무제표가 감사기간 내에 취합이 안 되어 2018, 2019회계연도에 의견거절을 받았는데, 시·도회의 재무제표 취합이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훈단체들의 부족한 회계 관련 인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훈처 차원의 재무회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관계 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나갈 필요가 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나 신뢰성 부족으로 비적정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규모가 작은 보훈단체나 그 수익사업소는 관련 전문 인력이나 재정의 부족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노하우나 기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보훈처도 보훈단체에 대한 재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수감 결과 서류처리 등이 미비한 사례 등을 종합·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 사업[1]은 국립묘지 안장능력 적기 확충으로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그 마지막 예우에 걸맞은 안장서비스를 갖추어 안장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 사업은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647억 6,300만원 중 79.3%인 513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9억 2,900만원을 이월하고, 64억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 결산 현황(세부사업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립묘지조성및관리	62,856	1,907	±244	64,763	51,366	79.3	6,929	6,468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20	74	0	394	389	98.7	0	5
국립대전현충원	22,283	10	0	22,293	13,872	62.2	5,720	2,701
국립4.19묘지	921	0	△200	721	598	82.9	0	123
국립3.15묘지	395	0	0	395	383	97.0	0	12
국립5.18묘지	1,233	884	0	2,117	2,074	98.0	0	43
국립영천호국원	4,409	384	△5	4,788	4,691	98.0	0	97
국립임실호국원	4,301	421	39	4,761	4,664	98.0	0	97
국립이천호국원	12,321	134	△39	12,416	11,116	89.5	1,209	91
국립산청호국원	2,566	0	0	2,566	2,449	95.4	0	117
국립신암선열공원	632	0	5	637	488	76.6	0	149
국립괴산호국원	1,747	0	200	1,947	1,842	94.6	0	105
국립묘지조성	11,728	0	0	11,728	8,800	75.0	0	2,928

자료: 국가보훈처

1) 코드: 일반회계 3250

2-1. 안장능력 적기 확충을 위한 집행률 제고 필요

가. 현 황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립묘지는 현충원 2개소(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3]), 민주묘지 3개소(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호국원 5개소(이천호국원,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산청호국원, 괴산호국원)으로, 각 묘지의 안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립묘지 일반현황]

구 분	국립대전현충원	국 립 호 국 원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괴산호국원
위 치	대전 유성구 갑동	경북 영천시 고경면	전북 임실군 강진면	경기 이천시 설성면	경남 산청군 단성면	충북 괴산군 문광면
국립묘지 승격일	1979.8.29.	2006.1.30.	2006.1.30.	2007.12.6.	2015.2.27.	2019.10.11.
안장능력	100,918기	51,805기	35,296기	50,002기	10,008기	20,447기
묘역면적	3,309천㎡	390천㎡	448천㎡	292천㎡	577천㎡	898천㎡
조성기간	'79.4～'85.11	'97.4～'00.10	'98.8～'01.11	'02.1～'07.12	'04.2～'14.12	'12.12~2019.10

구 분	국립4·19 민주묘지	국립3·15 민주묘지	국립5·18 민주묘지	국립신암 선열공원	국립 서울현충원[1]
위 치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암동	광주 북구 운정동	대구 동구 동북로	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묘지 승격일	1995.4.17.	2002.8.1.	2002.7.27.	2018.5.1.	1965.3.30.
안장능력	562기	122기	1,966기	52기	79,284기
묘역면적	97천㎡	128천㎡	168천㎡	36.8천㎡	1,419천㎡
조성기간	'93.10.～'95.4.	'98.3.～'03.3.	'94.7.～'97.5.	'82.2.~'87.3.	'54.3.～'55.7.

주: 1)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관리 국립묘지임
자료: 국가보훈처

---

2) 「국립묘지법」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7. 국립신암선열공원

3)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현충원/호국원/4·19, 3·15민주묘지/5·18민주묘지 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단위: 명, 기)

구 분	안 장 대 상	
현충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순국선열·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 ◦ 현역군인·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전·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전몰·순직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국가사회공헌자	
호국원	◦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민주묘지	4·19, 3·15민주묘지	◦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5·18 민주묘지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희생자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 사업의 경우 묘지 조성 등 시설공사에서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다. 적기에 안장능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40만 4,992명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10만 2,66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5.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국립묘지의 잔여기수는 53,016기로 안장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생존 안장대상자 및 안장 현황]

(단위: 명, 기)

구분	생존 안장대상자		안장 현황			부족분	
	전체 (A)	80세이상 (B)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C)	전체부족분 (A-C)	5년이내 예상부족분(B-C)
합계	**404,992**	**102,662**	**350,410**	**297,394**	**53,016**	**352,461**	**49,646**
현충원	175,595	27,853	180,202	164,906	15,296	159,536	12,557
호국원	225,340	74,453	167,558	131,147	36,411	190,168	38,042
민주묘지	4,057	356	2,650	1,341	1,309	2,757	-953

주: 2020년 3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묘지별 안장현황을 살펴볼 경우에도 이미 2017년 4월 이천호국원이 만장되었고, 대부분의 현충원과 호국원은 2021년~2023년을 만장시기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및 만장시기]

(단위: 기, 명)

구분		조성 (계획)시기	안장능력	안장수	안장여력	만장시기	안장 대상자수
현충원	대전	'79~'85	100,918	91,346	9,572	**'21년**	175,595
	서울	'54~'55	79,284	73,560	5,724	**'23년**	
	연천	'19~'25	(50,000)	-	-	**-**	
	소계		180,202	164,906	15,296		
호국원	이천	'02~'07	50,002	50,002	-	**'17.4월**	225,340
	영천	'97~'00	51,805	44,728	7,077	**'23년**	
	임실	'98~'01	35,296	28,346	6,950	**'23년**	
	산청	'04~'14	10,008	5,803	4,205	**'23년**	
	괴산	'12~'19	20,447	2,268	18,179	**'22년**	
	제주	'12~'21	10,000	-	-	**-**	
	소계		177,558	131,147	36,411		
묘지	4·19	'93~'95	562	444	118	**'24년**	489
	3·15	'98~'03	122	46	76	**'30년 이후**	
	소계		684	490	194		
	5·18	'94~'97	1,966	851	1,115	**'30년 이후**	3,568
국립신암 선열공원		'82~'87	52	52	-	**만장**	-

주: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관리 국립묘지임
자료: 국가보훈처('20.3월말기준)

안장능력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보훈처는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을 확

충하고, 권역별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2018년 11월 「국립묘지법」 제4조의2[4]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수립한 「2018~2022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18~2022년 동안 128,690기를 확충할 계획(현충원 67,890기, 호국원 60,000기, 민주묘지 800기)이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 2020년 4월말까지의 국립묘지 조성·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에 맞추어 조성이 완료(괴산호국원)되었거나 조성 중인 묘지(이천호국원, 연천현충원, 4·19묘지)가 있는 반면, 계획보다 조성시기가 늦어지거나(대전현충원) 아직 2020년 예산에 미반영 되어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영천·산청·괴산호국원)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2022년까지 98,690기가 확충(현충원 67,980기, 호국원 30,000기, 민주묘지 800기)될 것으로 보여[5] 본래 계획보다 안장능력 확충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국립묘지 조성·확충 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단위: 기)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5">128,690기(A)</th><th rowspan="2">'23년 이후(B)</th><th rowspan="2">계(A+B)</th></tr>
<tr><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r>
<tr><td colspan="2">총 확충량</td><td>17,890</td><td>20,000</td><td>50,000</td><td>20,000</td><td>20,800</td><td>235,000</td><td>363,690</td></tr>
<tr><td rowspan="2">현충원</td><td>대전</td><td>17,890
('15~'18)
조성완료
(18.5.28.)</td><td colspan="2">50,000
('17~'20)
조성 중
('17~'21)</td><td>-</td><td>-</td><td>-</td><td>67,890</td></tr>
<tr><td rowspan="5">호국원</td><td>영천</td><td>-</td><td>-</td><td colspan="3">25,000('20~'23)
예산 미반영</td><td>25,000</td></tr>
<tr><td>임실</td><td>-</td><td>-</td><td>-</td><td>-</td><td>-</td><td>20,000(미정)
미정</td><td>20,000</td></tr>
<tr><td>이천</td><td colspan="6">50,000('18~'23)
조성 중('18~'23)</td><td>50,000</td></tr>
<tr><td>산청</td><td>-</td><td>-</td><td colspan="2">10,000('20~'21)
예산 미반영</td><td>-</td><td>30,000(미정)
미정</td><td>40,000</td></tr>
<tr><td>괴산</td><td colspan="2">20,000('12~'19)
조성완료[1]('19.10.11.)</td><td>-</td><td colspan="2">20,000('20~'21)
예산 미반영</td><td>60,000(미정)
미정</td><td>100,000</td></tr>
</table>

4) 「국립묘지법」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2020년도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단위: 기)

구분	128,690기(A)					′23년 이후(B)	계(A+B)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제주	10,000(’12～’21) **조성 중(’12～’21)**				-	-	10,000
경기강원권 국립묘지(연천현충원)	-	50,000(’19～’25) **조성 중(’19～’25)**					50,000
4·19묘지	-	-	800(’20～’22) **조성 중(’20～’22)**			-	800

주: 1) 약 21,000기 규모로 개원하여 당초계획보다 확충 규모가 증가
1.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관리 국립묘지로 표에서 제외
2.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2020.4월말)까지의 추진 상황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2018～2022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2018.11.)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묘지조성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개 회계연도 동안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건설비목(420목)의 이월률이 높고 집행률이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집행부진은 건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성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6]

[2015～2019회계연도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사업 결산 현황(목별)]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	집행률(B/A)	이월률(C/A)
2019	국립묘지조성및관리	64,763	51,366	6,929	6,468	79.3	10.7
	건설비(420목)	**23,999**	**14,109**	**6,929**	**2,962**	**58.8**	**28.9**
2018	국립묘지조성및관리	55,508	49,984	1,908	3,616	90.0	3.4
	건설비(420목)	**14,016**	**10,043**	**1,771**	**2,201**	**71.7**	**12.6**

6) 일례로 2019년도의 경우에도 이월액은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내역사업인 봉안당 확충사업에서 발생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사업의 이월액 발생 내역(세부·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	집행률(B/A)	이월률(C/A)
국립묘지조성및관리	64,763	51,366	**6,929**	6,468	79.3	10.7
국립대전현충원	22,283	13,872	**5,720**	2,701	62.3	25.7
봉안당 건립공사	13,282	5,156	**5,720**	2,406	38.8	43.1
국립이천호국원	12,416	11,116	**1,209**	91	89.5	9.7
봉안당 확충사업	10,558	9,287	**1,209**	62	88.0	11.5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	집행률(B/A)	이월률(C/A)
2017	국립묘지조성및관리	68,548	61,113	5,768	1,667	89.2	8.4
	건설비(420목)	**23,767**	**16,755**	**5,768**	**1,245**	**70.5**	**24.3**
2016	국립묘지조성및관리	48,038	39,096	7,521	1,421	81.4	15.7
	건설비(420목)	**19,546**	**11,549**	**7,521**	**475**	**59.1**	**38.5**
2015	국립묘지조성및관리	32,839	25,411	5,226	2,202	77.4	15.9
	건설비(420목)	**9,825**	**4,151**	**5,206**	**468**	**42.2**	**53.0**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지금껏 실시된 국립묘지조성사업의 사업기간도 지연된 바 있다.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은 3년, 제주국립묘지 조성과 대전현충원 봉안당 확충은 2년의 기간 동안 지연되었다.

[주요 국립묘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현황]

구 분	당초 사업기간(A)	최종 사업기간(B)	지연기간(A-B)
국립괴산호국원 조성	2012~2017.12	2012~2020.12	3년
제주국립묘지 조성	2012~2019.12	2012~2021.12	2년
임실호국원 봉안당 확충	2013~2016.12	2013~2017.6	6개월
대전현충원 봉안묘 확충	2015~2017.12	2015~2018.5	5개월
대전현충원 봉안당 확충	2017~2019.12	2017~2021.12.	2년

자료: 국가보훈처

2015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사업이 지연된 주요 사유를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계연도	주요 이월 사유 및 이월액
2015	◦ 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건립지연(42억 6,900만원 이월) -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지연 ◦ 괴산호국원 조성사업 실집행 저조(73억 900만원 이월) -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타 지역 국립묘지조성사업에 비하여 총사업비 과다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 ◦ 제주국립묘지 실집행 저조(19억 400만원 이월) - 문화재현상조사 지연으로 13년 교부금액 계속 이월

회계연도	주요 이월 사유 및 이월액
2016	◦ 대전현충원 장·사병묘역 공사 지연(44억 200만원 이월) - 사업계획변경(봉안당→봉안묘)으로 인한 지연 ◦ 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건립지연(31억 1,900만원 이월) - 건립공사 진행 지연
2017	◦ 대전현충원 봉안당 공사 지연(56억 200만원 이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지연
2018	◦ 국립5·18묘지(8억 8,400만원 이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지연 ◦ 영천호국원(3억 8,500만원 이월), 임실호국원(4억 2,100만원 이월)
2019	◦ 대전현충원 봉안당 공사 지연(52억 6,700만원 이월) - 조달청 내부적격심사 기준강화로 인한 업체선정 지연 ◦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공사 지연(12억 900만원 이월) - 설계비 부족액 확보를 위한 기재부 협의, 입찰방식 검토로 인한 계약 지연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산지에 위치한 국립묘지의 특성상 그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7]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주국립묘지의 경우 2010년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9년 11월에 와서야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조성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5·18묘지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둘째, 사업추진 방식이나 사업비, 입찰방식 등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괴산호국원은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초기 총사업비가 다른 국립묘지조성사업에 비하여 과다하여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대전현충원의 장사병묘역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이 봉안담에서 봉안묘 확충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2019회계연도의 대전현충원 봉안당 공사나 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공사도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7)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립묘지는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가 있고,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한 국립묘지는 신암선열공원이 있다. 현재 시공 중인 제주국립묘지의 경우 세계자연유산과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환경문제 등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를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에서 예산의 연내집행 차질과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협의 대상 부처·지자체가 많은 개발사업인 국립묘지 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장사시설 유형 확대 고려 필요

가. 현 황

국립묘지의 경우 화장 후 안장이 원칙이며,[8] 현재 봉안시설은 대부분 봉안묘·봉안당·봉안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부지의 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봉안묘를 확충하고 있지는 않으며, 최근의 시설공사는 봉안당과 봉안담의 확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

한편, 2019년 10월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은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자연장을 도입하였다. 시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안장시설 중 일부를 자연장지로 조성(1,000기, 전체 규모의 약 10%)하였다.

---

8) 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의된 자, 국가사회공헌자 등은 시신안장이 가능하다.

9) 봉안형태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국립묘지 봉안형태 현황]

(단위: 기)

구분		봉안 시설별 안장능력				
		계	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
계		350,462	194,332	75,673	79,378	1,079
서울현충원		79,284	54,544	24,740	-	-
대전현충원		100,918	100,918	-	-	-
호국원	소 계	167,558	36,168	50,933	79,378	1,079
	영천	51,805	19,864	31,941	-	-
	임실	35,296	16,304	18,992	-	-
	이천	50,002	-	-	50,002	-
	산청	10,008	-	-	10,008	-
	괴산	20,447	-	-	19,368	1,079
민주묘지	소 계	2,650	2,650	-	-	-
	4·19	562	562	-	-	-
	3·15	122	122	-	-	-
	5·18	1,966	1,966	-	-	-
신암선열공원		52	52	-	-	-

주: 2019.12.31.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봉안묘·봉안당·봉안담의 구분]

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화장한 유골을 땅에 안장하고, 비석 등을 세우는 형태	화장한 유골을 실내에 안치하여 추모하는 시설	화장한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공작물로, 건축물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구획·관리하는 시설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안장능력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함에 있어서 최근의 장사문화 변화에 대응하여 장사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저출산 및 1인 가구 시대에 따른 시대 변화, 편리성 추구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화장 및 자연장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방법으로는 봉안 40.5%, 자연장 40.1%, 산·강·바다에 뿌리는 산골 15.9%, 화장시설 내 유골을 집단으로 뿌리는 유택동산 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봉안수요만큼 자연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방법]

계	봉안시설에 안치	자연장	산·강·바다에 뿌림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에 뿌림	기타
100%	40.5%	40.1%	15.9%	2.9%	0.5%

주: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2,0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기간 2017.7.21.~8.9.).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응답자(전체 대상 중 86.0%)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또한 자연장을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수목형 53.8%, 수목장림 30.5%, 화초형 10.4%, 잔디형 5.4% 순으로 나타나는 등 자연장 안에서도 그 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

계	수목형 자연장	수목장림	화초형 자연장	잔디형 자연장
100%	53.8%	30.5%	10.4%	5.4%

주: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2,0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기간 2017.7.21.~8.9.).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 및 자연장을 선택한 응답자(전체 대상 중 34.5%)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국가보훈처에서 올해 1월 실시한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동 조사는 국립묘지 안장자 유가족 및 방문자 278명(유가족 200명, 방문자 7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신규 국립묘지 조성 시 선호 안장시설로 실내 납골당과 자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장 중에는 수목장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신규 국립묘지 조성 시 선호 안장시설]

구분	표본 수	선호 안장시설 종류				
		실내 납골당	자연장	야외납골담	납골묘	응답거절 등
유가족	200명	36.5%	30.0%	13.5%	13.0%	7.0%
방문객	78명	30.8%	35.9%	15.4%	12.8%	5.1%

자료: 국가보훈처

[신규 국립묘지 조성 시 적합한 자연장 형태]

구분	표본 수	선호 안장시설 종류				
		수목장	혼합	잔디장	정원장	응답거절 등
유가족	200명	37.5%	26.5%	16.5%	3.5%	16.0%

자료: 국가보훈처

정부의 장사정책 또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어 설계·추진되고 있다. 장사정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3.)을 통하여 화장수요 및 자연장 선호도의 증가 등 장사수요 다변화에 대응하는 장사시설 확충 및 공간 재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친자연적·수요자 맞춤형 장사시설 조성'을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2019년 10월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은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자연장을 도입하였으며(1000기, 전체 규모의 약 10%), 동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봉안형태의 다양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친화적 장묘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2013년 5

월 2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면서 이미 자연장 제도의 도입근거는 마련된 바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범 운영을 통한 자연장의 도입은 상당히 늦은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일반 국민이 희망하는 안치방식으로 봉안방식과 자연장이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의 자연장 안치능력의 확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여겨진다.[10]

물론 시설확충 공사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수목형 자연장이나 수목장림 등의 경우 소규모 조성에는 어울리지 않고 대규모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아직 국가보훈처의 자연장지 설치·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장사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새로 국립묘지를 조성하거나 안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안장대상자 등 정책대상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장사시설 유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거나 안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등을 통하여 봉안시설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예산 상 제약이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선양시설로 거듭나는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자연장의 유형]

잔디형	화초형	수목형	수목장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수목형 자연장이라 하고, 이러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산림을 수목장림이라 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10) 한편, 괴산호국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자연장은 잔디형 자연장으로, 앞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수목장(53.8%), 수목장림(30.5%)에 비하여 잔디장(5.4%)은 선호도가 낮은 형태라는 문제가 있다. 국가보훈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유가족이 원하는 수목장(37.5%), 혼합형(26.5%)에 비하여 잔디장(16.5%)은 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1]은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게 요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무의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등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는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액 74억 100만원 중 7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7,846	7,705	0	7,401	7,109	0	292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1,924	1,783	0	1,783	1,680	0	103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1,656	1,656	0	1,656	1,467	0	189
양로지원비	3,417	3,417	0	3,417	3,417	0	0
보훈복지시설 개보수	849	849	0	545	545	0	0

자료: 국가보훈처

내역사업인 '민간요양시설이용지원' 사업 및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사업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민간요양원 또는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기부담금을 감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고, '양로지원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생활보장을 하는 사업이고, '보훈복지시설 개보수'는 보훈요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보훈기금 2161-444

양원 6개소,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 보훈교육연구원 등 보훈복지시설 10개소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가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시설복지 및 재가복지로 나누어지며,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은 주거복지시설 제공, 보훈요양원 및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은 장기요양보험에 대응하는 성격의 복지서비스이다.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분	분류		항목
시설복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운영 및 민간시설 이용지원)	의료		보훈병원
	복지	장기요양보험 대응	보훈요양원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주거복지시설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
재가복지 (직접운영)	이동 보훈 복지서비스		보훈섬김이를 통한 재가복지지원

자료: 국가보훈처

1-1.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활성화 필요

가. 현 황

국가보훈처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는 보훈복지시설 중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이 있다.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은 고령 보훈대상자 중 무의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양로시설(보훈원) 및 주거시설(보훈복지타운)을 제공하는 것이고, 보훈휴양원은 콘도미니엄형 숙박시설로, 전몰군경 미망인이 우선이지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1] 휴양형 보훈복지시설이다.

1) 이용 우선순위는 전몰군경 미망인→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참전유공자 등→일반인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 현황]

구 분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
연 혁	'97. 6월 현 건물 신축이전	'96. 7월 건립	'96. 8월
시설규모 (대지/건물)	12,530㎡/10,340㎡ (3,790평/3,127평) (下1, 上3층)	20,692㎡/31,205㎡ (6,259평/9,439평) (下1, 上8・12층)	97,963㎡/7,670㎡ (29,634평/2,320평) (下1, 上2층)
입소정원(명)	215명 - 양로시설 : 187명(119실) - 요양시설 : 28명(7실)	452세대 - 8평형 : 240세대 - 13평형 : 212세대	60실 - 40㎡(12평) : 20실 - 50㎡(15평) : 20실 - 76㎡(23평) : 20실
기능	양로	주거시설(임대아파트)	숙박시설
직원현원(명)	59명	33명	13명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요양기능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의 경우 입소자 감소로 2013년 이후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훈원의 공실률은 2013년 5.6%에서 2019년 27.9%로 증가하였고, 보훈복지타운의 공실률은 2013년 1.1%에서 20.1%로 증가하였다.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 공실 현황]

(단위: 명(보훈원), 세대(보훈복지타운), %)

연도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정원 (A)	현원 (B)	공실 (A-B)	공실률 (A-B/A)	정원 (C)	현원 (D)	공실 (C-D)	공실률 (C-D/C)
2013	215	203	12	5.6	452	447	5	1.1
2014	215	193	22	10.2	452	439	13	2.9

(단위: 명(보훈원), 세대(보훈복지타운), %)

연도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정원 (A)	현원 (B)	공실 (A-B)	공실률 (A-B/A)	정원 (C)	현원 (D)	공실 (C-D)	공실률 (C-D/C)
2015	215	181	34	15.8	452	433	19	4.2
2016	215	171	44	20.5	452	418	34	7.5
2017	215	162	53	24.6	452	395	57	12.6
2018	215	160	55	25.6	452	371	81	17.9
2019	215	155	60	27.9	452	361	91	20.1

자료: 국가보훈처

최근 3~4년간 입주인원의 감소요인을 분석해보면 본인에 해당하던 6·25, 월남전 참전자의 경우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이 밖에도 고령화와 건강악화에 의해 병원으로의 이동과 자발적 퇴소 등 퇴소 인원으로 인한 감소만큼 신규 입소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2)]

신규 입소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째, 입주대상자의 연령이 계속 고령화되면서 그 이용 수요가 주거(보훈복지타운)나 양로(보훈원)보다는 요양·의료(보훈요양원)로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보훈요양원의 경우 입소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원요양원과 남양주요양원의 경우 대기기간이 300일을 넘어가고 있다. 2019년 병상 가동률 또한 98.5%로 가동률[3)]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2017~2019년 보훈요양원 평균 대기기간]

(단위: 일)

구분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2017	352	-	34	2	-	366
2018	310	2	11	-	35	300
2019	336	22	27	5	61	308

자료: 국가보훈처

2) 2018.11., 「보훈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와이즈포스트)

3) 보훈요양원 병상 가동률 : (2017년) 97.8% → (2018년) 98.0% → (2019년) 98.5%

보훈원은 또한 현재 일부 시설을 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어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하여 보훈원의 공실률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보훈원 내에서도 양로시설에 비하여 요양시설의 공실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요양에 대한 초과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훈원 공실 현황]

(단위: 명, %)

연도	정원(A)			현원(B)			공실(A-B)			공실률(A-B/A)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2013	215	187	28	203	178	25	12	9	3	5.6	**4.8**	**10.7**
2014	215	187	28	193	165	28	22	22	0	10.2	**11.8**	**0.0**
2015	215	187	28	181	154	27	34	33	1	15.8	**17.6**	**3.6**
2016	215	187	28	171	146	25	44	41	3	20.5	**21.9**	**10.7**
2017	215	187	28	162	134	28	53	53	0	24.6	**28.3**	**0.0**
2018	215	187	28	160	136	24	55	51	4	25.6	**27.3**	**14.3**
2019	215	187	28	155	127	28	60	60	0	27.9	**32.1**	**0.0**

자료: 국가보훈처

둘째,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국가보훈처가 2018년 수행한 연구용역인 「보훈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2018.11.)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60% 이상이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입소, 입주의 자격조건, 비용, 혜택 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 인지도 수준]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보훈원	3%	17%	14%	6%	60%
보훈복지타운	5%	14%	13%	6%	62%

자료: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보훈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2018.11.

한편, 국가보훈처는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공실률의 원인으로 재가복지 확대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고령의 대상자들이 본인 거주지에서 케어를 받고, 거주지에서 가족 등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추세로 이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우선 입소대상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4] 공실률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으며(2018.11.1.) 신규 대상자 확보를 위한 대상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높은 공실률에 대한 원인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현재 보훈관서에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식으로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된 시설 개선과 함께 요양·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상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의료 서비스의 확충은 시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은 모두 수원보훈요양원[5]과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공실률은 높은 반면, 수원보훈요양원의 입소 대기기간은 300일이 넘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양로보다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홍보 강화는 단기적으로 기존 수요를 발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보훈대상자의 수요가 변하고 있다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요에 맞추어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보훈원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시설 일부(정원 28명, 7실)를 요양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영방식을 확대하고 보훈복지타운에도 요양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무의탁으로 간주, 입소자격 기준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서 유족 전체로 확대(복지타운)

5) 보훈복지타운, 보훈원, 수원보훈요양원 모두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하고 있다.

1-2. 보훈휴양원의 운영수지 개선 필요

가. 현 황

보훈휴양원은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콘도미니엄형 숙박시설로,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주축이 되어 미망인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건립하기로 하여 1996년 준공한 시설이다. 2004년 1차 리모델링, 2017년 2차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미망인 중심의 휴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다.[6] 총 60실이 있고, 1일 기준 수용인원은 200명이다. 강당과 중형, 소형 회의실과, 식당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중형 규모의 리조트이다.

[보훈휴양원 객실 및 시설 현황]

구분	39.6m²형	49.5m²형	75.9m²형	계
객실 수	20실	20실	20실	60실
기준 수용인원	2명	3명	5명	200명
부대시설	노래방, 식당, 매점, 대강당, 제1강의실, 제2강의실, 기타시설			
편의시설	배드민턴장, 미니축구장, 족구장, 산책로, 등산로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보훈휴양원의 높은 객실이용률에 비하여 매년 운영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운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입-지출 양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훈휴양원은 2012년 이후 객실 이용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협약시설, 지역주민 등을 제외하면 주중·주말·성수기 요금의 차이가 없다. 또한, 비수기에 객실을 이용할 경우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할인쿠폰이

6) 전몰군경미망인→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참전유공자 등→일반인 순으로 이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일반인의 경우에도 할인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가격할인을 받으면 2인 기준 주중 44,000원, 주말 58,000원의 요금(비수기 기준)으로 39.6m^{2}형 객실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휴양원의 요금수준은 인근 민간시설 요금의 50% 수준이라고 한다.

[보훈휴양원 이용요금 체계]

(단위: 원)

구 분	39.6m^{2}형(2인기준)			49.5m^{2}형(3인기준)			76.0m^{2}형(5인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주중	주말	성수기	주중	주말	성수기
미망인	22,000	22,000	22,000	28,000	28,000	28,000	38,000	38,000	38,000
국가유공자	29,000	29,000	29,000	41,000	41,000	41,000	58,000	58,000	58,000
장기복무제대군인	37,000	37,000	37,000	49,000	49,000	49,000	72,000	72,000	72,000
공무원 및 보훈업무종사자	38,000	42,000	46,000	50,000	55,000	60,000	74,000	81,000	88,000
협약콘도(현대)	38,000	38,000	38,000	50,000	50,000	50,000	74,000	74,000	74,000
협약시설	38,000	38,000	73,000	50,000	50,000	99,000	74,000	74,000	144,000
지역주민	38,000	51,000	73,000	50,000	69,000	99,000	74,000	100,000	144,000
할인쿠폰	44,000	58,000	73,000	59,000	79,000	99,000	86,000	115,000	144,000
단체요금	38,000	38,000	이용불가	50,000	50,000	이용불가	74,000	74,000	이용불가
일반인(정상요금)	73,000	73,000	73,000	99,000	99,000	99,000	144,000	144,000	144,000

자료: 보훈휴양원 홈페이지(condo.bohun.or.kr)(2020.5.26. 접속)

이에 따라, 2019년 보훈휴양원의 객실이용률은 58.7%로 충북지역 동종업계 객실이용률(40.46%) 대비 평균 18%p 높은 수준으로 양호하다. 주중 가동률은 약 40%이며, 주말과 성수기는 예약이 거의 만실을 이루고 있어 객실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휴양원의 운영수지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로는 객실 이용요금이 인상되지 아니하여, 매년 평균적으로 5억 원 내외의 객실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익과 달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복권기금 전입금을 제외할 경우 운영수지 적자폭은 보다 증가한다.

[보훈휴양원 운영수지]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익			비용 (C)	손익	
	객실수입 등 (A)	복권기금 전입금	계 (B)		A-C (복권기금 제외)	B-C (공단부담)
2014년	477	791	1,268	1,292	△815	△24
2015년	446	791	1,237	1,200	△754	37
2016년	7201)	870	1,590	1,344	△624	2461)
2017년	475	870	1,345	1,388	△913	△43
2018년	494	870	1,363	1,421	△927	△58
2019년	526	900	1,426	1,480	△954	△54

주: 1) 2016년에는 국세청 부가세 환급금(220백만원) 발생
1. '객실수입 등'에는 매점 임대료 등 기타수입 포함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보훈휴양원의 지출 상세를 살펴보면 인건비, 경비, 영업외비용에서의 지출이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경비의 일부 항목의 경우 연평균증가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지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항목도 존재한다.

[보훈휴양원 비용 상세]

(단위: 천원, %)

구분	비용	인건비	경비						영업외 비용
			복리후생비		교육 훈련비	소모품비	포상비	기타	
			급여성	비급여성					
2014	1,292,478	726,505	22,216	84,076	1,290	14,530	309	443,506	46
2015	1,199,923	630,187	21,967	90,556	1,750	17,736	600	437,089	38
2016	1,344,161	729,565	38,733	69,726	2,914	22,106	900	480,217	0
2017	1,387,870	764,488	32,154	72,375	3,651	22,750	1,285	488,784	2,383
2018	1,420,883	775,689	30,498	75,371	4,223	23,498	1,300	510,303	1
2019	1,480,759	780,245	29,733	80,664	5,961	24,618	1,300	557,846	392
연평균 증가율	**2.8**	**1.4**	**6.0**	**△0.8**	**35.8**	**11.1**	**33.3**	**4.7**	**53.5**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속적인 운영적자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재정구조를 악화시켜 보다 필요한 보훈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보훈휴양원의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비용 양쪽 측면에서의 구조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수입 측면의 경우, 보훈휴양원은 2017년 리모델링이 이루어져[7]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종전 요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현재 다른 민간시설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저렴한 편임을 고려할 때 수입측면에서는 이용요금의 인상을 고려할만 하다.[8] 지출 측면의 경우, 보훈휴양원의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리모델링 비용은 동 사업의 계획액으로 충당하였다. 보훈휴양원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017년에는 10억원, 2018년에는 8억 400만원의 계획액이 집행되었다.

8) 보훈휴양원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미망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보다는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 등 보훈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요금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보조금 집행관리 부실

가. 현 황

지방보훈회관 사업[1]은 보훈단체 사무실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인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보훈회관 건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액 32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전액 자치단체자본이전(330-03)으로 이루어진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70.9%를 보였다.

[2019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방보훈회관 건립	3,250	3,250	0	0	3,250	3,250	0	0

자료: 국가보훈처

[2019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지방보훈회관 건립	3,250	990	4,240	3,006	1,234	0	70.9

자료: 국가보훈처

동 사업의 지원방식은 지자체가 부지와 지방비 확보 시 국고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식으로 이루어지며, 광역시·도의 경우 총사업비의 50%이내, 국고 15억원 한도, 시·군·구의 경우 총 사업비 30%이내, 국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238-321

나. 분석의견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8개 지역 중 5개 지역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당초 계획하였던 건립부지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훈단체의 반대로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하였고, 전북 완주군,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은 설계 지연,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이 부진하였다. 2019회계연도의 경우 70.9%의 실집행률을 보였다.

[2019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집행 부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지원현황			
		국비	지방비	합계	실집행액	연도	예산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전북 완주군	2018~2020	500	1,881	2,381	407	2018	250	250	100
						2019	250	157	62.8
전남 곡성군	2018~2019	500	1,200	1,700	1,700	2018	250	250	100
						2019	250	250	100
경북 칠곡군	2018~2020	500	1,690	2,190	2,190	2019	500	500	100
경기 안산시	2017~2021	500	7,303	7,803	293	2019	500	293	58.6
충남 당진시	2019~2021	500	1,500	2,000	-	2019	250	-	0
충북 충주시	2018~2020	500	4,049	4,549	919	2019	500	257	51.4
울산 중구	2018~2019	500	3,300	3,800	3,800	2019	500	500	100
전북 익산시	2018~2020	500	3,130	3,630	219	2019	500	59	11.8

자료: 국가보훈처

[2019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 저조사유]

구 분	실집행 저조사유
전북 완주군	BF 인증 과정에서의 지연 및 설계 용역 지연
경기 안산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 저조
충남 당진시	보훈단체들이 당초 계획하였던 건립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부지가 변경되면서 사업 지연

구 분	실집행 저조사유
충북 충주시	시공사 선정 이후, 시공사 내부 문제(회계 결산 등)로 인한 공사 진행 지연
전북 익산시	설계용역 및 후속절차, 공사 업체 선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국비집행 부진

자료: 국가보훈처

특히, 충남 당진시의 경우 당초 보훈단체 사무실들이 위치한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의 잔여부지에 보훈회관 건립을 결정하였으나, 2019년 5월 보훈단체들이 수청근린공원 내 보훈회관 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2019년 11월 건립 위치가 수청근린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면서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가 필요하게 되었고 향후 사업이 재차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동 사업의 2010년 이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 결산 심사 시 관련 시정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채택된 바 있다.[2]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추진 독려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사업의 실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1)]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10	2,800	-	2,800	2,549	91.0
2011	2,660	251	2,911	251	8.6
2012	4,527	2,660	7,187	2,548	35.4
2013	7,500	4,639	12,139	5,841	48.1
2014	5,000	5,796	10,796	6,710	62.2
2015	3,000	4,078	7,078	4,588	64.8
2016	4,000	2,481	6,481	4,213	65.0
2017	3,250	1,768	5,010	3,789	75.6
2018	4,125	729	4,854	3,364	69.3
2019	3,250	990	4,240	3,006	70.9

주: 1) 피보조기관 이월액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2) 2015회계연도 결산 시: 국가보훈처는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보조금 분할 교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14회계연도 결산 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자체수입 부족 문제

가. 현 황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다. 현재 법령이나 예산 구조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상자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세출예산으로 수행할 경우 다양한 보훈대상이 존재하는 보훈보상체계 구조상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기금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친일귀속재산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친일귀속재산을 동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광복회관 관리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자체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고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한 상황으로, 수입-지출 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에 따라 독립유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373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친일귀속재산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토지매각대금과 부당이득금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친일귀속재산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어렵고[2], 매각의 어려움으로 향후 자체수입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동 기금의 경상사업비는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이 2018년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현황			지출현황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2017	35,710	-	16,164	19,827	98	31,949
2018	5,282	54,686	83,053	88,721	103	54,197
2019	4,589	76,203	116,843	84,031	108	113,496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유사한 목적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동 기금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 시행에 맞추어 일반회계 전입금도 같이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기금수입순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3]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최근 3년간(2017~201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은 없었음

3) ('17년) 0.0% → ('18년) 38.2% → ('19년) 83.4%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52,581	72,190	72,255	74,281	77,431	77,344	75,302
일반회계 전입금	54,686	54,686	54,686	76,203	76,203	76,203	76,689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동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과소한 상태로, 2018년 신설사업으로 기금의 경상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증가된 지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연계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자체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또한, 2018년 신설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은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손)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재원확보에 유동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규모 적정성 평가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자체수입	5,868	5,519	11,249	35,710	5,282	7,930	8,037	8,624
정부내부수입	5,100	3,685	3,685	0	54,686	76,203	72,765	72,765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5,219	12,975	10,806	16,164	83,053	70,881	64,541	73,203
총수입	**16,187**	**22,179**	**25,740**	**51,874**	**143,021**	**155,014**	**145,343**	**154,592**
경상지출	5,660	5,803	16,817	19,925	88,824	81,496	76,985	78,012
정부내부지출	0	0	0	0	0	0	0	0
기타	10,527	16,376	8,923	31,949	54,197	73,518	68,358	77,580
총지출	**16,187**	**22,179**	**25,740**	**51,874**	**143,021**	**155,014**	**145,343**	**154,592**
기금적정규모		**MIN**	**210,902**		**순자산**		**146,045**	
		MAX	**323,254**		**중기가용자산**		**146,036**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금은 자체수입으로 고유한 용도의 지출에 충당하므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현재 자체수입 대비 과다한 사업비 지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지출 구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수입 측면에서는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사업의 성질을 살펴 일반회계로 이관할 수 있는 사업은 이관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가보훈처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인천보훈병원 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 p.115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의존도 심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 p.119

공정거래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47억 5,400만원이며, 2,010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5.9%인 521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1,396억 9,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92억 9,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24,754	424,754	424,754	201,095	52,103	139,697	9,294	25.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26억 7,900만원이며, 이 중 95.9%인 1,272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1,295	131,295	132,679	127,237	1,182	4,261	95.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은 865억 200만원, 부채는 223억 3,400만원으로 순자산은 641억 6,8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344억 500만원(60.8%) 감소한 것으로 유동자산 762억 3,900만원, 일반유형자산 45억 4,600만원, 무형자산 44억 1,2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3억 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징금 등의 제재금수익 징수결정으로 인한 미수제재금(미수채권) 1,355억원 순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557억 4,400만원(71.4%)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5,800만원, 장기충당부채 222억 7,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금 감소로 인한 유동부채 10억원 감소,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된 소송 사건들 중 일부가 환급(529억원)되고 신규로 발생한 소송 사건들에 대해 소송충당부채를 계상(24억원)함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86,502	220,907	△134,405	△60.8
Ⅰ. 유동자산	76,239	211,547	△135,308	△64.0
Ⅱ. 일반유형자산	4,546	5,017	△471	△9.4
Ⅲ. 무형자산	4,412	2,629	1,783	67.8
Ⅳ. 기타비유동자산	1,304	1,714	△410	△23.9
부 채	22,334	78,078	△55,744	△71.4
Ⅰ. 유동부채	58	1,083	△1,025	△94.6
Ⅲ. 장기충당부채	22,276	76,995	△54,719	△71.1
순 자 산	64,168	142,829	△78,661	△55.1
Ⅰ. 기본순자산	7,933	7,933	0	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53,643	132,281	△78,638	△69.4
Ⅲ. 순자산 조정	2,592	2,615	△23	△0.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542억 9,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654억 9,800만원, 관리운영비 679억 8,300만원, 비배분비용 345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37억 4,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88억 3,900만원(33.8%) 감소한 1,542억 9,300만원이며,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변경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891억 8,600만원 감소하였고, 소송충당부채 환입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4억 1,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소비자후생 증진프로그램(523억 5,200만원)과 경쟁촉진 프로그램(116억 4,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70억 3,500만원과 복리후생비 80억 1,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160억 9,300만원과 기타비용 184억 5,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5,498	60,201	5,297	8.8
가. 프로그램 총원가	65.498	60,201	5,297	8.8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Ⅱ. 관리운영비	67,983	63,345	4,638	7.3
Ⅲ. 비배분비용	34,558	123,744	△89,186	△72.1
Ⅳ. 비배분수익	13,745	14,158	△413	△2.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54,293	233,132	△78,839	△33.8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54,293	233,132	△78,839	△33.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1,428억 2,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41억 6,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86억 6,100만원(55.1%)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 결과는 기초 대비 788억 3,900만원 감소한데 반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264억 5,400만원 더욱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42,829	73,869	68,960	93.4
Ⅱ. 재정운영결과	154,293	233,132	△78,839	△33.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5,655	302,109	△226,454	△75.0
Ⅳ. 조정항목	△23	△17	△6	△35.3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64,168	142,829	△78,661	△55.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②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 등이 있다.

총액인건비성 인건비는 과다편성된 명예퇴직수당 등 4억원이 감액되었고,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은 시험검사장비 구입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비 등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다.[1)]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사업 등이 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부안의 부족예상분 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다.[2)]

---

1) 정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정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甲乙관계 구축, ②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③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④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⑤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 성과 구현을 5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해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집단 사익편취 금지제도 및 공시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사익편취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단체가 생산한 상품비교정보 결과 중 일부는 그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대상품목 및 사업대상자 선정시 소비자의 수요 및 기존 용역 수행결과 등을 엄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관련 분석

1-1.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환급 관리 필요

가. 현 황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과징금 과목[1]에 수납된다. 2019년도에는 2019년 처분금액과 2018년까지의 미수납금액 등을 합산한 1,942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산상 수납액은 485억원이다.

[2019회계연도 과징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징금	420,688	420,688	420,688	194,231	48,503	136,434	9,294	2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소송 패소, 직권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과징금 환급액은 과오납금으로 취급되어「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징수결정액 및 결산상 수납액이 차감[2]된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56-563

2)「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5년 이후 과징금 수납률을 살펴보면, 퀄컴사에 대한 1조 33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수납된 2017년을 제외하고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60%대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각각 45.2%, 25.0%를 기록하여 수납률이 더욱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2019년 과징금 수납률이 감소된 이유는 환급액이 과다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그에 반하여 과징금 부과액[3] 및 수납액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과징급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2015	653,240	547,881	328,485	60.0
2016	629,161	627,074	376,826	60.0
2017	481,300	1,299,380 (268,235)	1,158,181 (127,036)	89.1 (47.3)
2018	508,531	529,465	239,342	45.2
2019	420,688	194,231	48,503	25.0

주: 괄호안은 퀄컴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1조311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0~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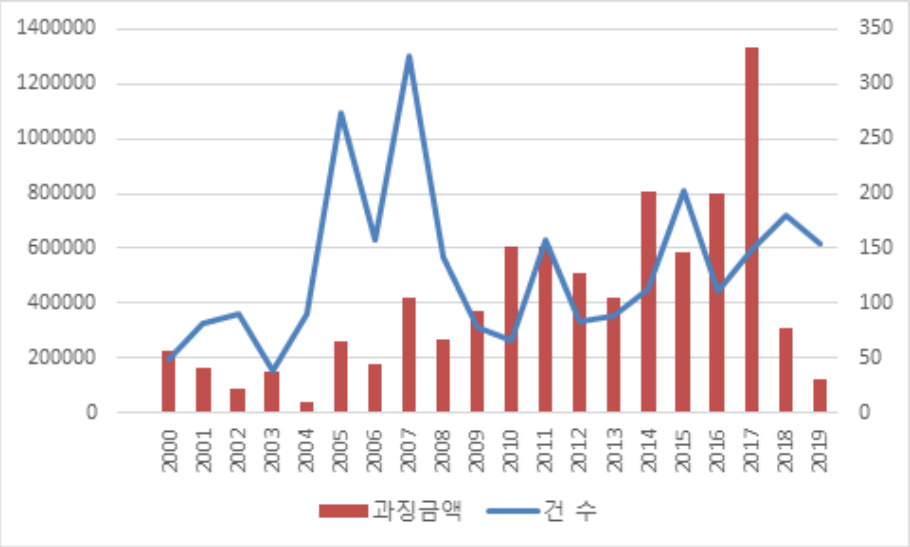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54건, 1,252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결하였다. 2019년 과징금 부과금액은 2004년(363억 800만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나. 분석의견

2019년 징수결정액 대비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① 과징금 환급액 과다, ② 과징금 부과액 저조, ③ 과징금 수납 저조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액은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매년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감소하면 징수결정액과 과징금 수납액이 동시에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과징금 환급과 수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해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 환급결정을 통해 납부 금액을 반환하고 있다. 해당 환급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오납금으로 취급되어 환급결정을 내린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통상적으로 징수결정액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9년 과징금 환급액은 2,515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2억 7,200만원 증가하였다. 과징금 재부과액[4]을 제외한 순수환급액은 2019년 2,169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과징금 징수·환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A)	환급액 (B)	재부과액[1] (C)	실제수납액 (A+C)	순수환급액 (B-C)	결산상수납액 (A-B+C)
2015	547,881	674,069	357,240	11,656	685,725	345,584	328,485
2016	627,074	667,688	330,395	39,533	707,221	290,862	376,826
2017	1,299,380 (268,235)	1,374,616 (360,927)	251,347	17,456	1,392,072 (378,383)	233,891	1,158,181 (127,036)
2018	529,465	302,369	144,286	78,466	383,628	65,820	239,342
2019	194,231	265,417	251,558	34,644	300,061	216,914	48,503

주: 1) 행정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을 환급한 후, 승소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

1. 괄호안은 퀄컴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1조311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행정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전체 과징금을 환급한 후, 승소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과징금의 환급사유는 ① 행정소송 패소, ② 직권취소 등이 있다. 직권취소의 주 원인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 수납후 패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5]이 있어 예측되는 소송결과가 전부승소가 아닌 경우 예측되는 일부패소분에 대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직권취소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환급사유별 환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81.0%가 행정소송 패소(일부승소 포함)에 따른 환급이고, 17.7%가 직권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대부분의 환급액은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이다. 2019년에는 총 2,515억 5,800만원의 환급액 중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액 1,872억원,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액 639억 9,200만원이 발생하여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액이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금 비중이 높고, 직권취소에 따른 환급 역시 행정소송 패소시 발생할 환급가산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급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처분시 위법성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15~2019 과징금 환급사유별 환급액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환급액 (A)		환급사유에 따른 환급액			재부과액[1] (B)	순환급액 (A-B)
		가산금	행정소송	직권취소	기타		
2015	357,240	37,345	343,832	13,163	245	11,656	345,584
2016	330,395	32,545	177,570	152,825	0	39,533	290,862
2017	251,347	8,135	235,659	1,407	14,281	17,456	233,891
2018	144,286	2,736	137,557	4,684	2,045	78,466	65,820
2019	251,558	18,860	187,200	63,992	409	34,644	216,914

주: 1) 행정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을 환급한 후, 승소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83건의 행정소송 패소사건을 패소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원이 사실관계 등 증거 판단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37.7%, 법리 해석에 있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견해차이가 있었던 경우가 36.1%를 차지하여 패소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12.0%, 과징금 가중·감경 수준과 관련된 경우가 6.0%를 차지하는 등 재판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에 있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건이 21.3%를 차지하였다.

[2013~2018.6. 행정소송패소 사유별 분석]

(단위: 건, %)

패소유형		건수	비율
위법성 판단	증거 판단 관련	69	37.7
	법리 해석 관련	66	36.1
	잘못된 법령 적용	5	2.7
	소계	140	76.5
재량 일탈 남용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22	12.0
	중대성 및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수준 관련	11	6.0
	부과과징금 결정 수준 관련(납부능력 고려 등)	3	1.6
	자진신고 지위 인정 여부 관련	3	1.6
	소계	39	21.3
기타		4	2.2
합계		183	1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패소사유의 대부분이 위법성 판단에 있음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있어 위법성 판단 여부 결정을 엄밀하게 함으로써 행정소송 패소와 이로 인한 환급금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의 과반을 차지[6]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증거로서 합의 또는 공동행위의 가담 여부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정황증거[7] 채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조사나 법리해석과 관련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신 심결례·판례의 취지에 맞게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6)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분석 결과, 총 744건의 소송건 중 462건을 차지하였다.

7) 자백·진술, 문서·영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이다.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과징금 처분에 있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황증거 예시]

유형	예시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 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예 4>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예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1>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규,「공동행위 심사기준」

둘째, 임의체납 등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을 줄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징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징금 미수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① 과징금 납부기한인 60일 이내의 납기미도래, ②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로 인한 납기미도래, ③ 집행정지에 따른 징수유예, ④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임의체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에는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로 인한 미수납은 감소하였으나 임의체납은 전년 대비 증가한 402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800만원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과징금 미수납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A+B+C)	결산상 수납액 (A)	미수납액					불납 결손 (C)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집행정지)	임의체납[1]	소 계 (B)	
			60일초과	60일이내				
2015	547,881	328,485	125,382	32,772	6,890	54,146	219,189	207
2016	627,074	376,826	213,527	34,462	2,269	22,163	247,989	2,259
2017	1,299,380 (268,235)	1,158,181 (127,036)	50,577	46,846	15,012	28,742	141,177	23
2018	529,465	239,342	84,356	147,690	16,963	38,618	287,627	2,496
2019	194,231	48,503	51,587	37,540	7,040	40,266	136,434	9,294

주: 1) 경제적 사정 등 납부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체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중 납기미도래의 경우 대부분이 차년도에는 납기가 완료되어 미납 문제가 해소되고 징수유예(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나, 임의체납의 경우 체납 과징금 징수절차[8]를 통하여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의 부과취지가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박탈으로 법위반 유인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의체납 건은 법위반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기인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후 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납하는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법위반 유인을 억제하려는 경쟁정책의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징수, 미납된 과징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및 그에 따른 재산실사 등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9년까지 1명이었으며, 2020년 4월 3명으로 증원되었다[9]. 또한 업무 위탁(「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10])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징수한 체납 과징금 역시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총 7건, 7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의 감소를 위하여 체납자의 국세청 세무자료 확인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9)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총 71회의 현장조사와 25건의 압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체납과징금 징수 실적은 23건, 65억 9,400만원으로 나타남.

10)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2. 신고 활성화를 통한 법 위반행위 적발 노력 강화 필요

가. 현 황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행위유형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건 처리결과 및 신고 내용의 증거 수준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에 따라 산정되며,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공정거래위원회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 후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예산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11]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예산현액은 11억 800만원으로 이 중 7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다. 신고포상금 홍보비 7,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포상금은 예산현액 10억 3,800만원 중 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0년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93	1,293	88	-	1,381	1,001	-	380
신고포상금제도운영	1,108	1,108	-	-	1,108	728	-	380
포상금(310-03)	1,038	1,038	-	-	1,038	658	-	38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1) 코드: 일반회계 1251-330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지급한도액]

<table>
<tr><th>지급대상</th><th>신고된 사건의
처리결과별 포상금
지급기준</th><th>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th><th>지급 요건</th><th>한도액</th></tr>
<tr><td>부당한 공동행위</td><td>과징금 50억원 이하 : 10%
50억원~200억원 : 5%
200억원 초과 : 2%
* 시정명령 : 300만원
* 경 고 : 100만원</td><td rowspan="15">최상 : 100%
상 : 80%
중 : 50%
하 : 30%</td><td rowspan="15">신고포상금 지급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td><td>30억원
*최저 1,000만원</td></tr>
<tr><td>부당 지원행위</td><td rowspan="2">과징금 5억원 이하 : 20%
5억원~50억원 : 10%
50억원 초과 : 2%
* 시정명령 : 200만원
* 경 고 : 100만원</td><td rowspan="2">20억원
*최저 800만원</td></tr>
<tr><td>사익편취행위</td></tr>
<tr><td>부당한 고객유인 행위</td><td rowspan="4">과징금 5억원 이하 : 5%
5억원~50억원 : 3%
50억원 초과 : 1%
* 시정명령 : 100만원
* 경 고 : 50만원</td><td rowspan="4">1억원
*최저 300만원</td></tr>
<tr><td>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td></tr>
<tr><td>사업자단체금지 행위</td></tr>
<tr><td>사원판매행위</td></tr>
<tr><td>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td><td rowspan="3">과징금 1억원 이하 : 500만원
1억원~10억원 :700만원
10억원 초과 : 1,000만원
* 시정명령 : 100만원
* 경 고 : 50만원</td><td rowspan="3">1,000만원
*최저 150만원</td></tr>
<tr><td>미등록다단계</td></tr>
<tr><td>사행적판매원 확장금지</td></tr>
<tr><td>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td><td rowspan="4">과징금 5억원 이하 : 5%
5억원~50억원 :3%
50억원 초과 : 1%
* 시정명령 : 100만원
* 경 고 : 50만원</td><td rowspan="4">5억원
*최저 500만원</td></tr>
<tr><td>하도급법 위반행위</td></tr>
<tr><td>대리점법 위반행위</td></tr>
<tr><td>가맹거래법 위반행위</td></tr>
</tabl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2018년과 2019년 연속하여 예산액 대비 저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법 위반행위 적발 및 입증에 유효한 법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총 14가지 행위유형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2019년 신고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금액	729,000	835,000	835,000	835,000	1,038,000
지급 실적(합계)	건	68	54	33	23	42
	금액	850,980	835,000	807,385	398,975	658,365
부당한 공동행위	건	16	15	9	9	12
	금액	799,400	730,215	742,630	251,380	616,89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16	20	9	2	10
	금액	5,800	38,745	14,650	650	11,820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건	33	15	14	6	6
	금액	5,250	2,250	2,350	1,100	900
부당한 지원행위	건	-	1	1	1	-
	금액	-	24,330	47,755	144,295	-
대규모소매업고시위반행위	건	-	-	-	-	-
	금액	-	-	-	-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	3	-	2	1
	금액	-	39,460	-	300	12,000
사원판매행위	건	1	-	-	1	1
	금액	400	-	-	800	500
미등록다단계 (2012.11. 신설)	건	-	-	-	-	-
	금액	-	-	-	-	-
사행적판매원 확장금지 (2012.11. 신설)	건	-	-	-	-	-
	금액	-	-	-	-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2015.8. 신설)	건	2	-	-	-	2
	금액	40,130	-	-	-	12,105
하도급법 위반행위 (2016.12. 신설)	건		-	-	-	-
	금액		-	-	-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2017.10. 신설)	건			-	-	-
	금액			-	-	-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2018.7. 신설)	건			-	2	10
	금액			-	450	4,150
대리점법 위반행위 (2018.7. 신설)	건			-	-	-
	금액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2019년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93.7%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금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019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포상금은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 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 행위를 신고 활성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포상금은 원인행위인 기업 등의 법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지급될 수 있어 그 규모가 매년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당시 그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연속하여 예산액 대비 저조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실제 법 위반행위 적발 및 입증에 유효한 신고를 유도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가맹사업거래 실태조사 결과,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인지도가 조사대상자 중 40%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지금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없었던 법 위반행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안내·홍보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집단 사익편취 금지제도 및 공시제도 관련 분석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1]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기업집단 형성 과정에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유발하고, 기업집단 형성 이후에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가 주주들의 이익과 상반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사익편취), 시장을 독과점화하여 시장경쟁을 저해하였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활동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 금지제도,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채무보증 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공시제도, 지주회사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2-1.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 현 황

사익편취 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비율(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내부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4년 2월부터 실시되었는데,

---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법령 신설 당시 요건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으나 2017년 법개정으로 자산총액 5조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규제대상이 확대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3]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억 8,700만원으로 이 중 2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사익편취 행태개선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익편취 행태개선	287	287	-	-	287	282	-	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들이 내부거래에 대해 자발적으로 위법성·부당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사익편취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 결과(2018.6.25.)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2019.10.14.)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법률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2015년부터는 거래비중과 거래규모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3) 코드: 일반회계 1251-331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규제도입 당시		규제도입 이후									
	2013년 (160개 사)		2014년 (159개 사)		2015년 (147개 사)		2016년 (80개 사)		2017년 (194개 사)		2018년 (186개 사)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거래규모	12.4	0.08	7.9	0.05	8.9	0.06	7.5	0.09	13.4	0.07	9.2	0.05
거래비중	15.7		11.4		12.1		14.9		14.1		11.2	

주: 1. 내부거래비중은 각 집단별 대상회사 내부거래금액 합계액을 매출액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계산
2. 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지정기준 상향으로 자산 5~10조원 기업집단이 제외된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규제대상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을 30%에 다소 미달되도록 20~30%로 관리하는 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회사수)]

(단위: %, 개)

연도	규제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1)]	규제대상회사 50% 초과지분보유 자회사[2)]
2014	11.4(159)	5.3(25)	16.3(141)
2015	12.1(147)	6.7(27)	16.9(151)
2016	14.9(80)	6.4(20)	24.2(79)
2017	14.1(194)	7.1(24)	15.3(214)
2018	11.2(186)	8.9(29)	16.7(205)

주: 1. 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기준에 다소 미달되도록 지분율을 관리하는 회사
2. 규제대상회사인 모회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4)] 제20대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 총수일가 지분비율이 확대(비상장사 20%, 상장사 30% → 모두 20%)되고, 이들 계열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4) 의안번호 제20169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8.11.30. 정부제출

다만, 규제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시 축소조정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사익편취 행태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 보고서(2019.12.10.)에 따르면 2019년 분석 대상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0개 상장회사 중 41.6%인 104개 상장회사, 총수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230개 상장회사 중 43.9%인 101개 상장회사가 기업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상장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기업 이사회 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내부거래 및 관련거래를 심사 및 승인하는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등과 달리 「상법」 등 관계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설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5년 (239개사)	2016년 (165개사)	2017년 (169개사)	2018년 (253개사)	2019년 (250개사)
내부거래위원회	59(24.7%)	53(32.1%)	60(35.5%)	90(35.6%)	104(41.6%)

주: 2015년, 2018~2019년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2016~2017년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가능성이 더욱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비중이 25.9%,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0.4%로 나타나, 비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비중이 낮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 기업 및 비규제대상 회사의 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규제대상[1](27개사)	17 (63.0)	18 (66.7)	5 (18.5)	7 (25.9)
사각지대[2](47개사)	33 (70.2)	38 (80.9)	6 (12.8)	19 (40.4)
계(74개사)	50 (67.6)	56 (75.7)	11 (14.9)	26 (35.1)
비규제대상(176개사)	109 (61.9)	135 (76.7)	59 (33.5)	78 (44.3)

주: 1.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2. 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기준에 다소 미달되도록 지분율을 관리하는 회사와 규제대상 회사인 모회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등 위원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작성현황 분석 결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 331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268건(80.9%), 시장가격 검토·대안비교 등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이 231건(68.5%), 거래 상대방·계약체결방식·계약기간 및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작성된 안건이 21건으로 나타났고,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이사회 및 위원회가 심사한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는 등,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심의는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스스로 내부거래의 위법성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부당성 여부 판단을 엄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시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 이후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총 8건, 462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실시하였다. 이 중 6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확정판결이 내려진 처분이 없어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부과대상	금액	소제기여부	소송결과
2016	현대 계열사 (4개)	1,281	×	
2017	한진 계열사 (3개)	1,430	○	고법패소/대법계류
2018	효성 계열사 (3개)	2,987	○	고법계류
	하이트진로 등 3개 사업자	10,733	○	2개 사업자 고법패소 대법계류/ 1개 사업자 고법승소/ 대법계류
	LS 계열사 (5개)	25,961	○	고법계류
	동부 계열사 (3개)	493	○	고법승소(확정)
2019	태광 계열사 (19개)	2,000	×	고법계류
	대림 계열사 (3개)	1,300	×	
합 계		46,18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법 제23조의2)는 기존의 부당금지조항(법 제23조제1항제7호[5])을 보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금지 규제와 달리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는 부당성에 대한 별도입증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진 계열사 과징금 부과 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부당성 요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6]한 바 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6)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하고, 거래의 동기, 거래의 방식, 거래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익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 부당지원금지 규제와의 관계]

구 분	부당지원금지규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관련 규정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의2
규제내용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지원주체	제한없음 (모든 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 소속 회사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회사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부당성에 대한 별도입증 불필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부당성 판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확립된 것은 아니나, 고등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성 판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부당성 입증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정, 이익제공의 규모 등에 있어서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2.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의 기업집단현황 등 정보제공 기능 문제점

가. 현 황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1]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www.egroup.go.kr)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 생략)

1) 코드: 일반회계 1251-332

지주회사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일반현황,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현황,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분석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각 기업에서 제출한 소속 회사 현황, 주주현황, 출자 현황, 채무보증현황, 지주회사 현황 등 각종 현황 자료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기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리뉴얼하기 위하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였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의 총 사업비는 41억 8,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① 기존에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들이 각종 자료들을 입력·제출하는 시스템인 eGROUP 시스템(2005년 구축)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등 현황 자료를 일반 국민에 제공하는 OPNI 시스템(2007년 구축)을 통합하고, ② 기존 시스템에서는 기업의 업무 담당자들이 자료들을 직접 수기로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편을 요청함에 따라[2] 엑셀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시 시스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며, ③ 기존의 단편적 자료 제공방식[3]을 시계열 분석,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기업집단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공개 기능을 강화하고,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상에서 정보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4]상의 감사 보고서 정보와 기업집단이 제출한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2018년 1단계 사업에 22억 3,000만원, 2019년 2단계 사업에 19억 5,000만원, 총 4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9억 9,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4,600만원 중 18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0만원을

2) 전경련 정책 건의(2016.3월, 2017.11월)

3)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연도별·회사별·집단별로만 확인 가능하고 이를 시계열 및 횡단면(기업 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4)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장법인 공시서류 제출 및 조회 시스템

불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월은 정보화 사업 용역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2018~2019회계연도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2,230	2,230	-	-	2,230	1,206	996	28
2019	1,950	1,950	996	0	2,946	1,814	1,125	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었으나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의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의 고도화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5]하여 완료(2020.4.3.)하였다. 2년에 걸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의 내용은 1년차에는 기업집단 공개 시스템과 자료 제출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기업의 자료 제출 편의를 높이고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 것이며, 2년차에는 대국민 정보 공개 개선, 타 시스템과의 연계, 1단계 사업 보완 등을 실시한 것이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연차별 주요 기능개선 내역]

연도	내용
2018년 (1년차)	① 대국민서비스 관련 필수적인 기능 고도화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 ② 기업집단 공시담당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입력 방식 개편 ③ 분석·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집단 관련 정보분석 기반 조성
2019년 (2년차)	① 외부 홈페이지의 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과의 연계 ② 기존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DB화 ③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각화·계열화 기능 추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 1단계 : 2018년 7월~2019년 2월, 2단계 2019년 8월~2020년 4월

그러나 2020년 현재 리뉴얼이 완료되어 운영중인 기업집단포털 사이트의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은 이용편의성 및 가독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업집단포털 사이트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간편통계와 현황통계, 테마통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집단 관련 통계 15개, 기업집단별 통계 7개, 지주회사 관련 통계 4개, 지주회사별 통계 2개로 총 2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간편통계와 현황통계에서 제공하고, 그 중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통계들[6]에 대해서는 테마통계 메뉴에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시각화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단에 관한 중요정보로 테마통계 메뉴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중 하나인 기업 지분도는 디자인 작업을 통해 그 정보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수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의 방식대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서파일(PDF)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문서파일을 웹페이지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집단포털 내 기업집단 지분도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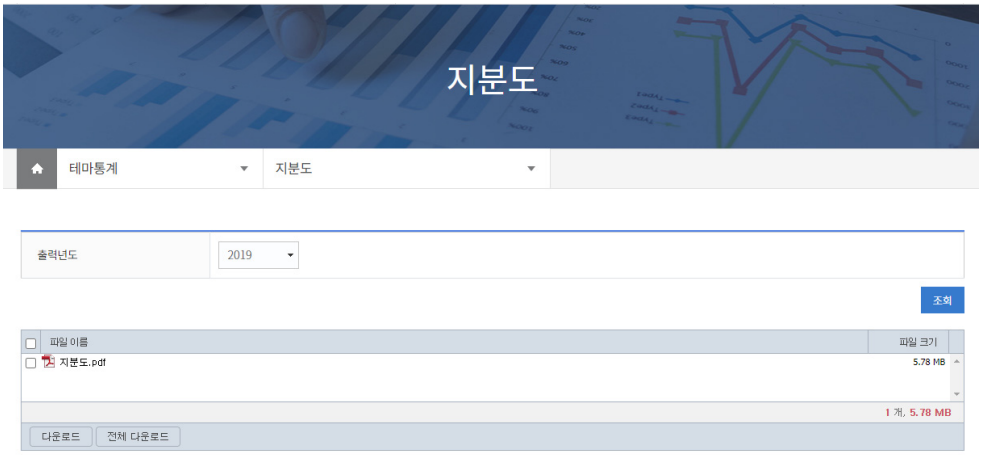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 홈페이지 캡처(2020.6.1.)

6) 기업 지분도, 기업집단 지정현황, 기업집단 재무현황, 기업집단 경영성과 비교, 기업집단 지분율, 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주식소유 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 설립일

기업집단포털이 제공하고 있는 시각화통계의 경우에도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수록되었으나, 일부 시각화통계의 경우 인포그래픽이 담고 있는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독성 제고를 위해 디자인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항목 및 통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집단포털 내 시각화통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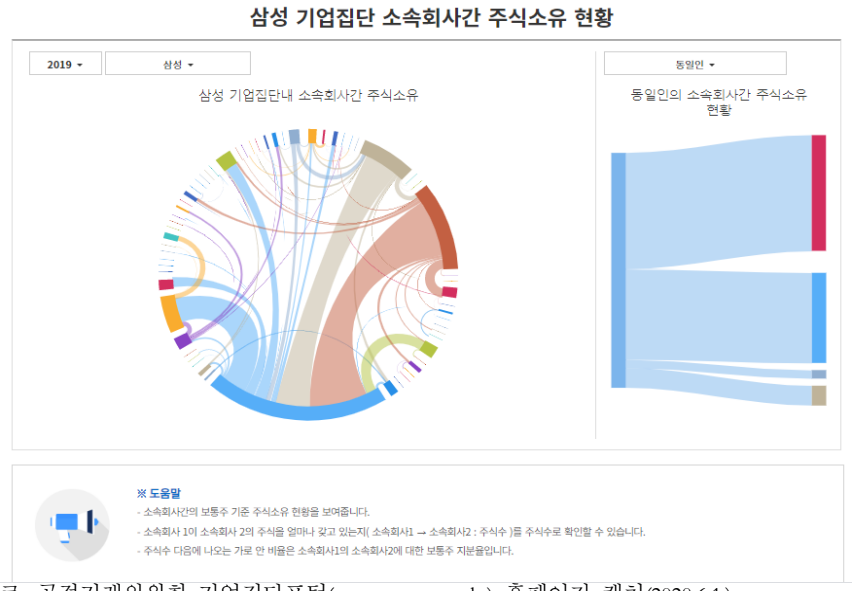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 홈페이지 캡처(2020.6.1.)

한편 기업집단포털 사이트는 보유하고 있는 통계를 조회수 순으로 정리하여 테마통계 메뉴의 인기통계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업집단포털 접속건수는 2018년 306,557건, 2019년 458,851건에서 2020.7.17. 현재 449,18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인기통계 페이지의 간편통계 통계별 조회수를 살펴보면 총 28개로 분류되어 있는 통계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기업집단 지정 현황”의 누적 조회수가 2020.7.23. 기준 1,102회로 접속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국민 제공 통계의 종류 및 기능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2년간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여 기업 및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담당자의 자료 입력 등 업무편의성은 개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기능 측면에서는 일부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의 취지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에게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도화 작업이 완료된 기업집단포털의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의 미흡한 측면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가맹사업거래 관련 업무 수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가맹사업(Franchise)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브랜드(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또는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주는 브랜드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표지(브랜드)와 노하우를 이용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사업지식이 없는 사람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창업형태이며, 가맹본부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가맹희망자들의 자본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적은 자본으로 수익을 창출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1] 가맹본부는 5,175개, 브랜드는 6,353개, 가맹점은 254,040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이는 2008년 대비 가맹점 수(107,354개) 기준으로 136.6%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점포 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피해가 확산되었고 특히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가맹점주의 재력이 영세한 경우가 많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최근 5년 가맹본부 및 가맹점 수 증감]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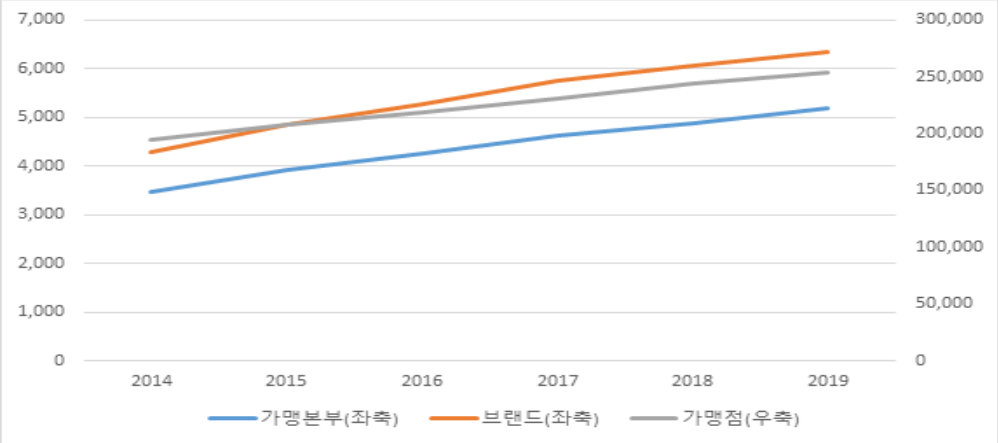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가맹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제6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제9조), 영업지원 중단 및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보복조치의 금지(제12조의 5), 가맹계약갱신요구권(제13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 사건을 조사·처리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하고 있고, 가맹산업 현황 실태를 조사하며,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 정보를 공개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법원의 판단 이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관련 업무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2]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동사업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 5,100만원으로 이 중 7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확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751	751	-	-	751	746	-	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코드: 일반회계 1331-401

나. 분석의견

첫째, 2019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조정성립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사건을 법원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 간 조정으로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각종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출연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이후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분쟁 관련 자료 제출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익 대표 위원 3인, 가맹점사업자 대표 3인, 공익 대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따라 조정성립 및 불성립여부가 결정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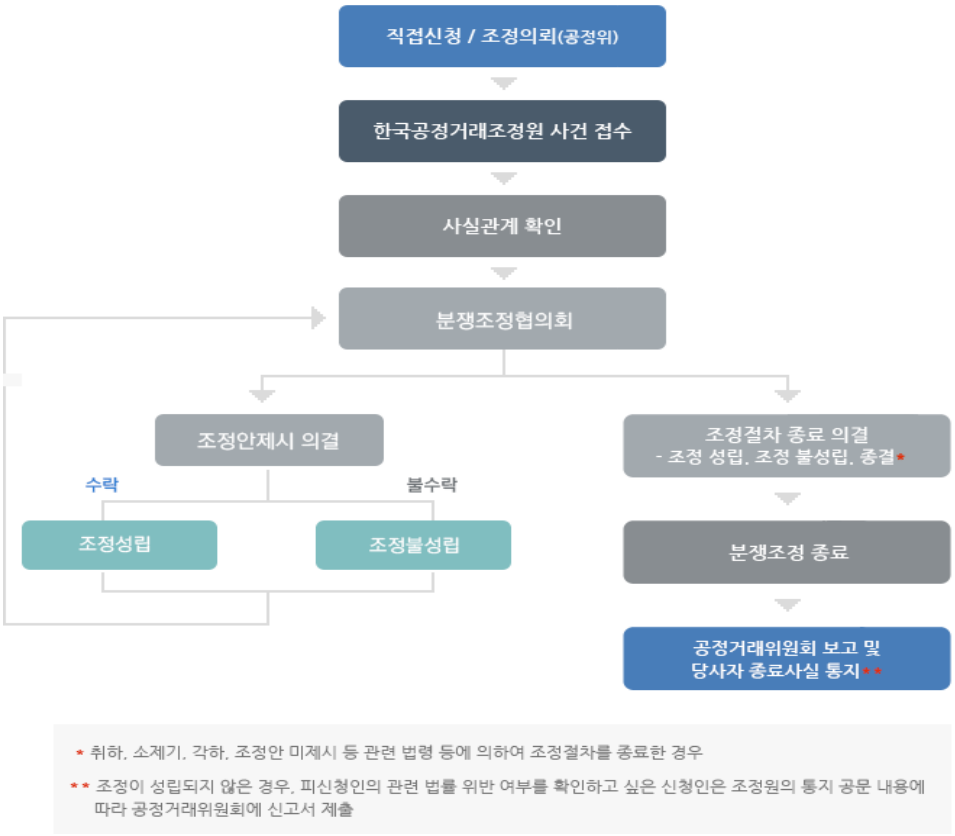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그런데 2019년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건수가 284건, 조정불성립건수가 140건, 조정성립률이 67.0%로 예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조정불성립건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정성립률은 가장 낮았다.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과 추이]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조정절차 완료				종결[1]
			조정성립 (A)	조정 불성립	소계 (B)	성립률 (A/B)	
2010	479	414	170	67	237	71.7	177
2011	733	710	459	106	565	81.2	145
2012	578	609	324	82	406	79.8	203
2013	554	607	381	45	426	89.4	181
2014	572	529	249	18	267	93.3	262
2015	522	550	224	39	263	85.2	287
2016	593	523	222	35	257	86.4	266
2017	779	750	465	60	525	88.6	225
2018	805	848	454	115	569	79.8	279
2019	637	656	284	140	424	67.0	232

주: 1) 각하, 소제기, 신고취하, 당사자의 폐업 및 회생절차 등으로 인한 사건 종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성립은 당사자간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조정원의 노력만으로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없는 측면은 있으나, 분쟁조정 성립률이 하락하게 되면 조정 절차를 이용하기보다 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하게 되어 분쟁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경쟁정책 분야와 달리 가맹거래 분야는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송과 같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조정성립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은 기존 가맹사업 분쟁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안 도출 능력을 향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가맹본부가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정보공개서 심사 기간 중에는 정보공개서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정보공개서 심사 기간 중에는 전년도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3]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가맹본부가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이를 분석·가공한 정보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가맹본부 및 가맹점 변동현황, 가맹본부별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 브랜드별 가맹점 현황 및 창업비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나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본부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및 법 위반사실,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등 일반정보와 가맹 조건,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될 가맹점 개설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된다. 따라서 가맹점주나 가맹점 개설을 검토하는 사람들은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가맹점 경영 및 개설에 참고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 및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정보공개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열람서가 비공개로 전환되어 열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보공개서는 제출시부터 심사 완료시까지 통상 3주~1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정보공개서가 비공개로 전환되면 가맹점 개설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어 가맹점 개설 결정 등에 차질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이후 2019년까지 처리된 6,865건의 분쟁조정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조정이 1,362건(1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서가 상시 공개되어야 가맹점주 및 가맹점 개설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가맹본부 측에서 직접 홍보·안내하는 정보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수록된 정보 내용을 비교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4]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발생가능한 피해 및 분쟁 억제를 위해서도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서의 상시 공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 기간 중에는 전년도에 가맹본부가 제출하여 심사 완료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소비자 권익증진사업 관련 문제점

가. 현 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 기능을 수행하며,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1]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단체 지원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주로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용역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진다.

2019회계연도 내역사업별 집행액은 소비자단체 지원 4억 4,600만원,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3억 5,300만원,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2억원, 소비자소송 지원 2,000만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억 9,500만원, 소비자교육 실행 4억 300만원, 지역소비자행정 협력체계 구축 4억 3,300만원이다.

[2019회계연도 소비자 권익증진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단체 지원	446	446	-	-	446	446	-	-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380	380	-	△2	378	353	-	25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200	200	-	-	200	200	-	-
소비자소송 지원	20	20	-	-	20	20	-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95	195	-	-	195	195	-	-
소비자교육 실행	440	440	-	-	440	403	-	37
지역소비자행정 협력체계 구축	490	490	-	△1	489	433	-	56
합계	2,171	2,171	-	△3	2,168	2,050	-	1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441-610

내역사업 중 소비자단체 지원 사업,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 사업, 소비자 소송 지원 사업,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각각 내역사업의 목적에 따라 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사업과 소비자교육 실행 사업은 용역을 통해 각각 상품비교정보 생산 및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소비자단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외에 지역소비자 행정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소비생활 센터 운영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단체 보조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9 결산	사업 목적
소비자단체 지원	446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경상적 운영비용 지원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들의 사업 지원
합리적 거래· 소비문화 확산	200	합리적인 거래활동을 위해 유통단계별 가격정보 등을 소비자단체가 조사하여 개별 소비자에 제공
소비자소송 지원	20	피해소비자를 소비자단체가 모집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95	전자상거래·특수거래 등에 대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
합계	86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용역 수행 사업]

내역사업명	2019 결산	사업 목적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353	상품비교정보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 지원
소비자교육 실행	403	소비자 스스로 올바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 향상
합계	7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을 통해 소비자단체에 지급된 보조금과 용역비는 총 16억 1,700만원으로 14개 소비자단체에 지급되었다.

[2019년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 지급 보조금 및 용역비]

(단위: 백만원)

소비자단체명	보조사업				용역사업		합계
	소비자 단체 지원	소비 문화 확산	소비자 소송 지원	자율 분쟁 조정	상품 정보 생산	소비자 교육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	294	-	-	195	-	265	754
한국소비자연맹	13	50	9.3	-	56.7	-	129
대전충남소비자연맹[2)]	-	-	-	-	129	-	129
부산소비자연맹[2)]	-	75	-	-	-	-	75
녹색소비자연대	13	25	-	-	25.6	138	201.6
소비자시민모임	9.6	25	-	-	86.7	-	121.7
소비자공익네트워크	11	25	-	-	55	-	91
금융소비자원	15.9	-	10.7	-	-	-	26.6
금융소비자연맹	16.5	-	-	-	-	-	16.5
한국YWCA연합회	15.6	-	-	-	-	-	15.6
소비자와 함께	15.5	-	-	-	-	-	15.5
한국부인회	15	-	-	-	-	-	15
소비자교육중앙회	14.5	-	-	-	-	-	14.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2	-	-	-	-	-	12
합계	446	200	20	195	353	403	1,617

주: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단체의 협의회
2) 대전충남소비자연맹과 부산소비자연맹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지역단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단체가 생산한 상품비교정보 결과 중 일부는 그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대상품목 및 사업대상자 선정시 소비자의 수요 및 기존 용역 수행결과 등을 엄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사업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자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하고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가격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비교정보를 생산·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상품 비교정보 생산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수행[2)]하고

2)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상품비교정보 및 서비스비교정보 생산 관련 예산을 각각 6억 5,500만원, 1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업이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외에 소비자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상품비교정보 생산을 수행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시각에서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관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다각적인 상품비교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은 매년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비교정보 사업 용역수행자 공개모집을 실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선발된 단체들과 수의계약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경쟁입찰처럼 용역의 내용(품목 종류)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비교정보를 생산할 품목을 소비자단체들이 직접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에 사업 대상품목이 노출될 경우 기업들이 문제제품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생산·유통을 중단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 이와 같이 독특한 형태의 계약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가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한 사업 결과는 통상 12월경에 과제 제출이 완료된 이후, 그 다음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 포털 행복드림 사이트(www.consumer.go.kr)의 상품비교정보에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그런데 2019년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자단체가 생산한 상품비교정보의 홈페이지 조회수를 살펴보면 최소 156건에서 최고 12,071건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사업 결과 대상품목별 조회수]

(단위: 건)

대상품목	생산 소비자단체	게시일	조회수
즉석갈비탕	소비자시민모임	2020.02.26	2,963
경량패딩 조끼	소비자시민모임	2020.04.02	166
요가 레깅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2020.03.17	2,318
젤 네일	녹색소비자연대	2020.03.09	462
피부미용 LED 마스크	한국소비자연맹	2020.02.10	156
안주류(닭발, 곱창) 가정간편식(HMR)	한국소비자연맹	2020.03.27	191
어린이 전동칫솔	한국소비자연맹	2020.04.09	565

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비교정보를 생산했다.

(단위: 건)

대상품목	생산 소비자단체	게시일	조회수
영유아용 과자	대전충남소비자연맹	2020.04.20	12,071
어린이 화장품	대전충남소비자연맹	2020.04.29	3,106
성인용 기저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2020.05.06	3,618
휴대용 선풍기	대전충남소비자연맹	2020.05.20	676

주: 1. 2020.6.1. 기준
2. 2건(바이크 쇼츠, 무선이어폰)에 대한 상품비교정보는 6월 중 게재될 예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상품비교정보 게시물 홈페이지 조회수를 생산기관별(공정거래위원회 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상품비교정보를 생산한 소비자단체)로 비교해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행복드림 사이트에 게재된 상품비교 정보글[3]은 총 45건으로, 자료 생산기관에 따라 상품비교 정보의 1건당 평균조회수가 422건에서 19,897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6개의 소비자 단체 중 1개 소비자 단체의 상품비교정보 1건당 평균조회수가 한국소비자원보다 높게 나타났고, 5개 소비자 단체는 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게시물 1건의 최저조회수는 156회, 최고조회수는 84,421건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상품비교정보 생산기관별 조회수]

(단위: 개, 건)

생산기관	게시물수	전체조회수	1건당 평균조회수	최저조회수	최고조회수
한국소비자원	22	189,067	8,594.0	1,022	23,045
대전충남소비자연맹	8	159,178	19,897.3	686	84,421
소비자시민모임	5	35,049	7,009.8	166	25,946
소비자공익네트워크	2	3,163	1,581.5	838	2,325
한국소비자연맹	3	922	307.3	156	570
금융소비자연맹	1	499	499	499	499
녹색소비자연대	4	1,688	422.0	324	554
소비자단체소계	23	200,499	8,717.3	-	-
합계	45	389,566	8,657.0		

주: 2020. 6. 1. 기준
자료: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3) 전년도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용역 결과가 차년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이 생산한 상품비교정보는 2018년과 2019년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용역 결과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비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이외에도 소비자단체를 통해 생산하도록 하는 이유를 보다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한 다각적인 정보 생산을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품비교정보 생산기관별 조회수 분석 결과 일부 소비자단체가 생산한 상품비교정보는 그 이용도가 높지 않아 상품비교정보의 수요자인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용도 높은 상품비교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품비교정보 대상품목 및 용역사업 수행 소비자단체 선정 과정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및 수요, 신청단체의 과거 실적 등을 보다 엄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자 평가 항목 및 선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사업과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 사업은 사업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한 단체가 다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사업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의 품질·가격 비교정보 생산 및 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한 용역사업이고,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사업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의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차 정보제공, 불합리한 거래·소비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인식도 조사"를 사업내용으로 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다.

두 사업은 사업목적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모집하고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수행 단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사업과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 사업 비교]

구분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세목	일반연구비(260-01)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목적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 지원	
사업내용	상품의 품질·가격 비교정보 생산 및 제공	① 상품의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차 정보제공 ② 불합리한 거래·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인식도 조사

구분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사업 수행자격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선정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업계대표, 학회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	
지급금액	용역 과제 또는 보조사업 1건당 약 2,5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두 사업의 2017~2019년 보조사업[4][5] 주제 및 용역과제를 살펴보면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사업을 통한 보조사업 주제는 대부분 특정 상품 및 서비스군의 유통 채널별·단계별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상품비교정보 생산 사업은 동일 품목의 여러 브랜드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안전성·표시사항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사업을 통한 보조사업 내역]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 주제명	금액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5,000
	대형마트 할인행사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5,000
부산소비자연맹[1]	안마의자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5,000
	에어프라이어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5,000
	세탁세제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5,000
소비자시민모임	모바일페이서비스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5,000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워터파크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5,000
녹색소비자연대	산후도우미서비스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5,000

주: 1) 부산소비자연맹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지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2017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사업: 반려동물 서비스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보건용 마스크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소스, 드레싱 류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프리미엄 청소기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수입주류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숙박앱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유아용세제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캐릭터상품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5) 2018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사업: 의류건조기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공기청정기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글로벌OTA앱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장묘서비스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온라인음원서비스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가정용 커피머신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판매용 반찬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대리운전의 합리적 거래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2019년 상품비교정보 생산 사업을 통한 용역과제 내역]

(단위: 천원)

단체명	용역과제명	금액
한국소비자연맹	어린이전동칫솔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23,600
	LED마스크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35,400
	안주류 HMR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24,700
대전·충남 소비자연맹[1)]	어린이화장품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35,000
	영유아용 과자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30,000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36,000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28,000
소비자시민모임	즉석 갈비탕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25,000
	경량 패딩조끼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31,700
	무선이어폰에 대한 상품 비교정보 생산	30,000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요가 레깅스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26,000
	바이크 쇼츠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29,000
녹색소비자연대	네일 폴리쉬에 대한 상품비교정보 생산	25,600

주: 1)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지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2019년 상품비교정보 사업과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한 소비자단체는 각각 5개 단체였으나, 이 중 4개의 소비자단체가 두 가지 내역사업의 수행주체로 중복 선정되어 사업을 실시하였다. 두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은 부산소비자연맹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한국소비자연맹의 지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4개의 소비자단체가 13개의 용역과제와 8개의 보조사업 등 총 21개 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2019년 소비자단체별 보조사업 및 용역과제 수행 건수]

(단위: 건, 천원)

단체명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사업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 사업	
	건수	용역비	건수	보조금
한국소비자연맹	3	83,700	2	50,000
대전충남소비자연맹	4	129,000		
부산소비자연맹			3	75,000
소비자시민모임	3	86,700	1	25,000
소비자공익네트워크	2	55,000	1	25,000
녹색소비자연대	1	25,600	1	25,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모방식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들의 정보 생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용역과제 및 보조사업 수행 소비자단체가 소수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비영리민간단체들도 동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모에 참여한 단체는 소수의 소비자단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공모절차에 대한 공고를 현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소비자단체 공지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일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도 홍보하여 보다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성과지표로 신규 설정된 "가격·품질 비교정보 소비자만족도"는 기존 실적치에 비해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 내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 2019년까지 "정보제공 품목 수"를 활용하여 왔으나, 2020년부터는 이를 대체하여 "가격·품질 비교정보 소비자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가격·품질 비교정보 소비자만족도"는 가격·품질 비교정보가 제공되는 소비자종합시스템(행복드림) 홈페이지의 만족도 조사 집계 결과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만족도는 5.0 만점에 4.8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동 사업의 성과목표는 4.5점으로, 기존 3년간 실적치인 4.8에 비하여 하향 설정하였다. 공정위는 기존의 "상품비교 정보 제공 품목 수"라는 정량적 지표를 "소비자만족도"라는 정성적 지표로 변경하여 성과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3년간 실적치에 비해서 하향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시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지표 또는 성과 측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 성과지표 설정 현황]

(단위: 개, 점, %)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정보제공 품목수 (개)	목표	28	24	26	-	가격·품질 비교정보,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 제공품목 수 합산
	실적	30	25	26	-	
	달성도	107.1	104.2	100.0	-	
가격·품질 비교정보 소비자만족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5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상의 비교공감 등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점수
	실적	4.8	4.8	4.8	-	
	달성도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윈도우10 교체를 위한 예비비 사용 부적절

가. 현 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1]과 한국소비자원 사업[2]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본예산은 각각 78억 500만원, 441억 5,6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배정을 통해 각각 2,000만원,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각각 78억 2,500만원, 444억 3,700만원으로 전액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과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의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7,805	7,805	0	20	7,825	7,825	0	0
한국소비자원 출연	44,156	44,156	0	281	44,437	44,437	0	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윈도우7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라 출연기관의 윈도우10 설치 및 내용연수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았으나,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는 본예산 편성당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3]을 예비비 요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271-350

2) 코드: 일반회계 1461-630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윈도우7 종료에 따라 출연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윈도우10으로 교체하고, 이에 맞추어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9년에 예비비 3억 100만원을 신청하여 배정받았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연기관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기관	집행내용	집행액
한국공정거래조정원	PC 15대 구매 × 77만원	11,612
	노트북 2대 구매 × 80만원	1,598
	윈도우10 30개 구매 × 23만원	6,990
	소계	20,200
한국소비자원	가상PC 접속용 단말기[1] 530대 × 45만원 윈도우10 IoT Enterprise 530개[2]	237,864
	업무용 모니터 200대 구매 × 22만원	43,000
	소계	280,864
합계		301,064

주: 1) 한국소비자원은 업무망 PC가 아닌 인터넷망 PC는 사용자별로 PC를 지급하지 않고, 서버에 연결된 가상PC를 통한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윈도우10 IoT OS는 가상PC 접속용 단말기 전용 OS로 단말기에 윈도우 라이선스가 포함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출연기관들이 보유한 노후PC는 윈도우 10 OS를 설치할 경우 속도 및 기능 저하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PC 및 노트북 교체가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의 2020년 1월 14일 서비스 지원 종료는 2015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2019년 예산편성 당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노후PC로 인한 발생한 문제 역시 예산편성 당시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PC 및 OS 교체 비용은 예비비가 아니라 2019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예비비의 목적[4]에 어긋나는 예비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4)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87억 5,100만원이며, 653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6.0%인 366억 1,000만원을 수납하고 284억 4,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2,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8,751	38,751	38,751	65,387	36,610	28,449	328	56.0

자료: 금융위원회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747억 6,100만원이며, 이 중 99.8%인 3조 688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992,125	3,074,360	3,074,761	3,068,825	202	5,734	99.8

자료: 금융위원회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7조 8,659억 5,200만원이며, 46조 4,903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6.7%인 26조 3,591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17조 6,089억 7,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조 4,253억 8,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8,722,846	8,722,846	8,722,846	8,457,796	8,457,796	0	0	10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21,886	1,721,886	1,721,886	3,841,009	1,769,235	2,020,898	50,876	46.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2,056	70,815	70,815	70,815	70,815	0	0	100.0
신용보증기금	6,996,975	7,056,975	7,056,975	22,878,637	7,754,396	12,962,912	161,329	33.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645,122	3,645,122	3,645,122	2,648,110	2,643,558	4,553	0	99.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648,308	6,648,308	6,648,308	8,492,013	5,658,226	2,620,611	213,176	66.6
합계	27,807,193	27,865,952	27,865,952	46,388,380	26,354,026	17,608,974	425,381	56.7

자료: 금융위원회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27조 8,659억 5,200만원이며, 이 중 94.9%인 26조 3,540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2,368억 4,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8,722,846	8,722,846	8,722,846	8,457,796	0	236,846[1)]	97.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721,886	1,721,886	1,721,886	1,769,235	0	0	102.7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72,056	70,815	70,815	70,815	0	0	100.0
신용보증기금	6,996,975	7,056,975	7,058,516	7,754,396	9,643	184,137	109.9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3,645,122	3,645,122	3,645,122	2,643,558	0	0	72.5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6,648,308	6,648,308	6,648,390	5,658,226	0	0	85.1
합계	27,807,193	27,865,952	27,967,575	26,354,005	0	236,846	94.2

주:1) 불용액 산출시 보전지출을 제외하여 산출하므로, (A)-(B)와 2,000만원(여유자금 운용액)의 차이 발생
자료: 금융위원회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5,140억 6,700만원(5.4%)이 감소한 26조 3,906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조 7,691억원(16.7%)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42,965	38,751	38,751	36,610	△2,141	△6,355
기금	22,578,544	27,807,193	27,865,952	26,354,026	△1,511,926	3,775,482
합계	22,621,509	27,845,944	27,904,703	26,390,636	△1,514,067	3,769,127

자료: 금융위원회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5,174억 6,100만원(4.9%)이 감소한 29조 4,228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조 4,003억원(17.6%)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443,968	2,992,125	3,074,360	3,068,825	△5,535	624,857
기금	22,578,544	27,807,193	27,865,952	26,354,026	△1,511,926	3,775,482
합계	25,022,512	30,799,318	30,940,312	29,422,851	△1,517,461	4,400,339

자료: 금융위원회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의 자산은 22조 4,934억 7,100만원, 부채는 52조 1,741억 7,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9조 6,807억 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3조 5,850억 7,900만원, 투자자산 7조 3,038억 4,400만원, 일반유형자산 4,816억 7,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조 888억 5,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317억 2,200만원(2.4%)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의 유동성대체 및 운용자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1,505억 9,900만원 증가, 정부내장기예탁금 예치 등에 따른 투자자산 3,065억 9,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2조 3,638억 6,900만원, 장기차입부채 36조 2,791억 71백만원, 장기충당부채 3조 4,721억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9,591억 2,600만원(5.4%)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예수금 및 상환채권 등의 유동성대체에 따른 유동부채 2조 3,962억 8,500만원 증가, 정부내장기예수금 등의 감소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5조 4,933억 2,7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2,493,471	21,961,749	531,722	2.4
Ⅰ. 유동자산	13,585,079	13,434,480	150,599	1.1
Ⅱ. 투자자산	7,304,844	6,998,250	306,594	4.4
Ⅲ. 일반유형자산	481,671	449,312	32,359	7.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33,017	11,595	21,422	184.8
Ⅵ. 기타비유동자산	1,088,859	1,068,112	20,747	1.9
부 채	52,174,178	55,133,304	△2,959,126	△5.4
Ⅰ. 유동부채	12,363,869	9,967,584	2,396,285	24.0
Ⅱ. 장기차입부채	36,279,171	41,772,498	△5,493,327	△13.2
Ⅲ. 장기충당부채	3,472,103	3,345,116	126,987	3.8
Ⅳ. 기타비유동부채	59,036	48,106	10,930	22.7
순 자 산	△29,680,708	△33,171,555	3,490,847	10.5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8,710억 2,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조 4,772억 9,500만원, 관리운영비 1,749억 9,300만원, 비배분비용 1조 1,144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3,728억 9,000만원, 비배분수익 4,151억 4,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3조 8,497억 1,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730억 6,200만원(24.9%) 감소한 1조 8,710억 2,700만원이며, 이는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 829억 5,600만원 감소하고, 투자증권처분이익 등 자산처분이익 증가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553억 7,8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산업금융지원(9,702억 1,000만원), 저축장려(717억 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16억 5,500만원과 경비 833억 3,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1조 865억 1,100만원과 자산처분손실 7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104,405	1,113,108	△8,703	△0.8
가. 프로그램 총원가	2,477,295	2,983,278	△505,983	△16.9
나. 프로그램 수익	1,372,890	1,870,170	△497,280	△26.6
Ⅱ. 관리운영비	174,993	150,764	24,229	16.1
Ⅲ. 비배분비용	1,114,431	1,197,387	△82,956	△6.9
Ⅳ. 비배분수익	415,142	359,764	55,378	15.4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978,686	2,101,495	△122,809	△5.8
Ⅵ. 비교환수익 등	3,849,713	3,599,460	250,253	7.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871,027	△1,497,965	△373,062	△24.9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3조 1,715억 5,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9조 6,807억 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조 4,908억 4,700만원(10.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5,992억 5,800만원 감소한 반면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2조 2,190억 7,800만원 증가하고,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1조 8,710억 2,7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조 2,190억 7,800백만원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3조 1,256억 8,8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9,066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6,101억 7,7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14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33,171,555	△37,795,438	4,623,883	12.2
Ⅱ. 재정운영결과	△1,871,027	△1,497,965	△373,062	△24.9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19,078	2,190,896	28,182	1.3
Ⅳ. 조정항목	△599,258	935,022	△1,534,280	△164.1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9,680,708	△33,171,555	3,490,847	10.5

자료: 금융위원회

마.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1,000억원 전출되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354억원 출연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 1,510억원을 출연받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 285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 676억원을 전입하였으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000억원을 전출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5,261억원의 예수원금회수 등이 있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8,500억원을 예탁하는 동시에 8,500억원의 예탁원금회수 등이 있었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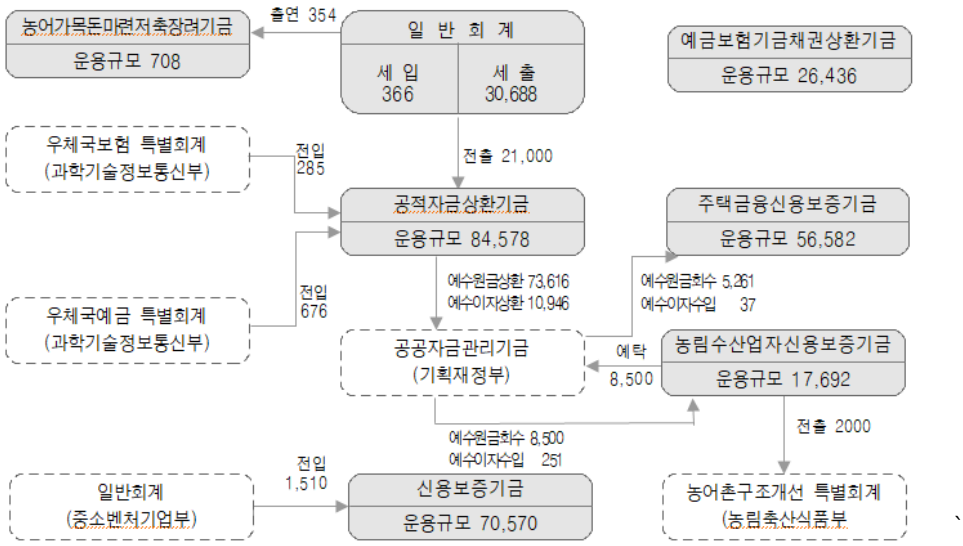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금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핀테크 지원 사업, ②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 ③ 전입금환급 사업** 등이 있다.

핀테크 지원 사업은 1억 500만원이 감액(80억원 → 78억 9,500만원)되었고,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신용보증기금)은 1,562억원이 감액(1조 8,189억원 → 1조 6,627억원)되었으며, 전입금환급 사업(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139억 9,100만원이 감액(575억 700만원 → 435억 1,6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 ② 업무용건물 사업 ③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등이 있다.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은 7,500만원이 증액(12억 3,500만원 → 13억 1,000만원)되었고, 업무용건물 사업(신용보증기금)은 30억원이 증액(178억 4,800만원 → 208억 4,800만원)되었으며,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은 1,942억원이 증액(2조 2,386억 9,700만원 → 2조 4,328억 9,700만원)되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금융위원회는 ① 여신시스템·자본시장·금융산업 혁신 및 정책금융기능 강화 ② 서민금융 안정망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기반 확립,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등 포용금융, ③ 금융리스크 대응 및 금융부문의 공정과 책임 강화 등 금융안정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산업은행의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에서 2020년, 2021년의 투자계획 규모를 실현가능한 적정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출계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 판매가 당초 예정한 시기보다 수개월이 지연되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으므로, 차후 신규상품을 출시할 경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핀테크 지원 사업은 사업수요가 있는 핀테크 기업이 실제 금융테스트베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사업의 효과 분석

2019년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사업은 총 7개로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총 4개 사업에서 5,550억원의 출자예산이 편성되어 전액집행 되었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총 3개 사업에서 2,250억원의 출자예산이 편성되어 전액집행 되었다.

[2019회계연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	0	0
산업은행 출자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00	0	0
산업은행 출자 (환경·안전 투자지원)	-	15,000	15,000	15,000	100	0	0
중소기업은행 출자 (환경·안전 투자지원)	-	15,000	15,000	15,000	100	0	0
산업은행 출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	40,000	40,000	40,000	100	0	0
중소기업은행 출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	10,000	10,000	10,000	100	0	0
중소기업은행 출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	0	0
산업은행 출자 (합계)	500,000	555,000	555,000	555,000	100	0	0
중소기업은행 출자 (합계)	200,000	225,000	225,000	225,000	1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총 7개의 출자사업을 목적별로 구분하면,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은 정책펀드 조성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6개 출자사업은 융자·투자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자본손실 및 대출에 대한 예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사업은 해당 은행이나 펀드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목적하는 융자·투자 등의 정책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런데 출자사업은 교부받은 투자금을 해당 기관의 자본에 편입하는 회계처리가 곧바로 집행이 되므로, 최종 정책목적의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집행실적이 100%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자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자사업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출자사업이 목표로 삼고 있는 정책목적 달성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1.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산업은행의 부진한 투자실적을 고려하여 투자계획 재설정 필요

가. 현 황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사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 경쟁력 강화 및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으로 산업은행 출자(산업구조고도화 지원)사업에 400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산업구조고도화 지원)사업에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	40,000	40,000	40,000	100	0	0
중소기업은행 출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	10,000	10,000	10,000	1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는 2018.12.17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2019. 1.23.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업투자지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중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중 10조원 규모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이다.

이에 기초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7조원, 3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2019년 3조원,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은행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간 1조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1) 코드: 일반회계 2414-316, 2415-308

[연간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부출자	프로그램 운용규모	정부출자	프로그램 운용규모
2019년	400	30,000	100	10,000
2020년	880	20,000	480	10,000
2021년	512	20,000	140	10,000
합 계	1,792	70,000	720	30,000

주: 2021년 수치는 계획액으로 향후 집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예상되는 자본손실분은 1,792억원이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우는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예상되는 자본손실분은 720억원인데, 2019년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전체 출자 필요액의 일부인 400억원, 100억원을 출자받았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손실 예상분]

산업은행	·[6.3조원(3년간 대출규모) ×6%(예상손실률)+ 0.7조원(3년간 투자규모) ×10%(예상손실률)] ×80%(평균여신비율) ×50%(손실보전률) =1,792억원
중소기업은행	·3조원(3년간 대출규모) ×6%(예상손실률) ×80%(평균여신비율) ×50%(손실보전률) =72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동 프로그램의 지원방식은 산업은행은 전체 지원규모 7조원 중 6.3조원은 대출방식으로 0.7조원은 투자방식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행은 전체 지원규모 3조원 전부를 대출방식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다. 산업은행의 경우 동 프로그램의 일부를 투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투자대상은 ①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기술투자, ②대·중·소 협력사업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 상생투자, ③ 사업전환, 지방이전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등 사업재편 투자 등이다.

한편, 투자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및 시설투자와 연계된 운영자금과 R&D, M&A·분사, 영업양수도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나. 분석의견

산업은행은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에서 2019년 투자실적이 당초 계획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차후 투자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므로, 2020년, 2021년의 투자계획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출계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예산 편성시 산업은행은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에서 전체 지원자금 3조원 중 대출은 2조 7,000억원, 투자는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2019년 산업은행의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지원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 기준 대출은 3조 8,789억원이 지원되었고 투자는 285억원이 지원되었다. 대출은 당초 계획인 2조 7,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투자는 당초 계획인 3,000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9년 산업은행의 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대출	투자	합 계
계획(A)	27,000	3,000	30,000
실적(B)	38,789	285	39,074
달성도(B/A)	143.7	9.5	130.2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은 동 프로그램 운용시 자금수요에 따라 기업이 대출과 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자금수요 기업이 지분율 희석에 따른 경영권 불안 등을 이유로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여 투자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동 프로그램상의 투자계획액 7,000억원 전액을 상장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967억원의 자본을 보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기자본비율의 부담이 있는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쉽게 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워 보인다.[2)]

[산업은행의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상 투자계획에 따른 BIS하락 대비 필요자본]

7,000억원(투자계획 규모)*318%(상장기업 지분투자 위험가중치)*13.33%(산업은행 2020년 1분기 BIS비율)=2,967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은 당초 3년간(2019~2021년)까지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에서 7,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투자지원 규모와 대출지원 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은행이 산업은행 자본으로 직접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투자액대비 318%(상장기업) 또는 424%(비상장기업) 증가하므로,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BIS비율의 하락폭이 커지는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100

1-2. 산업은행 출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STX 조선해양 지원 목적의 정부출자금 활용도 제고 노력 필요

가. 현황

산업은행 출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3]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한국GM과 STX 조선해양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예산에 4,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 GM은 2013년 이후 매출·수익 감소로 2017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 한편, STX 조선해양은 조선업 침체·적자 수주 및 해외 투자 실패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누적되어 2013년 이후 경영악화가 지속되었으며 2018년에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법정관리 여부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 GM과 STX 조선해양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은행이 두 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여신규모를 고려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이 한국 GM에 대해 총 7.5억$(약8,090억원)을 출자하고, STX조선해양에 대해 선수금 환급보증(RG)[4] 5억$(약 5,761억원)을 발급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5]

이에 정부는 산업은행이 한국 GM과 STX 조선해양을 지원함에 따라 5,460억원의 자본손실이 발생하고 위험가중자산이 1조 7,888억원이 증가해 BIS비율[6]이

3) 코드: 일반회계 2414-311

4)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이란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대비하여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의 반환을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것을 의미함

5) 2018년 3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회사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통한 경쟁력 개선을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선별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RG 발급)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음

0.37%p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산업은행의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출자예산을 편성하였다.[7]

나. 분석의견

산업은행의 STX 조선해양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실적이 당초 계획한 5억$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해 선박수주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업은행은 여타 현안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출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9년에 2018년 산업은행이 한국GM에 8,090억원을 출자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은행이 STX 조선해양에 5억$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함에 따라 하락하는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확충 목적으로 4,000억원을 출자하였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은행이 STX 조선해양에 발급한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 실적은 2억 2,760만$로서 당초 계획했던 5억$의 45.5%에 불과한 수준이다.

---

6)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1988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규제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로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수치임

7) 당초 정부안은 5,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BIS비율 수준이 양호함을 고려하여 1,00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내역]

(단위 : U$백만)

연번	선주	수주내역	RG공급액	RG공급 계약일
1	A사	50K MR Tanker 2척	27.0	2018-05-03
2	B사	50K MR Tanker 2척	26.8	2018-05-03
3	C사	50K MR Tanker 2척	27.2	2018-09-12
4	D사	50K MR Tanker 3척	45.0	2018-12-14
5	D사	50K MR Tanker 2척	29.6	2019-06-14
6	E사	50K MR Tanker 2척	29.7	2019-08-21
7	F사	50K MR Tanker 2척	27.9	2019-11-22
8	E사	50K MR Tanker 1척	14.4	2019-12-31
		합 계	227.6	

주: MR Tanker는 Middle Range Tanker로서, 주로 석유화학운반선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은 '18~'19년 STX 조선해양의 선박수주 목표는 34척이었으나, 조선업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선박발주가 감소하여 16척을 수주하는데 그쳤고, 이에 따라 RG발급 또한 계획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6월말 기준 STX 조선해양의 신규 선박수주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와 같은 조선업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는 산업은행의 STX 조선해양에 대한 발급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RG공급에 따른 자본손실분 1,384억원[8]의 보전을 위한 출자금이 절반정도 밖에 활용되지 못하여 당초 출자목적인 STX 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STX 조선해양의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계획한 선수금 환급보증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현안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8)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의 STX 조선해양에 대한 RG에 따른 자본 손실분을 1,730억원으로 계산하여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사시 정부안의 80%만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1,730억원의 80%인 1,384억원이 산업은행의 STX 조선해양에 대한 RG에 따른 자본 손실분 충당을 위해 출자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한 투자방식 검토 필요

가. 현황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사업[9]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혁신기업에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해 하락하는 중소기업은행의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사업은 2019년에 2,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은행 출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	0	0
신성장·혁신분야 투자	56,900	56,900	56,900	56,900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동 사업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1.8조원, 자영업자·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은 2,000억원,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10]는 512억원, 신성장·혁신분야 투자는 1,000억원(2019년 400억원)[11] 규모이다.

2019년 예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1.8조원, 자영업자·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 신성장·혁신분야 투자 1,000억원 공급에 따른 각각

9) 코드: 일반회계 2415-304

10) 카드매출대금을 주말이나 공휴일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11)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신성장·혁신분야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자함에 따라 하락하는 중소기업은행의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출자금액이 계상되었음

의 BIS하락분 보전금 1,278억원, 142억원, 569억원과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11억원이 편성되었다.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정부출자금	계획규모	지원실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1,278[1)]	18,000	18,051
자영업자·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142[2)]	2,000	2,004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11[3)]	512	762
신성장·혁신분야 투자	569[4)]	1,000[5)] (400)[6)]	451

주: 1)1.8조원(대출규모) × 49.9%(소상공인 대출채권의 평균위험가중치)× 14.23%(2018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은행 BIS비율) = 1,278억원(BIS비율 유지에 필요한 필요자본)

2)0.2조원(대출규모) × 49.9%(소상공인 대출채권의 평균위험가중치)× 14.23%(2018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은행 BIS비율) = 142억원(BIS비율 유지에 필요한 필요자본)

3)512억원(자금부담) × 1.49%(1일물 내부금리) × 1.5일 = 11억원(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4)1,000억원(투자액) × 400%(지분투자 평균위험가중치) × 14.23%(2018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은행 BIS비율)=569억원(BIS비율 유지에 필요한 필요자본)

5)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치 투자계획규모

6)2019년 투자계획규모

자료: 중소기업은행

2019년 동 사업의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1조 8,051억원, 자영업자·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은 2,004억원,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는 762억원이 지원되었고, 신성장·혁신분야 투자는 451억원이 지원되었다.

그 중, '신성장·혁신분야 투자' 사업은 기술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지원을 통해 육성하려는 것인데, 투자대상은 「혁신성장공동 기준메뉴얼」에 따른 신성장·혁신분야[12] 및 8대 선도사업[13] 영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추진하는 기

12) 「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신성장·혁신분야 산업을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선정·관리하여 정책금융기관 간 통일된 지원 체계를 조성하였음(2018년 7월)

13)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팜·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등임

업 성장단계별 창업·혁신투자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기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은행의 창업 · 혁신투자 프로그램]

- (창업) 'IBK 창업기업 SEED 투자프로그램('19.1.2.시행)'
  - 신성장·혁신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초기기업
  -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금 3억원 이하, 투자기간 5년 이상
- (성장·확장) '혁신성장 투자프로그램('19.4.29.시행)'
  - 「투자업무취급지침」 투자대상 기업[1]中 아래 각 1 해당기업
  ① 신성장·혁신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IBK테크기업 선정기업(기업은행 기술금융부에서 선정)
  ③ 투자용 TCB 등급 우수기업(TCB 평가기관의 투자용 TCB[2] TI-4등급 이상)

주1) 기업은행 내부 신용평가등급, 재무기준 충족기업 및 기술력 보유 벤처기업 등
2) 기술성, 시장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여 투자 결정에 보다 적합한 기술평가방식
자료: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은행

투자방식은 보통주, 우선주[14], 전환사채(CB)[15], 신주인수권부사채(BW)[16] 등이 있는데, 투자대상기업의 성장 단계 및 재무 구조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은행과 대상기업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통상 보통주·우선주[17] 인수방식의 경우 투자금은 피투자기업의 자본금이 되나, 보통주의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통상의 회사채와 같이 약정한 만기에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피투자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여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피투자기업이 투자금 상환의무를 지거나, 질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형 투자'라고 부른다.

14)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이자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는데,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5) 통상의 회사채와 같이 약정한 만기에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받는 채권인데, 주식전환권이 발동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다.

16)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회사채와 같이 만기에 상환이 가능한 권리인데, 추가적으로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7) 한국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스타트업의 우선주는 자본금으로 인식되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기업의 우선주는 상환조건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부채로 인식됨

[투자방식별 특징 비교]

구 분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기간	·없음	·3~5년	·3~5년	·3~5년
자금 성격	·자본금	·전환권 행사 前: 자본금 ·전환권 행사 後: 채무	·전환권 행사 前: 채무 ·전환권 행사 後: 자본금	·채무
이자 지급	·없음	·없음	·약정된 이자 지급	·약정된 이자 지급
만기 전환권 행사시	·해당없음	·상환권 행사시 투자원금 및 약정이자 반환	·보통주로 전환	·신주인수권보유

자료: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2018. 1.17, 관계부처 합동) 변형

나. 분석의견

2019년 중소기업은행이 신성장·혁신분야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95%가 우선주 및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대출형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신성장·혁신분야 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를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통주 투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행이 2019년 신성장·혁신분야에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총 47개 중소기업에 대해 451억 700만원이 투자되어 당초 투자목표액인 400억원을 초과달성하였다.

투자방식별로 구분하면, 우선주 인수방식으로는 39개 기업에 대해 336억 700만원(74.5%),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는 5개 기업에 대해 75억원(16.6%),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인수방식으로는 2개 기업에 대해 20억원(4.4%), 보통주 방식으로는 1개 기업에 20억원(4.4%)이 투자되었다. 특히 우선주 및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 등 대출형 방식으로 투자된 금액이 전체의 95.6%로 주를 이루고 있다.

[2019년 중소기업은행 신성장·혁신분야 기업 투자의 투자방식별 분류]

(단위 : 개, %, 백만원)

투자방식	투자기업	투자금액	비고
우선주[18]	39(83.0)	33,607(74.5)	대출형 투자
전환사채(CB)	5(10.6)	7,500(16.6)	대출형 투자
신주인수권부 사채(BW)	2(4.3)	2,000(4.4)	대출형 투자
보통주	1(2.1)	2,000(4.4)	
합 계	47(100.0)	45,107(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우선주 및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의 대출형 투자방식은 투자자금의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회수와 리스크 최소화를 중요시 하는 민간투자자(벤처캐피탈)가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2018. 1.17)에서 보통주 투자방식 비중을 높게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서 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자펀드의 관리·성과보수 산정시에도 보통주 투자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통주 투자비중의 확대[19]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은행의 투자방식은 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정책 방향[20]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은행은 우선주 투자는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59.4%[21]('19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주된 투자방식이고, 피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우선주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비해 재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보통주 인수방식에 비해 피투자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벤처캐피탈 및 정책펀드(모태펀드 및 성장지원펀드 등)와 별도로 중소기업은행의 투자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이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의

18) 우선주는 모두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임

19) 정책펀드의 보통주 투자비중은 2016년 기준 20% 정도이나, 혁신모험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에 대해서는 보통주 방식의 투자가 30%이상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20) 모태펀드 역시 운용사 선장시 제안서에 보통주 투자비중을 높게 계획하고 있는 운용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21) 2조 5,428억원(우선주 투자액)/4조 2,777억원(전체 투자액)

수익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해 모험적 투자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주의 투자비중이 민간 벤처캐피탈의 17%[22]보다 낮은 4.4%에 불과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또한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서는 투자계획액의 4%(7,000억원 투자계획에 280억원 출자) 정도만 출자한 반면, 중소기업은행의 '신성장·혁신분야 투자' 프로그램에서는 투자계획액의 50%이상(1,000억원 투자계획에 569억원 출자)을 출자한 점을 감안할 때에도 회수가능성 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은행은 신성장·혁신분야 기업에 대해 투자자금 회수의 측면을 강조하는 대출형 투자 방식의 비중을 줄이고, 보통주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2019년 기준

1-4. 산업은행 출자, 중소기업은행 출자(환경·안전투자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금리 인하 방안 검토 필요

가. 현황

환경·안전투자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이다.

산업은행 출자(환경·안전투자 지원)[23] 사업과 중소기업은행 출자(환경·안전투자 지원)[24] 사업은 2019년에 추경으로 각각 15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산업은행(환경·안전투자 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환경·안전투자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환경·안전투자 지원)	0	15,000	15,000	15,000	100.0	0	0
중소기업은행 출자 (환경·안전투자 지원)	0	15,000	15,000	15,000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의 지원분야는 환경·안전분야 설비투자, 노후 설비·건축물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민간의 생활 SOC 관련 설비투자 등이다.

동 프로그램의 2019년 대출지원 계획규모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1조원이고, 기업당 대출한도는 산업은행이 300억원, 중소기업은행이 200억원이며, 통상의 대출상품보다 1.0%p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2019년 동 프로그램의 지원실적을 보면, 산업은행은 계획규모 1조원을 초과하여 1조 4,519억원의 대출을 공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계획규모 1조원의 90%인 9,031억원의 대출을 공급하였다.

---

23) 코드: 일반회계 2414-315

24) 코드: 일반회계 2415-304

나. 분석의견

2019년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대출지원 실적을 보면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과 달리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게 금리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2.73%, 중견기업은 2.27%이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2.69%, 중견기업은 2.46%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중견기업보다 각각 0.46%p, 0.23%p 높은 수준이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의 기업규모별 대출금리 현황]

(단위: %, %p)

구 분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A)	2.73(5,337억원)	2.69(8,899억원)
중견기업(B)	2.27(9,182억원)	2.46(132억원)
A-B	0.46	0.23

주: 괄호안의 수치는 2019년 대출 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이는 동 사업의 목적이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분야에 투자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시설자금을 대출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높은 것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중소·중견기업 앞 동일한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 실행금리는 여신조건(여신금액,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중평균 금리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단순 비교할 수 만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0.1%의 금리우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중 평균금리 역시 중소기업 금리우대분 0.1%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산업은행은 0.19%p,

중소기업은행은 0.22%p 낮게 나타나고 있어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의 기업규모별 대출금리 현황]

(단위: %, %p)

구 분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A)	2.82(1조 6,141억원)	3.03(1조 8,975억원)
중견기업(B)	3.03(2조 2,648억원)	3.25(592억원)
A-B	△0.19	△0.22

주: 괄호안의 수치는 2019년 대출 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에게 금리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신규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대비 사전준비 철저 필요

가. 현 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1]은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9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90,000	90,000	0	90,000	90,000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회사는 주택구입자에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주택담보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을 취득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이와 같은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새로운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얻은 금액을 다시 대출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2]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2632-301

2) 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은 주택담보대출자, 대출금융회사, 투자자 등 각 개별주체에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주택담보대출자는 주택자금 차입이 용이해지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이 있고, ② 대출금융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함으로써 주택대출 보유 시 수반되는 신용위험 및 금리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BIS 비율 개선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으며, ③ 투자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하는 안전한 투자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MBS) 발행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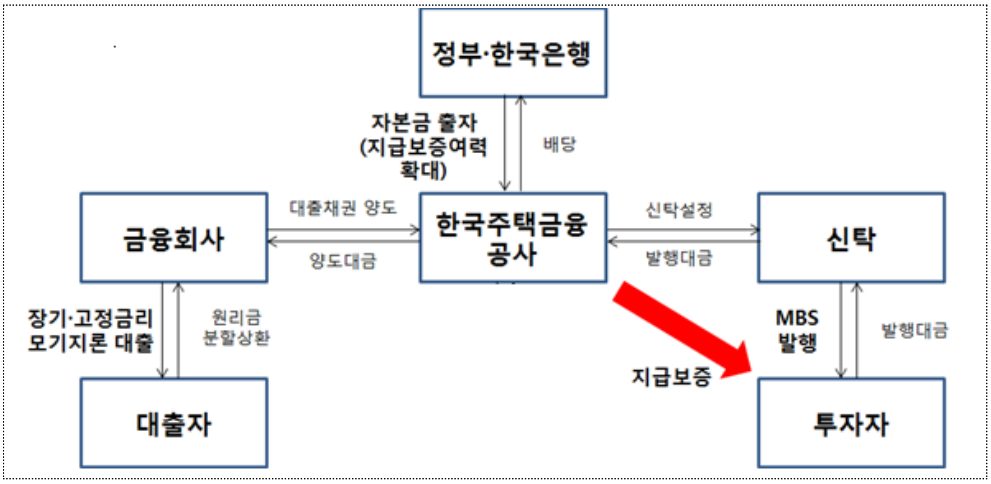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같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증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지급보증을 하는데, 그 지급보증 규모의 법정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대비 50배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공사계정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지급보증 유지를 위해 적정한 자본금 대비 지급보증규모(이하 "지급보증배수")를 40배로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선에서 유동화증권의 공급량을 정하고 있다.[3)]

2018년도 예산 편성당시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가 적정수준인 40배를 초과(2017년말 기준 43.3배)하였고 매년 30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9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적정수준의 지급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적으로 900억원의 출자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8년말 기준 유동화증권의 지급보증배수는 39.0배로 적정수준인 40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지급보증)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배에도 미치지 못하였다.[4] 그 이유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5] 및 정책모기지상품의 요건 강화[6]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정부가 2018년, 2019년 각각 900억원씩 총 1,800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 의미가 약화되었다.

이에 국회는 2018년 결산심사시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홍보강화 등 정책모기지 수요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여 출자된 자본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확충된 자본금의 활용을 위해 기존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의 상품과 별도로 2019년 9월경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20조원 규모의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였다.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9월경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11월까지 대출지원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처리절차가 지연되어 2020년 3월초에 이르러서야 대출지원이 완료되었으므로,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심사서류 접수 체계의 개선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신속히 대출상품을 판매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은 금리변동의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대환)시켜 주는 것으로,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63.5만명이 신청하였다. 동 상품은 선착순 접수에 따른 창구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 위주로 접수(88% 온라인 접수)하였고, 저가주택 보유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

4) 2018년도 예산 편성당시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도에 4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정부로부터 1,000억원을 출자받는다고 하더라도 2018년말 지급보증배수가 47.7배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5)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18.4.16)」,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18.4.24)」

6) 보금자리론의 요건 강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2017.1.1. 신설), 대출한도 축소: 9억원→6억원, 일시적 2주택자 요건강화: 처분기한 3년→2년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의 내용]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① 대환대상</td><td>○ 19.7.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순수고정금리 주담대 및 기업·한도대출 제외</td></tr>
<tr><td>② 대출한도</td><td>○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최대 5억원
* LTV · DTI는 각 70%, 60% (조정지역 차감없음)</td></tr>
<tr><td>③ 소득요건</td><td>○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td></tr>
<tr><td>④ 주택요건</td><td>○ 부부합산 1주택자로, 대출승인일 현재 9억원 이하</td></tr>
<tr><td>⑤ 대출금리</td><td>
<table>
<tr><th>만기</th><th>10년</th><th>15년</th><th>20년</th><th>30년</th></tr>
<tr><td>전자약정형</td><td>1.85%</td><td>1.95%</td><td>2.05%</td><td>2.10%</td></tr>
<tr><td>기본형</td><td>1.95%</td><td>2.05%</td><td>2.15%</td><td>2.20%</td></tr>
</table>
</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동 상품에 대해 홍보할 당시에는 신청이후 2개월 이내인 2019년 11월말[7]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이 완료되도록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 상품의 신청은 2019년 9월 29일에 종료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심사난이도가 높아지면서 2020년 1월말 경에서야 1차 심사(주택가격 2.1억원 이하)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다. 또한 1차 심사결과 요건미비의 신청자들에게 지원되지 못했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주택가격 2.7억원 이하)으로는 2020년 3월초에 대환지원이 완료되었다.[8]

이처럼 대출절차가 지연된 원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 및 주택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허수신청자를 신청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9]

그러나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초 상품 설계시

7)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 8. 26)
- 접수 마감(2019. 9. 29)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예정

8)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자 자격심사 절차가 지연되자, 2019년 11월경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 12만 1,000건의 심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초과수요가 발생한 직후 당초 예정에 비해 대환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두 차례에 걸쳐 설명하였다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의 9.30일 신청결과 발표자료, 10.29일 보도자료)

9)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이 대출심사를 진행한 건은 약 38만건으로 당초 예상한 심사건수(20만건)의 두 배 수준이라고 설명함

부터 예정된 사항이라는 점과 통상적인 접수절차에서는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신청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1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 판매를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대환절차가 지연되면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일부 대환 대상자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약 2개월간 기대했던 저금리 혜택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에 노력하는 한편, 신속한 심사서류접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의 최종 승인 결과]

구 분	주택가격	소득요건(부부합산 기준)	신청건	승인완료	승인완료액수
안심전환대출	2.7억원 이하	85백만원 이하	63.5만건	23.8만건	20.1조원
		1억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자료: 금융위원회

10)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는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일반적 조항을 두고 있으나 법령상 제공자료 목록 및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서류접수시 상당수의 요건미비 신청자들을 걸러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택금융공사는 자료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 핀테크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핀테크 지원 사업[11]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핀테크 분야 국제협력 강화·핀테크 체험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2019년도 본예산은 78억 9,5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2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01억 3,000만원으로, 이 중 100억 3,500만원(99.1%)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핀테크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핀테크 지원 사업	7,895	10,130	-	10,130	10,035	99.1	20	75

자료: 금융위원회

동 사업은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핀테크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국제협력·연구 및 핀테크 박람회', '핀테크 보안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1) 코드: 일반회계 1134-301

3-1.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 수요기업의 실제 지원 대상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강화 및 사업성과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내역사업인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75%의 테스트 비용[1]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본예산으로 48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60억 8,200만원이고, 이 중 60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2,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핀테크 지원 사업	7,895	10,130	0	10,130	10,035	99.1	20	75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32	6,082	0	6,082	6,057	99.6	0	25

자료: 금융위원회

내역사업인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3가지 분야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①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예금, 대출·보험 심사 등)을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최대 2년 내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2]

② 위탁테스트 제도는 독자적인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기존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에 한함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3)]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이 등의 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 금융관련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4)]

나. 분석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추경예산을 통해 내역사업인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및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집행실적은 당초 편성된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이 실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추경예산 60억 8,200만원 중 32억 4,3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실적이 53.3%에 불과하였다. 이는 동 내역사업의 본예산(48억 3,200만원)의 67.1%에 불과한 수치이다.

[2019회계연도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세부내역사업	예산 (A)	실집행 (B)	잔액	집행률 (B/A)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참여지원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164	139	25	84.8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지원	5,250	2,457	2,793	46.8
	테스트베드 참여촉진 홍보	400	397	3	99.3
	위탁기관 업무대행료	268	250	18	93.3
소 계		6,082	3,243	2,839	53.3

자료: 금융위원회

3)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로 동법이 시행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비용집행이 2/4분기부터 시작되었고, 추경예산이 3월말에 제출되어 5월부터 집행할 수 있을 것 예상하였으나 심의 지연으로 8월말이 되어서야 추경예산 집행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분야에서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집행된 보조금은 20억 2,730만원으로 동 서비스가 201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서비스의 보조금 집행액은 28억원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내역사업인 '금융테스트베드 운영·참여지원'의 실집행액은 40억원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시 본예산 48억 3,200만원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수준이다.

또한 실집행실적이 본예산의 70% 수준도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경예산의 집행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것이 집행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실적이 부진한 주요원인은 금융위가 사전조사한 수요보다 실제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지원으로 지정된 비중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 금융위가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1월에는 88개사, 7월에는 142개사가 사업수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금융테스트 베드 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수요조사 기업의 50%(1월:42개사, 7월:35개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5)]

[2019년 1월, 7월 금융테스트베드 운영지원의 수요조사 진행결과]

(단위: 개)

구 분	'19.1월	'19.7월
수요 금융회사	15	41
수요 핀테크기업 등	73	101
계	88	142
실제 지정기업	→ 42개사(금융 12, 핀테크30)	→ 35개사(금융 21, 핀테크14)

자료: 금융위원회

5)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사업 수요가 있는 중소 스타트업 들이 지원절차에 대한 이해사 부족하여 실제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비율이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사업수요가 있는 중소 핀테크 기업이 금융테스트 베드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핀테크 기업이 금융테스트 베드 지원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테스트 분야 참여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 실적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위탁테스트 분야 참여기업의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탁테스트 제도는 독자적인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6]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테스트 분야에 참여한 기업은 10개 기업으로 9개 기업이 2019년말 기준으로 테스트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2020년 3월말 기준 1건의 테스트 내용이 사업화(상용화)되었고, 1건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2건은 테스트가 중단되거나 미진행되었고, 5건은 사업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위탁테스트 지정기업별 사업화 현황]

차수	핀테크 기업	금융 회사	기술 분야	선정일	테스트기간	사업화 (상용화)여부
2차	뉴스젤리	하나은행	빅데이터	'18.12.21	'19.1.2.~ '19.2월	-
	뉴스젤리	기업은행	빅데이터	'18.12.21	'19.1.2~ '19.6.월	-
	오윈	KB카드	LBS	'18.12.21	'19.1.2.~ '19.11.29.	-
	직뱅크	NH 농협은행	온라인플랫폼	'18.12.21	'19.1.2.~ '19.12.3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투비콘	KB 생명보험	인슈어테크	'18.12.21	'19.1.2.~ '19.12.31.	O
	해빗 팩토리	KB 생명보험	인슈어테크	'18.12.21	테스트 중단	-

6)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차수	핀테크 기업	금융 회사	기술 분야	선정일	테스트기간	사업화 (상용화)여부
	브링 프라이스	KB 손해보험	인슈어테크	‘18.12.21	테스트 미진행	-
3차	보난자 팩토리	KB 국민은행	보안	‘19.9.11	‘19.9.1.~ ’19.11.29.	-
	파이언스	KB 캐피탈	온라인플랫폼	‘19.9.11	‘19.10.1.~ ’19.12.31.	-
	키스톤 핸즈	KB 국민카드	지급,결제	‘19.9.11	‘19.12.1~ ’20.12.31.	-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위탁테스트를 통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협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테스트 결과 서비스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업적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화되기 어렵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에 사업진행 방향 및 일정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탁테스트 제도는 반드시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금융서비스 기술을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위탁테스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이 상용화되어 금융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테스트 참여 핀테크기업의 신속한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정대리인 분야는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간의 위탁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심사시 양자간 위탁계약 체결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위탁계약체결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예금, 대출·보험 심사 등)을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최대 2년 내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7]

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31개이고, 2019년에는 5개 핀테크 기업에 3억 3,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지정된 기업에 비해 보조금 지원기업이 적은 이유는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건 중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및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지정대리인 지정기업[1)]	보조금 지원 기업	보조금 지원액	비고
2018	9	4	273.8	2019년 예산으로 지원
2019	22	1	57.2	
합 계	31	6	331	

주: 1)지정대리인 지정기업수는 중복되는 기업이 있더라도 지정건별로 계산함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2019년말까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31건 중 2020년 3월말까지 실제로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된 건은 11건(35.5%)에 불과하다.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위탁계약 체결은 사업추진의 선결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업무위탁계약 체결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절차·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개선·변경이 필요하므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업무위탁계약 체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지정대리인 지정 후 위탁계약 체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2020년 4월말 기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지 1년이 경과한 기업 16개 중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례가 8건(5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지정대리인 제도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인다.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핀테크 지정대리인 지정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위탁계약체결 현황]

차수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기술 분야	선정일	계약체결 여부	계약 기간
1차	빅밸류	하나은행	빅데이터 ·AI	2018.09.14	O	'19.8.21~ '20.8.20
	핀테크	하나은행	빅데이터 ·AI	2018.09.14	X	-
	에이젠 글로벌	우리은행	빅데이터 ·AI	2018.09.14	X	-
	피노텍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온라인 플랫폼	2018.09.14	O (우리은행)	'19.4.29~ '21.10.17
	집펀드	SBI 저축은행	빅데이터 ·AI	2018.09.14	O	'19.7.1~ '20.6.30
	핀다	SBI 저축은행	온라인 플랫폼	2018.09.14	X	-
	한국 어음중개	삼성카드	빅데이터	2018.09.14	X	-
	아이패스	BC카드	바이오정보	2018.09.14	X	-
	스몰티켓	한화 손해보험	인슈어 테크	2018.09.14	O	'18.12.6~ '19.12.5
2차-1	피노텍	기업은행	온라인 플랫폼	2019.01.18	O	'19.11.6~ 21.11.5
	빅밸류	신한은행	빅데이터 ·AI	2019.01.18	X	-
2차-2	비바 리퍼블리카	SC 제일은행	온라인 플랫폼	2019.03.04	X	-
	팝펀딩	기업은행	온라인 플랫폼	2019.03.04	O	'19.11.6~ 21.11.5
	마인즈랩	현대해상	인슈어 테크	2019.03.04	O	'20.2.14. ~21.2.28
	핑거	NH 중앙회	빅데이터 ·AI	2019.03.04	x	-
	크레파스 솔루션	신한카드	빅데이터 ·AI	2019.03.04	O	19.11.11 ~21.3.4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제도에서 위탁계약체결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정대리인 지정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위탁계약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2. 핀테크 특화 교육: 재직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된 교육과정 운영 필요

가. 현 황

내역사업인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은 핀테크 기업에 업무공간·멘토링·맞춤형 교육·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에 19억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핀테크 지원 사업	7,895	10,130	0	10,130	10,035	99.1	20	75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1,906	1,906	0	1,906	1,906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동 내역사업의 세부내역은 '업무공간 및 멘토링', '핀테크 특화교육', '해외진출 컨설팅', '위탁기관 업무대행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내역 중 '핀테크 특화교육 사업'은 핀테크 분야의 재직자와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4억 2,000만원을 초과하여 4억 5,390만원이 집행되었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2019회계연도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사업명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사업 실적
업무공간 및 멘토링	646	477.7	74	-입주사 15개사 -개별 멘토링 288건 -찾아가는 멘토링 428건
핀테크 특화교육	420	453.9	108	-리더스 201명 수료 -넥스트 리더 57명 수료
해외진출 컨설팅	680	564.4	83	-33개사 컨설팅 지원
위탁기관 업무대행료	160	155.3	97	
소계	1,906	1,651.3	87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 특화교육' 사업은 핀테크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와 핀테크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로 구분된다.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는 핀테크 업종 재직자들의 핀테크 관련 지식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2019년 6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차례 진행되었고 교육내용은 핀테크개론·금융감독규정·금융업개론·금융규제테스트베드·빅데이터·오픈API·금융보안·핀테크 마케팅 등에 대한 것이다.[1)]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들의 핀테크 입문 교육과정으로서 2019년 6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288시간), 2019년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228시간)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교육내용은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와 대동소이하다.

나. 분석의견

핀테크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핀테크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수료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재직자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예비창업자 및 구직자 대상)는 교육시간이 비교

1) 회차별 구성시간은 9~36시간으로 상이함

적 장시간(228~288시간)임에도 전체교육인원 64명중 57명이 수료하여 89.1%의 수료율을 보인 반면,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재직자 대상)는 교육시간이 비교적 단시간(8~32시간)임에도 전체교육인원 331명중 201명이 수료하여 60.7%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료율을 보였다.

[2019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와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의 수료율]

(단위: 명, %)

교육과정명	교육인원(A)	수료인원(B)	B/A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331	201	60.7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	64	57	89.1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수강생이 전체 교육과정의 80%이상을 출석해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재직자들은 업무 사정으로 야간 교육에 불참하거나 과정별로 개설된 강좌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경향 때문에 종일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예비창업자 대비 구직자 과정보다 수료율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에 비해 현업에 종사하는 재직자의 수료율이 낮은 측면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교육신청 인원대비 수료율이 낮다는 것은 교육에 투입된 예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료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핀테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과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의 주제가 유사한데, 이러한 점이 재직자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2)]

2)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비창업자 및 구직자 교육과정과 재직자 교육과정간 교육주제는 유사하나, 세부 커리큘럼 및 난이도와 깊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9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와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의 교육내용]

구 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1,2기)
교육 내용	·오리엔테이션 ·금융산업 동향 ·금융업의 이해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 규제와 제도 ·핀테크 서비스 구현 ·금융 정보보호 ·디지털 마케팅 활용 실무 ·UI/UX ·핀테크 비즈니스 혁신방안 기획	·오리엔테이션 & 팀 빌딩 ·금융산업 동향 ·금융업의 이해 ·금융 규제와 제도 ·핀테크 서비스 구현 ·금융 정보보호 ·디지털 마케팅 활용 실무 ·UI/UX ·핀테크 비즈니스 기획 ·앱 인벤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템 구현 ·프로젝트 발표 심사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재직자들의 교육시간, 교육과정 구성,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재설계하여 재직자 대상 핀테크 교육과정의 수료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배정의 적정성 분석

가. 현 황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1]은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를 통해 금융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도 본예산은 5억 9,4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배정을 통해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7억 5,800만원으로, 이 중 7억 5,300만원(99.3%)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내역사업인 'SW/HW 및 PC 구입'은 본예산으로 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300만원이 전용증액되고 1억 6,4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어 예산현액은 3억 4,900만원으로, 전액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금융위정보 시스템 운영	594	594	±13	164	758	753	99.3	0	5
SW/HW 및 PC 구입	172	172	13	164	349	349	1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는 PC 운영시스템인 윈도우7의 보안 지원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0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PC 및 노트북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았으나, 이는 본예산 편성당시 예측가능한 사정으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134-301

로서 국가재정법상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 에서는 본예산 편성당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2] 등을 예비비 요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에 예비비 1억 6,400만원을 신청하여 배정받았고, 이를 전액집행하였다. 이는 PC 운영시스템인 윈도우7의 보안 서비스지원 중단[3]에 따라 윈도우10으로 전환하기 위해 것으로서, PC 168대 구입에 1억 2,800만원, 노트북 31대 구입에 3,300만원, 윈도우 운영시스템(OS) 14개 교체 비용에 300만원을 집행하였다.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내용	집행액
1	■PC 168대 구매	128
2	■노트북 31대 구매	33
3	■OS 14개 교체	3
	합 계	164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계획 송부'[4] 및 '(긴급)20년 기준 미교체 윈도우7 PC 현황조사'[5] 등의 지침에 따라 내용연수 5년이 경과('12~'14년 도입)한 PC를 교체하였다고 설명한다.

2)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함

3) 2020년 1월 14일 중단되었음

4)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1317호('18.8.14)호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계획 송부'

5)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3444호('19.10.29)호 '(긴급)20년 기준 미교체 윈도우7 PC 현황조사')

[금융위원회 연도별 PC도입 현황]

(단위:개, 기준 : '19.12월)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수량	38	100	168	134	97	93	103	68	801

주: 내용연수(PC 5년) 경과 노후PC에 대한 수요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마이트로소프트사의 윈도우7 OS 보안 지원서비스의 2020년 1월 14일 종료는 2015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2019년 예산편성당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PC의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기능저하 역시 예산편성당시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PC 및 노트북 교체 비용은 예비비가 아니라 2019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본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으로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예비비의 목적[6]에 어긋나는 예비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 재계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상환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투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수입원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1], 세계잉여금이입액[2], 기타특별회계전입금[3] 등이 있다.

2019년에도 일반회계전입금 2조 1,000억원, 세계잉여금 이입액 385억원, 기타특별회계전입금 961억 300만원 등이 수납되었다.

[2019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주요 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당초	수정						
일반회계전입금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0	0	100.0
세계잉여금 이입액	0	0	0	38,500	38,500	0	0	100.0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98,682	98,682	98,682	96,103	96,103	0	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투입한 159조원의 공적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69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를 위해 2002년에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규정된 상환대책의 내용은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49조원을 일시 지원한 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순차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우체국예금 및 보험특별회계전입금·세계잉여금 등으로 상환하고, 금융권은 25년간 특별기여금을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공적자금상환기금 911

2) 코드: 공적자금상환기금 892

3) 코드: 공적자금상환기금 912

적립하여 20조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와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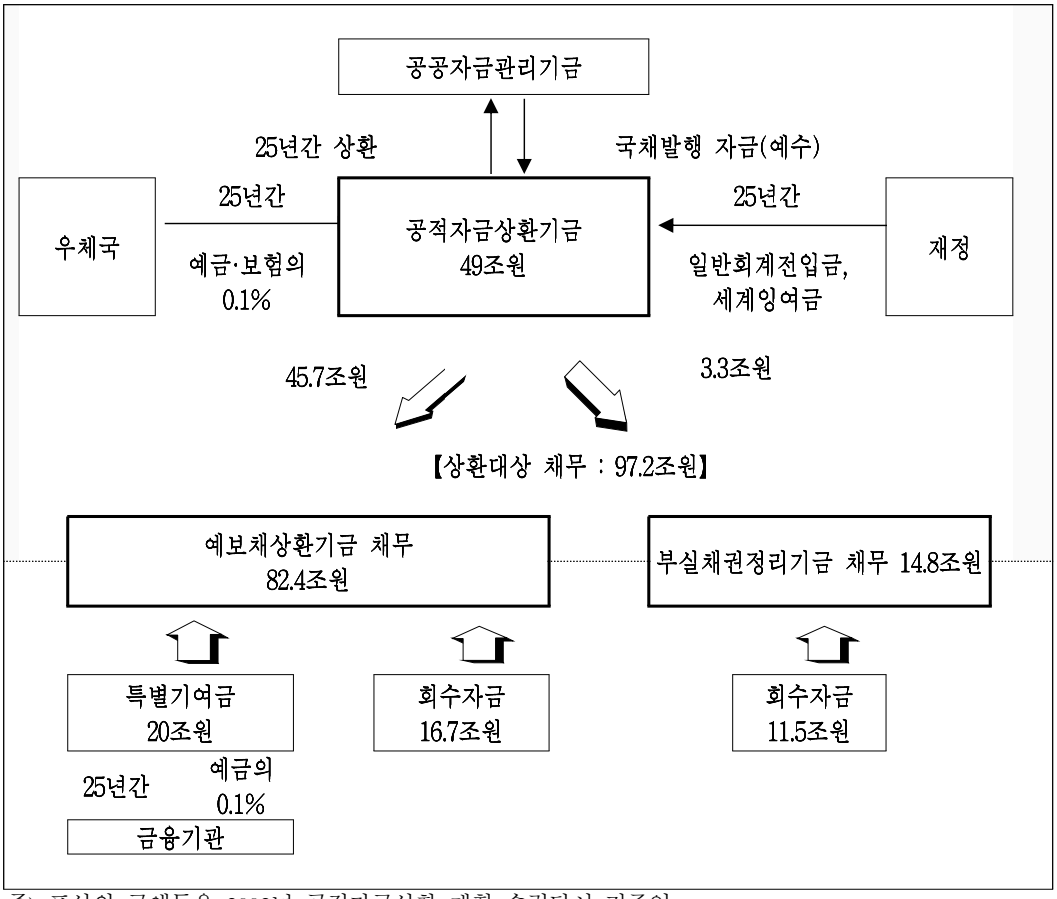

주) 표상의 금액들은 2002년 공적자금상환 계획 수립당시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같은 상환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2017년말 까지 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한 금액을 2002년 현가 기준으로 보면, 각각 20조원, 11.1조원 등 총 31.1조원이다.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당시 회수규모, 경제성장률, 금융 자산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는데, 일정기간 경과 후 자산의 회수규모 및 특별기여금 등이 당초 추정치와 다를 것에 대비하여 5년마다 상환부담 규모의 변동을 점검하는 '공적자금 상환기금 재계산' 제도를 도입하였다.[4)]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실시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총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계산당시의 69조원에서 10.9조원 감소한 58.1조로 평가되었다.[5)]

나. 분석의견

2002년에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2027년까지 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하여 상환할 계획이나, 현재 일반회계 전입규모 수준으로는 법정기한 내에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향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잔여기간 동안 구체적인 연도별 상환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총 상환부담 58.1조원이고 그 중 31.1조원이 이미 상환되었으므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과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2년 현가 기준 총 27조원이다. 이 때, 당초 상환계획과 같이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비율을 49대 20으로 한다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에서 21.2조원, 금융권에서 5.8조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2018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계산에 따른 향후 재정과 금융권의 부담액]

(단위: 조원)

구 분		합 계	재정	금융권
2018년 정기 재계산	기 부담	31.1	20.0	11.1
	향후 부담	27.0	21.2	5.8
	총 부담	58.1	41.2	16.9
2002년 상환대책		69.0	49.0	20.0

자료: 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금융위원회)

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와 그 조치 예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처럼 총 상환부담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채권 회수증가, 보유자산 가치 상승, 저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감소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재정부담분 21.2조원은 2017년말 경상가치로 환산하면, 2018년 정기 재계산에서 2002년 현가 27조원을 2017년말 기준 경상가치로는 48.7조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2002년 현가 21.2조원은 2017년말 기준 38.2조원(21.2조원*48.7/27)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추정치에 근거하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 3조 8,000억원 가량이므로, 실제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매년 3조 8,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법정기한 내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재정으로 부담한 내역을 보면, 2018년에는 3조 3,881억원, 2019년에는 2조 2,346억원으로 3조 8,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우체국 예금·보험 특별회계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우체국 예금·보험의 평균잔액의 0.1%이므로 그 출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최근 재정지출 규모가 확장되고 세입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세계잉여금의 이입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불분명[6]하다. 따라서 2027년까지 계획된 재정부담분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현재보다 1조원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 2019년 재정의 공적자금상환 부담액]

(단위: 조원)

	일반회계부담	세계잉여금	우체국 예금·보험 특별회계	합 계
2018	21,000	12,000	881	33,881
2019	21,000	385	961	22,346

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예보채상환기금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002년 현가로 5.8조원인데, 예보채상환기금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9.5~10.6조원(2002년 현가)의 특별기여금을 납부될 경우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7]된다는

6)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이입된 세계잉여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계잉여금 규모	28,918	758,300	684,876	1,219,786	38,500

자료: 금융위원회

점을 고려하면 예보채상환기금으로부터의 잉여금을 활용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잔여 부담분을 재정과 금융권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담할지,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잔여기간 동안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법정기간 내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7) 2018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계산 연구용역에서 금융연구원이 예측한 수치임

3 국재중재소송 결과 공개 필요

가. 현 황

투자자-국가 소송(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은 투자유치국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 개인이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제소하여 국제중재[1]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의 국재중재수행[2] 사업은 이란의 다야니측과 대우일렉트로닉스의 M&A과정에서 '한국-이란 간 투자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27억 9,800만원 중 8억 6,800만원이 집행되고 19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재중재소송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재중재소송	2,798	2,798	-	2,798	868	31.0	0	1,930

자료: 금융위원회

동 투자자-국가 소송의 경위를 보면, 2010년 4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의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 등은 대우일렉 매각에 나서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란의 다야니 측이 대주주로 있는 엔텍합을 선정했고, 이에 따라 다야니 측은 5,778억원의 총 인수대금 중 10%인 578억원을 계약금으로 채권단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채권단은 같은 해 12월 투자확약서(LOC)상 전체 필요자금 중 1,545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금 578억원은 몰수[3]하였다. 이에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국제중재기관은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SCC(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세계 상공회의소) 등이 존재함

2) 코드: 일반회계 7135-307

3) 이에 디야니 가문은 대우일렉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했던 회사인 D&A를 통해 2011년 6월 매각

다야니 측은 2015년 9월 '한국-이란 투자보장 협정'에 근거하여 몰수당한 578억원을 돌려달라는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2018년 6월 영국의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측에 약73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그 후 2018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판정문에 취소소송 제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중재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2월에 동 취소소송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730억원을 이란의 다야니측에 배상하게 되었다.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는 패소한 투자자-국가 중재판정에 대해 후속협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그 소송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제기되어 있는 수 건의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속히 후속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자료를 신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경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다야니측과의 분쟁사항에 대해 모든 절차가 종결된 이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2019년 12월 취소소송 기각이 확정되고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6월말 기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중재규칙 등에 따라 다야니측과 모든 중재서류에 대해 비밀유지약정[4]을 체결하였는데, 현재까지 중재판정 이행과 관련된 배상방법 등에 대해 다야니측과 협의 중이므로 중재판정문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자-국가 소송의 패소사례이므로, 신속하게 그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차후의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가처분신청은 다음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결정

4) The Parties shall keep confidential all deliberations, decisions and awards in the arbitration, together with all materials in the proceedings created for the purpose of the arbitration and all other documents or evidence produced by another Party in the proceedings not otherwise in the public domain.

특히 현재 론스타·엘리엇·메이슨·쉰들러 등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해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초의 패소사건인 이란 다야니측과의 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중재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기업명	청구일 및 근거협정	문제삼는 조치 (상대방의 주장)	청구액	분쟁대응체계 구성	상황
론스타	'12.11.21. 한-벨 BIT	①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② 국세청의 관련 과세	46.9억 USD (5조 1천억 원)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주무), 금융위(처분청), 국세청(처분청)	진행 중
엘리엇	'18.7.12. 한-미FTA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	7.7억 USD (8,470억 원)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소송), 산업부, 복지부(처분청·예산/자료)	진행 중
메이슨	'18.9.13. 한-미FTA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	2억 USD (2,200억 원)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소송), 산업부, 복지부(처분청·예산/자료)	진행 중
쉰들러	'18.10.11. 한-EFTA 부속협정	금융위/금감원의 현대엘리베이터 부당 유상증자 방치	1억 9,240만 USD (2,300억 원)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소송), 산업부, 금융위·금감원(처분청·자료)	진행 중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취합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란의 다야니 측과 중재판정 이행과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재판정 내용을 공개하여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투자자 소송을 대비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수익률 관리 필요

가. 현 황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동 기금 중 보증연계투자[1] 사업은 신용보증 신청기업·이용기업에 대해 사업전망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2019년 계획현액 600억원 중 591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보증연계투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보증연계투자	60,000	60,000	60,000	59,126	98.5	-	874

자료: 금융위원회

보증연계투자는 2005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나 2011년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2011년부터 신규투자가 중단되었고, 2013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자 2014년부터 신규투자가 재개되었다.

동 사업은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동시에 보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주식 또는 사채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투자한다.

동 사업의 투자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30개 기업에 25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2019년에는 85개 기업에 590억원이 투자되는 등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가 보증연계투자 기업수 및 투자규모]

(단위: 개,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기업수	30	45	62	61	85
보증연계투자 지원 규모	250	350	400	394	590

자료: 신용보증기금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08

나. 분석의견

최근 2년간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기업 선정 및 투자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금 회수방식을 다변화하여 투자수익률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보증연계투자의 투자수익 규모를 보면, 2015년 30억 9,600만원에서 2017년 10억 1,000만원으로 감소였고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21억 3,200만원, 24억 1,6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투자수익률도 2015년 9.51%에서 2019년 △1.6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증연계투자 투자손익 규모 및 투자수익률]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수익(A)	3,211	3,603	6,130	1,168	2,997
매각차익주[1)]	3,146	3,394	5,611	311	1,910
배당금 등	65	210	519	856	1,087
감액손실(B)	115	1,800	5,120	3,300	5,413
투자손익(C=A-B)	3,096	1,803	1,010	△2,132	△2,416
직전연도말 투자잔액(D)	32,563	54,175	83,655	114,778	146,747
연간투자수익률 (C/D*100)	9.51	3.33	1.21	△1.86	△1.65

주1) IPO, 매각, 상환우선주의 상환에 따른 자본이득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이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기업공개(IPO)가 예정되어 있던 투자기업들의 상장이 지연되었고,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2018년, 2019년 투자기업의 부실금액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2)]

또한 동 사업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중소기업의 상장소요기간이 평균 1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자수익 실현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과 기본

2) 다만, 2020년 4월 기준 금년도에 매각 등으로 11억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수익률 0.58%, 누적수익률 1.03%로 수익률 개선 추세에 있다
* 전년도 동 기간(2019.1월~4월) 투자수익(3.9억원) 대비 2.8배 증가

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보증연계투자사업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2019년 2월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확대 계획에 따른 기금의 중장기적인 유동성과 기본재산의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투자수익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투자기업 선정역량을 강화하여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을 중점지원하고, 금융 · 비금융지원[3]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회수방식 다각화[4]를 통해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금융지원) 신용보증·유동화보증, (비금융지원) 컨설팅, 투자기업 IR 등

4) 코스닥, 코넥스 및 장외시장 활용, 제3자 매각 등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분석

가. 현 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신용조사·구상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농신보기금 대위변제금[1] 사업은 주채무자(피보증인)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기금이 보증채무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현액 3,320억원 중 3,264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5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계획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금	252,200	332,000	332,000	326,451	98.3	0	5,549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운용배수는 2019년말 기준 적정수준인 12.5배를 초과한 15.4배에 이르렀고 부실률도 2015년 1.7%에서 2019년 2.3%로 증가하고 있어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능한 적정수준의 보증공급 규모를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증배수는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재산대비 적정한 보증잔액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통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기금")의 적정 운용배수는 12.5배이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432-680

최근 5년간 농신보기금의 운용배수를 보면, 2015년 4.4배에서 2019년 15.4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농신보기금의 운용배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농신보기금의 기본재산은 2015년 2조 5,252억원에서 2019년 1조 449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보증잔액은 2015년 11조 122억원에서 2019년 16조 1,117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신보의 보증잔액 및 기본재산 등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증잔액(A)	110,122	121,804	133,968	148,906	161,117	168,000
보증공급액	53,731	63,427	67,462	79,201	86,112	82,350
기본재산(B)	25,252	22,974	19,357	15,306	10,449	8,889
농특회계 전입·전출	△1,000	△3,000	△3,000	△2,000	△2,000	1,000
농특회계 전입·전출금 제외 기본재산 감소분	-	-	△617	△2,051	△2,857	△2,560
보증배수(A/B)	4.4	5.3	6.9	9.7	15.4	18.9

주: 1.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실적, 2020년은 예상치
2. 2020년은 1,000억원을 전입받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신보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보증배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농신보기금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00억원에서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농특회계로 반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신보기금은 농특회계로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농신보가 매년 보증잔액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면서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신보의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증잔액(A)	110,122	121,804	133,968	148,906	161,117
부실액(B)	1,872	1,828	2,460	3,107	3,722
대위변제액(C)	1,544	1,473	2,092	2,776	3,265
부실률(B/A)	1.7	1.5	1.8	2.1	2.3
대위변제율(C/A)	1.4	1.2	1.6	1.9	2.0

주: 부실액 = 대위변제액 + 불건전보증잔액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러한 기본재산 감소에 대응하여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신보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1,000억원 증액되었으나, 1,000억원 증액을 반영하더라도 농신보기금이 예측하는 2020년말 운용배수는 18.9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추세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율을 유지할 경우 농신보기금의 보증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농특회계로부터 최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한 농림수산업자에게 금융지원하기 위해 보증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신보기금의 적정운용배수 유지능력을 벗어난 보증규모를 공급하게 되면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가져오고 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신보기금은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 없이 자체수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보증공급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확대를 통한 여유재원 활용 필요

가. 현 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기금”)은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개인 또는 사업주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노후연금보증을 제공하는 기금이다.

동 기금의 대위변제[1] 사업은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현액 2,480억원 중 1,783억 9,800만원(71.9%)이 집행되고 696억 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	248,000	248,000	0	248,000	178,398	71.9	0	69,602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부실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됨에 따라 대위변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사업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기금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대위변제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100.0%로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80%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631-30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최근 5년간 대위변제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15	324,175	324,096	100.0
2016	378,000	298,865	79.1
2017	393,000	215,043	54.7
2018	290,000	186,997	64.5
2019	248,000	178,398	71.9

자료: 금융위원회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세 유지와 저금리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보증사고의 순증률[2]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대위변제 집행률 역시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위변제 금액이 저조함에 따라 보증운용배수는 적정수준인 11배를 유지하면서, 기본재산은 2015년 5조 1,028억원에서 2019년 8조 1,695억원으로 5년간 60.1% 증가하는 등 기금의 여유재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최근 5년간 보증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연도	보증공급액	보증잔액(A)	기본재산(B)	보증운용배수 (A/B)
2015	374,772	542,867	51,028	10.6
2016	400,973	669,559	56,974	11.8
2017	366,677	716,207	61,140	11.7
2018	454,692	775,180	71,125	10.9
2019	545,782	898,511	81,695	11.0

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증운용배수 산출에 적용되는 보증잔액은 전세 및 반환보증 동시 이용 시 중복되는 보증금액이 제외됨

주신보기금은 이와 같이 여유재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여유재산 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2016년 2,000억원, 2017년 500억원, 2020년 8,000억원[3] 등 총 1조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

2) 보증사고 순증률 : 보증잔액 대비 보증사고 순증액 [(사고발생금액-사고정상화금액) ÷ 보증잔액]
보증사고 순증률(%) : ('15년) 0.4, ('16년) 0.3, ('17년) 0.3, ('18년) 0.3 ('19년) 0.3

3) 2020년 본예산 3,000억원,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5,000억원

기금의 여유자금 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활용가능한 수단으로 보인다. 다만 주신보기금의 설치목적이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급적 동 기금 목적에 맞는 보증사업 확대를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특례보증 등 기금의 보증상품 공급 확대를 통해 기금의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서울보증보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후 관련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보금융회사[1]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한 기금이다.

동 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출자금융기관에 대한 주식의 매각을 통한 수입으로, 2019년 계획현액 1조 1,182억원 1,600만원 중 1,320억 2,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다.

[2019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계획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당초	수정						
재고자산매각대	1,118,216	1,118,216	1,118,216	132,023	132,023	0	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2019년말 기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4개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4개사에 지원한 금액은 27조 7,244억원이고 2019년말 기준 17조 7,812억원이 회수되었다.

2019년말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융회사의 지분의 수량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12,461만주(17.25%), 한화생명 지분 8,686만주(10.0%), 서울보증보험 지분 3,276만주(93.9%), 수협중앙회 지분 9,034만주(우선주)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평가액은 5조 5,957억원이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3)

1)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임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사 보유지분 현황]

(단위: 만주, 억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지원액	'19년말		'20.6월말	
			회수액[1]	평가액[2]	회수액[1]	평가액[2]
우리금융지주 (舊 우리은행)	12,461 (17.25%)	127,663	111,404	14,454	112,276	10,978
한화생명	8,686 (10.0%)	35,500	25,019	2,006	25,045	1,181
서울보증보험	3,276 (93.9%)	102,500	38,843	30,463	40,346	30,463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9,034 (우선주)	11,581	2,547	9,034	3,048	8,533
합 계		277,244	177,812	55,957	180,715	51,155

주) 1. '20.6월말 기준 회수액은 2019년의 배당금 수령 등에 따라 '19년말 대비 증가

2. 출자금융회사 지분 평가액 산정방법

- 우리금융지주 및 한화생명 : 상장주식으로 기준시점 종가 적용
- 서울보증보험 : '18년도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평가금액('19년말 장부상 순자산 가치 : 4.47조원)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 배당을 재원으로 한 공사 우선출자증권 상환 예정액

나. 분석의견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매각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영역의 민영화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된 이후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우리금융지주 지분 7.0%, 한화생명 지분 3.81%, 서울보증보험 지분 5.0%을 매각하고, 수협중앙회 지분에 대한 배당을 통해 1조 1,182억 1,6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수납실적을 보면, 수협중앙회 지분에 대한 배당액 1,320억 2,300만원만이 수납되었고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에 대한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매각계획		실제 매각규모	
	지분	금액	지분	금액
우리금융지주	7.0	667,023	0	0
한화생명	3.81	228,603	0	0
서울보증보험	5.0	120,383	0	0
수협중앙회	우선주	102,207	우선주	132,023

자료: 금융위원회

이처럼 당초 계획했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 지분 매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시장상황 및 매각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매각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금융사 지분 매각계획을 보면, 우리금융지주의 경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19.6.24)한 매각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분산하여 매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한화생명의 경우는 주가 및 금리 추이, 생명보험업의 전망 등에 따라 매각여건 성숙 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잔여지분을 매각할 계획이고, 수협중앙회의 경우는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우선출자증권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즉, 우리금융지주와 한화생명의 경우 매각여건이 조성되면 즉시 매각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경영권 지분이 매각되기 위해서는 지분의 가치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2020년 6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영역의 시장개방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보증보험 지분 5%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0년 6월말 기준 동 지분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2020년 이후에도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여부에 대한 논의가 없는 한 지분 매각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이후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매각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에 기초하여 서울보증보험 지분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의 정책금융 지원 적정성 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Ⅰ」 p.129
2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관대화 경향 개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Ⅰ」 p.134
3	정부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 마련 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Ⅰ」 p.140
4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상환 불가능 부채규모의 정확한 산정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Ⅰ」 p.143
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Ⅰ」 p.149
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지속적인 일반회계 전출의 타당성 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Ⅰ」 p.150
7	주택신용보증계정 금융기관출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의 이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Ⅰ」 p.155
8	금융기관출연료율 인하로 인한 대출 금리 하락 효과 등을 고려한 금융기관출연료율 조정 등 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Ⅰ」 p.16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입 결산액은 없다.

2019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9억 3,700만원으로, 이 중 66.4%인 15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785	20,785	22,937	15,235	2,447	5,256	66.4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자산은 23억 6,600만원이고 부채는 6,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2억 5,900만원, 일반유형자산 6억 9,100만원, 무형자산 4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5억 5,700만원(30.8%) 증가하였다. 이는 미완료 연구용역 관련 선급금 등 선급비용 7억 7,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00만원, 장기충당부채 5,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순증하였다. 이는 공과금 등 미지급비용 계상에 따른 500만원 증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등 5,9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2019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366	1,809	557	30.8
Ⅰ. 유동자산	1,259	489	770	157.5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691	924	△233	△25.2
Ⅳ. 무형자산	416	396	20	5.1
Ⅴ.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0
부 채	64	0	64	0.0
Ⅰ. 유동부채	5	0	5	순증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59	0	59	순증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2,302	1,809	493	27.3
Ⅰ. 기본순자산	2,302	1,809	493	27.3
Ⅱ. 적립금 및 양여금	0	0	0	0.0
Ⅲ. 순자산 조정	0	0	0	0.0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9억 4,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6억 7,900만원, 관리운영비 42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100만원이다.

[2019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362	679	4,683	689.7
가. 프로그램 총원가	5,362	679	5,953	138.5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Ⅱ. 관리운영비	10,251	4,298	5,953	138.5
Ⅲ. 비배분비용	0	0	0	0.0
Ⅳ. 비배분수익	0	31	△31	순감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5,613	4,946	10,667	215.7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5,613	4,946	10,667	215.7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의 2019년도 기말순자산은 23억 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억 9,300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161억 5,1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156억 1,3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2019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809	0	1,809	-
Ⅱ. 재정운영결과	15,613	4,946	10,667	215.7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6,106	6,755	9,351	138.4
Ⅳ. 조정항목	0	0	0	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302	1,809	493	27.3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집 필

총 괄 | 김일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신은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태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동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홍선기 예산분석관
이광근 예산분석관
안병후 예산분석관

지 원 | 황아람 예산분석관보
인정은 행정실무원
홍수현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Ⅱ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0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88-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